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도서관법령 개정 방안 연구

2013. 8. 2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 출 문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도서관법령 개정방안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손 현

2013. 8. 28.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원 :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훈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 구 보 조 원 : 구 슬 (독일 하노버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제 2 장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 및 법제 분석 ····· 13

제 1 절 도서관 정책 및 법제의 현황 검토 ····· 13

1. 도서관 정책의 현황 ····· 13

2. 도서관 법제의 현황 ····· 14

제 2 절 「도서관법」상 주요 쟁점사항 분석 ····· 21

1.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 21

2. 도서관 시설 기준 및 도서관 자료 ····· 24

3. 사서제도의 체계 ····· 29

4.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제도 ····· 37

5. 도서관 관리・운영 제도 ····· 39

6. 도서관 자료의 납본규정 ····· 40

7.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 42

8.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 45

제 3 장 외국의 도서관 정책과 법제 ····· 47

제 1 절 미 국 ····· 47

1. 도서관정책 운영 현황 ····· 47

2. 법제 현황 ····· 54

3. 도서관기준 ····· 61

4. 사서자격기준 ····· 64

제 2 절 일 본 ····· 68
1. 도서관정책 운영 현황 ····· 68
2. 법제 현황 ····· 71
3. 도서관기준 ····· 78
4. 사서자격기준 ····· 90

제 3 절 영 국 ····· 93
1. 도서관정책 현황 ····· 93
2. 법제 현황 ····· 100
3. 도서관기준 ····· 108
4. 사서자격기준 ····· 115

제 4 절 기 타 ····· 119
1. 독 일 ····· 119
2. 호 주 ····· 127

제 5 절 정 리 ····· 138

제 4 장 도서관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 ····· 141
제 1 절 개 관 ····· 141
제 2 절 주요 이슈별 개선 방안 ····· 142
1.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등의 개선 ····· 142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147
3.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개선 ····· 150
4. 도서관 납본 제도 개선 ····· 152
5.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제도의 개선 ····· 156
6. 도서관기준의 개선 ····· 159
7. 사서제도의 개선 ····· 164
8. 기 타 ····· 175

제 5 장 결 론 ····· 181

참 고 문 헌 ····· 183

부 록 Ⅰ ····· 185

▣ 「도서관법」 개정(안)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 록 Ⅱ ····· 219

▣ 2011년 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지식정보화의 진행 및 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 속에 도서 소장 중심에서 평생 교육과 지식정보 중심지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도서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도서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정보화 핵심기관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존 도서관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도서관 관계 법령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화되어 「도서관법」이 현재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서관 법령상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사서배치 기준 등은 1988년에 개정된 기준[1)]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도서관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도서관 기준으로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맞고, 선진화된 도서관 운영 기준 및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현행

1) 도서관 시설 기준 및 사서배치기준은 1965년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가, 1988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에 제시된 기준이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전부 개정 당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 이상 5만인 미만인 경우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종전에는 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면적만을 165제곱미터, 기본장서를 1천권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시청각실·휴게실·복도·식당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건물 면적을 660 제곱미터, 기본장서를 6천권 이상으로 하는 등 봉사 대상인구 기준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상향조정되었다(구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사서배치기준의 경우 제정당시에는 도서관의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인을 두며,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65 제곱미터마다 1인을 더 두도록 하였는데, 1988년 개정으로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인을 두고,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 마다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1인을 더 두도록 하였다(구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도서관 관련 법령상의 개정 이슈를 도출하고 도서관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과 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도서관법령 개정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연구로서 핵심 쟁점 및 개정 이슈로 삼은 부분은 도서관 기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정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분석, 시행령 [별표2] 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분석, 시행령 [별표3] 사서의 자격요건 분석 등 현행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기준 및 사서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현장 운영 실태 조사 및 현장 담당자 인터뷰, 해외 주요 국가의 도서관 기준 및 사서 제도 분석을 통해 현행 도서관법령상의 도서관 기준 및 사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3]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연구를 통해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방안,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도서관 지식정보의 공동활용 및 유통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도 개선,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제도의 개선 등을 추가 이슈로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개정이슈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도서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도서관 현장 담당자들과의 토론회[2],

2)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2013년 7월 16일「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①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및 도서관 기준, ②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교과목제 도입 방안, ③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운영 방안 및 도서관 자료의 교관·이관·폐기 기준 등 3가지 토론 주제를 대상으로 학계, 도서관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토론회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여러 패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들을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의 기초로 삼았다. 다만, 개정 이슈별로 입장차가 있고,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큰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의 경우 개선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 연구도 즉각적으로 입법화 가능하여 시행이 용이한 부분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장기적인 과제의 경우 추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입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전문가 회의

o 일시 : 2013. 6. 7(금), 14:00~16:00

o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7층 회의실

o 주제 :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o 주요 참석자 : 최승원(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곽승진(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휘정(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노영희(건국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안인자(동원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장), 이지연(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성락(동양미래대학 경역학과 교수), 양혜원, 박종웅(이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토론회

o 일 시 : 2013년 7월 16(화) 14:00~18:00

o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o 주 제 :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

o 주요 참석자

제1주제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및	o 사회 : 김세훈(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부 교수) - 패널1 : 정현태(건국대 문헌정보학전공 겸임교수) - 패널2 :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 과장)

토론	도서관 기준	- 패널3 : 김휘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토론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교과목제 도입 방안	o 사회 : 김세훈(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부 교수) - 패널1 : 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패널2 : 안인자(동원대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 패널3 : 정재영(서강대 로욜라 도서관 관리운영팀 부장) - 패널4 :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장)
제3주제 토론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운영 방안 및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기준	o 사회 :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실장) - 패널1 : 이용훈(서울도서관장) - 패널2 : 허정(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과장) - 패널3 : 장지숙(파주교하도서관장) - 패널4 : 조진화(부산시립시민도서관 정책부장)

제 2 장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 및 법제 분석

제 1 절 도서관 정책 및 법제의 현황 검토

1. 도서관 정책의 현황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육성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서관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3)]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은 2008년 8월에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에 편리함과 안락함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도서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5년간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 1차년도 2009년 시행계획을, 2009년 12월에 2차년도 2010년 시행계획을, 2010년 12월에 3차년도 시행계획을, 2011년 12월에 4차년도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서관 정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 8월 당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설립 및 조성을 통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접근성・편리성을 높여나가는 방안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의 내실화,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 등 지역별 도서관 협력 방안을 구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제도, 도서관 및 문학관에 문화작가 파견, 우수학술도서 및 교육도서 보급, 디지털서비스 완전개방, 다문화와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게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2012 한국도서관연감」, p.20 (2012).

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 현재, 추가적으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창의성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인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시대에서 도서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창의력 및 소통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법정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향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 법제의 현황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행 도서관 관계 법령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으로 분법화되어 「도서관법」이 현재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관종별 도서관 정책 환경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 「작은도서관진 진흥법」이 별도의 법률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현재 「대학도서관 진흥법」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5] 그 외 개별 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조직 및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4) 자세한 내용의 앞의 책 참조.

5) 2008년 대학도서관진흥법은 2008년 12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마련하여 교과부(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 2월 정두언 의원이 동료의원 21명을 대표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 정부 16개 부처의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으나, 문화부(현 문체부)에서는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하여 법안 제정을 반대하면서, 현행 도서관법 중 대학도서관 규정인 제34조(설치), 제35조(업무), 제36조(지도・감독)를 보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부에서는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수립・심의・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 평가를 문화부가 하는 조건으로 법 제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고, 교과부에서는 교과부가 지도・감독하는

있는 「국회도서관법」 등도 있다. 이처럼 지금의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관종의 도서관 활동의 법제적 근거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을 규정하는 도서관 조례가 보다 실효적인 규율 법령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6)

(1) 「도서관법」

현행 「도서관법」은 1994년 3월 24일 법률 제4746호로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법률 제정당시 주요 내용은 (ⅰ)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ⅱ)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과 독서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평가를 문화부에서 평가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각 대학도서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학 행·재정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부로부터 대학도서관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현행 도서관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양 부처가 합의하였다.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2011년 3월에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입장을 재정비하고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2년 7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최 "제7차 도서관정책 포럼"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2012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도서관연합회가 대학도서관관련 현안문제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하였다. 2012년 10월 대학도서관진흥법 수정안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연합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6)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자체 도서관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5개(81.1%)로서, 아직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운영의 법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의 실질적 법제기반으로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서관정책 추진 환경을 반영하는 일원화된 통합도서관조례 제·개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법제적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의 토론문(정현태 제1주제 토론문) pp.34~35 (2013.7))

화체육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 (iii) 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v) 동법률의 제정으로 도서관 진흥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 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2006년 10월 4일에 법률 제8029호로 「도서관법」으로 법의 제명이 바뀌었고, 2007년 4월 5일에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서관법」으로 개정된 입법취지는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i)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법 제12조 및 제13조), (ii)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법 제14조 및 제15조), (iii) 시·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 제22조 및 제25조), (iv)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v)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vi)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법 제45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2009년 3월 25일에 법률 제9528호 개정된 「도서관법」은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에 있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서관자료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법 제20조제2항), 온라인 자료의 수집(법 제20조의2),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법 제31조의2),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법 제44조제3항) 등이다.

최근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10호로 개정된 「도서관법」의 개정 취지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용 내용은 (ⅰ) 사서(司書, 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하고(법 제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법 제13조제3항제2호), (ⅲ)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법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ⅳ)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법 제31조의3), (ⅴ)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와 청문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법 제42조), (ⅵ)「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법 제43조 및 제44조), (ⅶ)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보급 및 제작지원, 도서관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등 그 기능을 흡수·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것(법 제45조), (ⅷ)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법 제4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7호로 제정되었는데, 입법취지가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ⅰ)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법 제5조), (ⅱ)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했고(법 제6조), (ⅲ)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해당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응하는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비 규정(법 제11조), (ⅳ) 시·도교육청, 일반도서관 그 밖의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법 제14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3)「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16호로 제정되었는데, 동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ⅰ)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ⅱ) 작은도서관을「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법 제2조), (ⅲ)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5조), (ⅳ)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법 제6조), (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법 제7조)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또한 (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8조), (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9조), (viii)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법 제12조) 하고 있다.

(4)「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은 2006년 12월 28일에 법률 제8100호로 제정되었는데, 동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에 지역·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2009년 3월 5일에 법률 제9470호로「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및 주요내용으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2013년 3월 23일에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조에 정의규정으로 독서문화, 독서자료, 독서장애인, 학교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법 제5조), 연도별시행계획(법 제6조)을 정하고 있다. 제4장에 독서진흥의 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규정(법 제8조)을, 지역의 독서진흥(법 제9조), 학교의 독서진흥(법 제10조), 직장의 독서진흥(법 제11조), 독서의 달 행사(법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제5장에는 관계기관의 협력(법 제13조),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법 제14조), 연차보고(법 제15조)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제 2 절 「도서관법」상 주요 쟁점사항 분석

1.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현행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로 구분되며, 그 외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별도의 도서관으로 분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또한 (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ⅱ)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ⅲ)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ⅳ)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ⅵ)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7]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제5호).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8]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제6호). "전문도서관"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제7호)고 정하고 있다.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역대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관종 구분과 해당 관종별 정책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역대 「도서관법」의 관종 구분 >[9]

연도	관종 구분	관종별 정책부처	참고사항
1963년 「도서관법」	ㅇ공공도서관(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ㅇ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ㅇ특수도서관(전문도서관)	문교부 문교부	cf. 제4조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1987년 「도서관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현행 기본법 체제 cf.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공공도서관·문고 설립운영은 자치단체사무로 규정
1991년 「도서관 진흥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문화부 문화부 교육부 교육부	cf.문화부이관_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원칙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관논의 부재
1994년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문고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화: 자치단체장 선거 2001년 공공도서관설립신고 문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9)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앞의 토론회 자료집의 토론문(정현태 제1주제 토론문) p.27에서 발췌함.

연도	관종 구분	관종별 정책부처	참고사항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교육부 교육부	화체육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2003 병영도서관 추가
2007년 「도서관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병영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문광부 문광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문광부) (자치단체)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교육부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2009년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칭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상 관종 구분은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국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의미하며 공공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고 있고, 「도서관법」 제22조의 지역대표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법상 도서관 관종 구분은 담당 정책 부서[10]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고 오면서 현재의 구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범위를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로까지 넓게 확대하였다. 이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추진 범위를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도서관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11]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병원, 병영, 교도소 도서관

10)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교육부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가, 교도소도서관은 법무부가, 병원도서관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해당사업 추진의 주무 정책 부처로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토론회 자료집(정현태 토론문), p.27.

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실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운영·관리와 연계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2. 도서관 시설 기준 및 도서관 자료

「도서관법」 제5조제1항에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

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실 · 회의실 ·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 · 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을 분석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봉사대상인구(2만 미만, 2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10만 미만, 10만이상~30만 미만, 30만 이상~50만 미만, 50만 이상)" 구간에 따라 시설(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도서관자료(기본장서, 연간증서(권))에 따라 "도서관 시설 기준 및 도서관 자료"기준을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행 도서관법 시설, 자료기준은 1988년에 개정되어 25년이 경과된 상태로 최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매우 높고,[12] 지역 중심, 전문화・세분화된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서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도서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설립시 법상의 기준 준수에 대한 강제가 없어 현행 시설・장서 중심의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별표 기준은 전혀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시설 및 장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신축을 할 경우 중대형 건축물을 선호하는 경향에 있고, 열람 공간 뿐만 아니라 학습공간의 시설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동 기준을

12) 현행 공공도서관의 시행령 별표상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준수율은 부록Ⅱ 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 참조.

IFLA 등의 도서관의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적 구성”에서 “질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역사가 짧고 도서관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최소한의 양적 기준’을 제시해서라도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 수준의 관리와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3)]

< 역대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제·개정 내용 >

연도	근거조문	도서관 시설 기준								
		건물면적						장서수		기준 입구
		면적	열람실	아동 열람실	정기 간행물실	서고	사무실	기본 장서수	년간 증가수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공공 도서관 시설 기준)	165평 방미터	50석	20석	면적의 10%		면적의 10%	1,000권 이상	200권	2만 이상 4만 미만
		330평 방미터	100석	30석	면적의 10%		면적의 12%	1,000권 이상	300권	10만 미만
		660평 방미터	200석	50석	면적의 5%	면적의 10%	면적의 10%	1,500권 이상	500권	20만 미만
		990평 방미터	300석	70석	면적의 6.7%	면적의 10%	면적의 9.3%	2,200권 이상	1,000권	30만 미만
		1,320평 방미터	400석	100석	면적의 7.5%	면적의 10%	면적의 7.5%	2,800권 이상	2,000권	40만 미만
		1,650평 방미터	500석	150석	면적의 6%	면적의 10%	면적의 6%	3,300권 이상	3,000권	50만 미만
		1,980평 방미터	700석	200석	면적의 5%	면적의 12.5%	면적의 7.5%	5,000권 이상	4,000권	50만 이상

13) 토론회 자료집, 김휘정 입법조사관 토론문, p.42

<table>
<tr><td></td><td></td><td>비고 : 1. 이 표 중의 기준 인구수는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표 중의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화장실 및 식당 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td></tr>
<tr><td>1988년
「도서관법
시행령」</td><td>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td><td>o 공공도서관 : 현행과 동일하게 종래 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청각실·휴게실·복도·식당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상향 조정함. 단 비고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시청각 자료의 연간 증가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리고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봉사대상 기준 인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료 기준은 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비고 규정을 두고 있음.
o 대학도서관 :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재·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o 학교 도서관 :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학습 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컴퓨터 교육자료 등을 갖추어야 함.
o 전문도서관 : 현행과 동일
o 특수도서관(시각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table>
<tr><td>봉사
대상</td><td colspan="2">시설</td><td colspan="2">자료</td></tr>
<tr><td rowspan="2">시각
장애자</td><td>건물</td><td>기계·기구</td><td>장서</td><td>녹음테이프</td></tr>
<tr><td>면적 : 66제곱미터
서고 : 면적의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 면적의 35퍼센트 이상</td><td>점자제판기 2대 이상
점자인쇄기 1대 이상
점자타자기 3대 이상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대, 점자인쇄기 1대, 점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여야 한다.</td><td>1천500권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권을 추가하여야 한다.</td><td>500점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td></tr>
</table></td></tr>
</table>

		비고: 가.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일때에는 녹음실·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건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1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1988년의 기준과 동일. 단, 학교 및 대학도서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서 제외함.
1994 「도서관 및독서 진흥법 시행령」		1988년의 공공도서관의 기준과 동일. 단 비고에서 "바.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 1988년의 기준에서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문고를 추가하여 현행과 동일한 기준 제시함.
2007년 「도서관 법 시행령」		1988년의 공공도서관의 기준과 동일함. 단 사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
2009년 「도서관 법 시행령」		현행과 같음(1988년 기준과 동일하고, 단,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추가됨)

3. 사서제도의 체계

(1) 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의 문제점

「도서관법」 제6조에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 사서를 두는 사서배치 기준과 관련 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다.

<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에 관하여 분석해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100평) 이하인 경우에 3명을 두되, 그 이상인 경우 330㎡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되어있다. 예컨대, 인구 63만명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7곳의 면적이 3만359㎡(9200평), 장서는 110만권을 두고 있음으로, 도서관 건물면적 기준으로 하면 사서 94명과 장서 기준 사서 183명을 더해 모두 277명의 사서를 두어야 한다[14].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안양시의 공공도서관 사서는 37명으로, 사서 1인당 1만 7000명의 봉사대상 인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사서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과 ‘장서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상의 건물의 연면적과 장서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 공공도서관 786개 기준으로 2개 도서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연면적과 장서수에 따라 사서 배치 인원이 비례하여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형 도서관의 증가, 사서

1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김지봉 토론문에서 발췌, p.39. (2013.8).

채용을 위한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에 따른 사서의 업무·역할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건물 면적 및 장서수에 따라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한 사유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서의 서비스 공간, 서비스 대상이 되는 도서수에 따라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면적과 장서수에 따라 배치 인원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나, ICT 발전에 따른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 등으로 단순히 건물 면적과 장서수에 비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도서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제·개정 내용>

연도	근거조문	사서배치기준 제정 및 개정 내용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 제2항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3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면적이 330평방미터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65평방미터 1인의 사서 직원을 증가하여 배치
1988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둠.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둠.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수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

연도	근거조문	사서배치기준 제정 및 개정 내용	
			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둠.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함.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을 둠.
1991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1988년과 동일하게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서 제외함.
1994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1988년과 동일하게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제2항).
2007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1988년과 동일하게 공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고(공립 문고에는 사서 직원 1명을 둘 수 있음), 장애인 도서관(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저직원 1명을 둠)의 기준을 추가함.
2009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사서의 자격요건의 문제점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자격요건
1.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3]을 분석해 보면 첫째,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서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인적자원의 가치평가를 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점, 둘째, 현행의 자격구분이 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등으로 매우 간단하며, 자격구분의 조건이 자격자의 학력, 근무경력 기간만을 평가함으로써 사서업무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구분하는데 저해된다는 점, 셋째, 사서교육

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짐으로 인하여, 대학의 정규과정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연간 전체 자격취득자의 20%를 상회하여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정당하게 인정・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학 교과과정은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30~36학점으로 사서로서의 전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족하며, 도서관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 지식만을 갖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여 실무에서 필요한 업무 순발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5]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 9월에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9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서자격 교육과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1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토론회 자료집, 안인자 토론문에서 발췌, p.67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 비고 : ① 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과과정의 개선(학점 상향제, 핵심 교과과정 규정, 교과과정 인증제), 자격 시험 실시(시험과목의 결정, 자격의 구분, 사서자격의 세분화,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구분, 자격구분 개선안, 시험 실시 방법), 재교육 및 자격 갱신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 중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고, 현행의 제도의 틀에서 큰 변화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개선안이 표준교과과정 내에서 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사서 실습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안이다.

즉, 스마트한 기술융합시대에서 정보수집과 정보서비스의 전문가로서 현장실무 적응력을 제고하고 정보수요자들에게 만족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의 정비 및 교과내용의 현실화가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현행 사서의 배치기준,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 표준교과목제도를 개

선하는 데에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점진적 개선과 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제도

(1)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운영기준의 문제

「도서관법」 제22조제1항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ⅰ)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ⅱ)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ⅲ)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ⅳ)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ⅴ)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ⅰ)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ⅱ)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ⅲ)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ⅳ)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ⅵ)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3조)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에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22조와 제23조 및 제25조를 분석해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 내 도서관 중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6]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서와 시설, 자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목적 중에 도서관의 시책 수립 및 시행은 지역대표도서관이 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일과 공동 보존서고를 유지 운영하는 일이므로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미래의 도서 수장량을 포함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17] 한편 동 법률 제25조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가 사업비 보조를 할 수도 안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재량규정을 기속재량행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문제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서관위원회는 (ⅰ)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ⅱ)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제2항). 또한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16)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앞의 토론회 자료집(이용훈 토론문), p.82
17)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앞의 토론회 자료집(장지숙 토론문), p.94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처럼 「도서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위원장은 시・도지사,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5급・4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급상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구성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법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도서관 관리・운영 제도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에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ⅱ)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ⅲ)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외 동법 제47조에 도서관자료 납본을 위반한 자에게 도서관 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 요구 및 등록 취소는 사립 공공도서관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제재조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도서관 자료의 납본규정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에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는 (ⅰ) 도서, (ⅱ) 연속간행물, (ⅲ)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ⅳ)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ⅴ)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ⅵ)「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ⅶ)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ⅷ)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동법 제45조제2항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0조제3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자료의 납본제도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에 “자료의 제출” 명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2006년 12월 20일「도서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법 제20조에 “자료의 납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서관법」제20조제2항에 삽입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도서관자료의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 수집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출판사들이 납본 파일 유출을 이유로 납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여 디지털 파일 납본 실적을 높여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현행「도서관법」제21조를 분석해보면, 동법 제21조제1항은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1조제3항에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

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또한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이에 따라 현행「도서관법」제21조상의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관련하여 기술융합시대에 있어 전자출판의 발간이 활발해지는 시점하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도서관법」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에 "도서관위원회는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도서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12조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만 되어 있고, 이에 따라「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가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 형태이다.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

1. 목적
2. 도서관 자료의 종류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정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그러므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과, 고시로 두고 고시에 대한 법적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고시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연 도	규정 내용
1998년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연 도	규정 내용
	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6 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003년「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7 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및 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 또는 문고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연 도	규정 내용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년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2010년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이 회원증 하나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사업('13년 125개관 회원 80만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상이한 도서관 시스템간의 호환성 부족 등으로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 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와 지식정보 공유 환경 구축을 통해 대국민 도서관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 표준화 정책 추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자료 및 지식정보 활용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도서관정보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 추진에 관한 근거 신설, 이러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외국의 도서관 정책과 법제

제 1 절 미 국

1. 도서관정책 운영 현황

(1) 개 요

미국은 "의회도서관 회계연도 2008-2013 (The 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iscal Year 2008-2013)"을 통해서 자국의 기본적인 도서관 발전전략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장서 또는 콘텐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원 모두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수집대상도 단행본, 정기간행물, 지도, 음악, 비디오, 디지털 자원 등 모든 포맷의 지식정보로 확대하고, 특히 농업과 의학을 제외한 주제 분야를 통해 전 세계의 정보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18] 또한 디지털 자원에 관한 개별정책은 1999년 처음 발표되었고, 2004년 재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19]

---

18) 김세균 외 2인, 디지털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사회 선도전략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9), pp.34~35

19) 미국 디지털 공공 도서관(DPLA, Digital Public Libracy of America)이 2013년 4월 18일 포털 및 오픈 플랫폼 베타 버전을 선보였다. 2년간의 구축기간을 거쳐, DLPA는 240만 개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미국 도서관, 문서 보관소, 그리고 박물관 등에서 수집한 전자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음성 등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매우 많은 과학적 발견 자료들과 기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DPLA 포털은 미국의 기록물 저장소,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문화 재단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포털은 다량의 기록물 내용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연대기 혹은 10년 단위로 타임라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내믹 맵(dynamic map),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앱 라이브러리, 아울러 DLPA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부 개발자들이 도구를 개발하게 하는 등 다양한 특수 특수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미 의회 도서관과 Hathi Trust 디지털 도서관, 그리고 The Internet Archive 등이 주도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은 도서와 이미지, 역사적 기록물,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많은 대학과 공공 도서관,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디지털로 된 자료들을 제공해왔지만, 이들은 주로 폐쇄된 곳에서 한정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공해왔다. 2010년 12월 하버드 대학의 인터넷 사회 버크만 센터(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는 Alfred P. Sloan 재단과 함께 도서관 및 관련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법과 교육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1년 10월 버크만 센터는 수백명에 이르는 공공 및 연구 도서관 관계자, 그리고 기술 개발자, 기타 자원봉사자들을 6개 팀으로 구성하

미국은 50개 주로 된 연방국가로 대부분의 실제적인 행정업무는 각 주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교육부이고 그 밖에 의회도서관, 미국연방도서관정보센터위원회, 미국문헌정보학위원회, 미국도서관협회, 미국공공도서관협회 등이다. 각 주마다 주도서관국이 있어 공공도서관정책의 실제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주립도서관이 주민에 대한 공공도서관봉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의회도서관은 의회 부속의 국립도서관으로 기본적 임무는 의회에 대한 봉사이지만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봉사의 범위가 정부 전체와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다.[20]

미국 연방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연방)와 주정부 사이에 분배되는데 있으며, 주정부의 권력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이므로 연방헌법의 영역 내에서만 자기책임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21] 국가차원의 정책은 연방정부가 관장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행정업무는 각 주에서 자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자에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도서관정보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연방정부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의회도서관, 연방자금을 관리하는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진흥기관(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등이 있다. 그 가운데「1970년 Public Law 91-345」에 근거하여 설립된 NCLIS는 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계획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 입법부, 기타 공공 및 민간기관에 자문하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이다.[22]

여 DPLA 구축을 위한 작업 범위, 디자인 등에 논의했다. DPLA 포털은 DPLA 플랫폼으로 알려진 오픈 API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자 및 학습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38294&service_code=04)

20) 이명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39~40.

21)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도 각 주의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행정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앙관-분관 네트워크, 주 내 각종 공공도서관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로 주법에 의해 설치된 주립도서관이 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정책에 대한 결정은 각 주의 행정기구로서 도서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정은경 외 1인,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p.165)

22) 김세훈 외 3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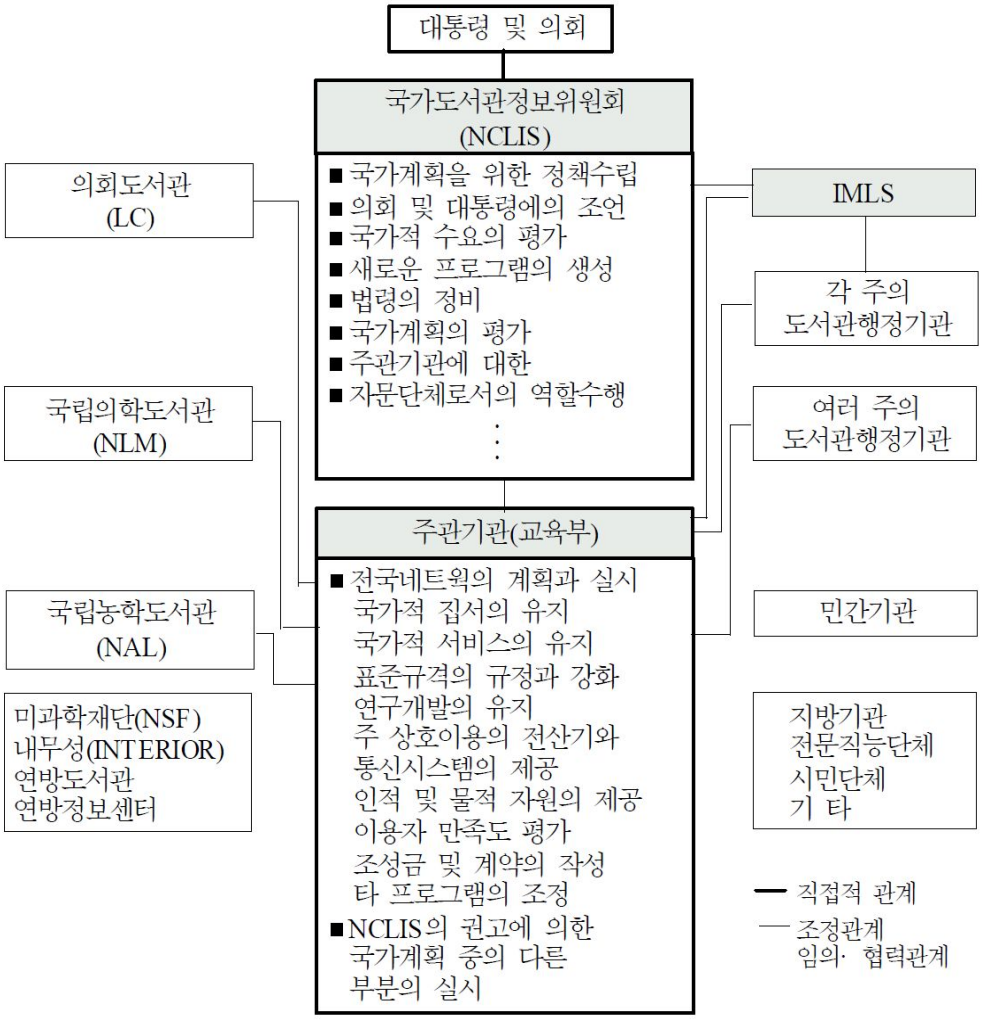

(2) 운영시스템

1) 국가도서관시스템

미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의회에 소속된 LC가 미국의 국가도서관을 대표하며, 산하에 법률도서관과 저작권국이 있다. 행정부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소속된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농무부 산하의 국립농학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교육부 소관의 국립교육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Education, NLE)이 LC와 더불어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23)]

23)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63

LC는 5개의 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한 5개의 국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법률도서관(Law Library of Congress), 그리고 국가디지털정보인프라의 관리와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략기획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국가도서관으로서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으로 이루어져 있다.[24)]

2) 공공도서관시스템

미국에서는 1956년에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교육개선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서관서비스법(Library Services Act, 1956-1963)」을 제정하였다.[25)]

---

24) 미국에서 디지털 정보정책의 시작은 국가디지털정보 체제 및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정책이 1990년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이다. 미국 디지털도서관 초기의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인 DLI(Digital Library Initiative)는 1994년 연방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1994년 이후부터는 NDL(National Digital Library) 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NDL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American Memory project"로서, 이는 미 의회도서관의 소장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토록 하는 대규모 디지털화 작업임.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 Global Gateway, Music Division의 디지털 소장품, the Prints and Photographs Online Catalog, Veteran History Project등에 대해서도 디지털화가 시행되었다. 2000년 12월, 미 의회는 미 의회도서관에게 국가 디지털 정보화 하부구조 및 보관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NDIIPP)의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9천9백8십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계획은 도서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디지털 대상물을 수집, 보존하는 국가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다른 연방 정부 기구 및 도서관들(대표적으로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은 정보기술 회사, 대학, 비영리 기구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NDIIPP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NDIIPP는 세계 6천여 개 대학, 도서관, 연방기관, 기업등의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수집 보존망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세균 외 2인, 앞의 책, pp.35~36) ;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64

25) 미국은 연방의 헌법(Statute), 법률(act), 행정입법(regulation), 부령(executive order)과 각 주의 헌법, 법률, 행정입법, 주지사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ordinance)나 규칙(regulation)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불문법(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 역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미국은 매년 연방의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그 회기동안 통과된 법률들을 모아서 법률집으로 간행하며 이를 ‘Statutes at Large’라고 한다. 1936년부터 간행된 ‘Statutes at Large’는 당해 의회의 회기 중에 입법된 법률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법률의 표기례로서 ‘90 STAT. 417’란 ‘Statutes at Large’ 법률집 제90권의 417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Popular Name’이란 법안이 입안될 때에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명칭을 말한다. “Library Services Act”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예로서 의회에 제출될 때의 형태를 의미한다. 입법 일자순에 따라 수록되는 ‘Statutes at Large’와 달리, 주제별로 편찬되어 있는 공식(official) 연방법전을 ‘U.S.C.’라는 약자로 불리는 ‘United States Code’라고 한다. 1926년부터 출판되어온 ‘United States Code’ 법률집에는 매년 새로운 입법과 수정내용을 담은 추록이 발행되고, 전체 법전을 6년마다 새로 출판한다. ‘United States Code’는 ‘Statutes at Large’에 수록된 법률들은 ‘Title’이라고 불리는 50개의 주제어 안에 분산하여 재배치시키는

이후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s Construction Act, 1964-1995)」을 기초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교부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96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을 근거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보조금 교부대상의 범위도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IMLS는 연방정부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만, NCLIS[26]는 1970~2008년까지 설치되었다가 해체되었다.[27]

도서관위원회는 임명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다.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업들은 1990년대의 전미정보기반사업(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과 정보고속도로 구상 사업 등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로 통과된 것이 주제별로 나누어져 법전 속에 재배치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법전과는 전혀 다른 체계인 것이다. 'United States Code'의 50개의 주제어는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통폐합되기도 하지만 전체개수는 항상 50개로 유지하고 있다.

26) 미국은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국가도서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법률(Public Law 91-345)에 의거한 대통령 소속의 상설 독립기구로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를 1970년에 출범시켰다. 보통 NCLIS로 부르는 이 위원회는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NCLIS는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도서관・정보 요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주・지역정부 및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NCLIS는 도서관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도서관 행정 관련부처에 대한 자문 성과를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도서관 요구를 조사・분석한 후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지난 회계년도 동안의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 도서관 정책의 엔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 정책 및 행정 구조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는 약간 다른 편이다. 국가의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부처(部: Department)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연방정부의 도서관 지원금을 배분하며 도서관 육성 업무를 집행하는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와,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자문하는 기관인 NCLIS 두 기관이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구조이다. 이 위원회는 예산・직원・물품조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NCLIS 법에 명시하고,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다. NCLIS의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15명 정도, 임기 5년)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전체 위원중 5명은 전문직 사서 또는 정보전문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회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와 연구팀을 등을 구성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무기구의 직원을 임명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14권 2호 (2003), pp.98~106)

27)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164~165

이 있다. 이 사업들이 공공도서관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일컬어진다. NII사업을 기초로 학교 및 도서관에 인터넷 보급을 위한 통신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유니버셜서비스 기금 원조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ALA의 한 분과인 공공도서관협의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가 미국 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및 시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PL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2년도 주요 보조금 지원 및 시상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에는 도서관에 자료와 콘텐츠를 공급하는 주요 벤더들과 공동으로 제정한 상들도 포함되어 있다.[28]

(3) 주요 정책추진 기구

1) 현 황

미국 연방정부에서 도서관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집행하는 관련기구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도서관정보과학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하 NCLIS)」와 연방정부의 교육부, 의회도서관, 연방정부의 박물관·도서관 조성기금을 관리하는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등이 있다. 또한, NCLIS는 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기타 공공 및 민간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1970년 [공법 91-345]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문기구이고, IMLS는 과거 연방정부 교육부의 도서관계획과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의 도서관 및 박물관 조성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96년 「전미예술 및 인문재단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소속으로 설립된 독립기구이다.[29]

2003년 「박물관도서관법」에서는 IMLS 아래 「전미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 이하NMLSB)」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진체계에는 다소 변화를 맞

28)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65
29)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p.49

게 되었다. 이에 따라 NCLIS가 1996년「박물관도서관법」에 의해「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원(IMLS)」의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권한 및 책무에 자문하도록 부여받았던 정책적 조언기능은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전미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NMLSB)」가 연방정부의 도서관・박물관 지원기금운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연방기구가 되었다.[30]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도서관정책에 자문 및 제안의 권위를 인정받았던「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NCLIS)」의 의장은 2003년「박물관도서관법」의 9105a조에 의거하여 NMLSB의 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결국「전미 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NMLSB)」가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 도서관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1]

2) 미국연방도서관정보센터위원회

미국 연방도서관정보센터위원회(Federal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mmitte, FLICC)는 의회도서관 산하기구로 연방정부의 도서관에 관련된 정책과 문제점 검토, 기존프로그램과 자원의 평가, 도서관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정보수집, 보존, 배포를 위한 정책 검토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임무는 정부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도서관과 정보봉사에서의 수월성을 촉진하고 또 연방도서관 및 정보네트워크 (Federal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를 위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도서관및정보네트워크의 임무는 연방정부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구매, 훈련 및 자원공유 컨소시엄으로 봉사하는 것이다.[32]

3) 미국문헌정보학위원회

미국문헌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는 1970년 7월 20일「Public Law 91-345」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국가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 책임을 지니며 도서관 및 정보봉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제안을 한다.

30)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9
31)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9
32) 이명옥, 앞의 책, p.40

국가적으로 도서관과 정보의 정책과 계획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의 독립된 상임부서이다. 1996년 “박물관및도서관서비스법”에 의하여 NCLIS는 도서관봉사에 관련된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연구소”(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책임, 권한 및 권능에 관계되는 전반적 정책에 관해 IMLS소장의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진다.[33)]

4) 미국공공도서관협회

미국공공도서관협회는 미국도서관협회의 한 부회로서 1951년 창설되었고 모든 연령층의 이용자들과 모든 유형의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봉사를 확장보급시키고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일반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4)]

2. 법제 현황

(1) 도서관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1991년에 개정된「Public Law 102- 95」는 위원회의 멤버십과 국제적 권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35)]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가 도서관 및 정

33) 이명옥, 앞의 책, p.40

34) 이외에도 각 주의 주도서관국을 제시할 수 있다. 주도서관국은 주의 도서관봉사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책임을 지는 주의 기관으로 주전체의 공공도서관 봉사를 기획하고 공공도서관 발전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도서관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관 규정을 감독한다. 사서, 도서관고문단 및 시민단체에 대한 협의와 자문 봉사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연방보조금과 주보조금을 관리한다.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의 도서관상호대차, 이동도서관 등과 같은 보조적 봉사를 제공하고 종합목록을 작성하며 공공도서관봉사를 받지 못하는 학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한다. (이명옥, 앞의 책, p.40)

35) 미국 도서관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미국 초기의 도서관법은 식민지 개척시대의 개인문고를 모태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과 궤적을 함께 한다. 1731년 프랭클린(B. Franklin)이 필라델피아에 회원제 도서관(Library Company of Philadelphia)을 설립하여 각자의 개인장서를 상호교환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도서관은 후에 미국 공공도서관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 즉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설치·운영하고 봉사하는 시스템은 18세기 후반에 도입되었다. 1796년의 뉴욕주와 1798년의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도서관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848년 3월 18일에는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보스톤시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도서관서비스법 (LSA, 1956)은 연방정부가 1956년에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 정비와 발전을 위한 최초의 성문법인 도서관서비스법 (Library Services Act)을 제정함으로써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LSA의 법제사적 함의는

보정책에 관한 연구와 계획의 수립, 도서관 및 정보요구의 분석과 보고,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 연방・주・지역수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청문 및 출판 등이며, 1996년 「Public Law 104- 208」로 발효된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는 NCLIS가 IMLS의 장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권한 및 책무에 한하여 자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IMLS는 과거 연방교육부(도서관계획과)가 담당하였던 도서관 및 박물관을 위한 연방자금의 독립적 관리기구로 4개 부서(Offices of the Director, Research and Technology, Public and Legislative Affairs, Museum Services and Library Services)에 50명 이상이 15,000개의 박물관과 122,000개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행정조직으로는 주도서관국(State Library Administrative Agency)을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주립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각 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36]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최초의 연방도서관법이라는 사실 외에도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정책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도시지역의 도서관 발전에 치중하던 주정부를 농촌도서관의 진흥으로 유인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최초의 연방법률인 LSA가 농촌지역의 도서관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자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도서관이란 용어를 6회 이상이나 언급하면서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강화와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연방의회에 도시지역의 도서관설립에 필요한 연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64년 2월 LSA의 대체법률로 등장한 것이 도서관서비스및건설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이다. 이 법률은 명칭이 시사하듯이 건설이 추가되었고 또한 모든 관종이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전술한 LSA보다 훨씬 발전적이고 포괄적이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한 레이건 및 부시정권 하에서 연방 보조금의 규모가 답보상태에 있었고, LSCA의 법적 시한이 1996년 9월 30일에 종료되며, 지금까지 적용된 연방정부의 도서관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996년 9월 30일에 미국도서관협회 등의 노력으로 상술한 LSCA의 대부분과 고등교육법의 일부를 포괄하는 대체법률, 즉 도서관서비스및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이 Public Law 104- 208'로 제정되었고, 이것은 후에 MLSA(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에 흡수되었다. LSTA의 특징은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LSCA에서의 건설(Construction) 을 삭제하는 대신에 기술(Technology)을 포함시키는 한편, LSCA(1995년)에서 규정하였던 8개의 지출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즉 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과 특수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수집・조직화・제공능력의 강화를 통합한데서 찾을 수 있다.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55~62)

36)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51~52

① 주 전체의 공공도서관 봉사에 대한 기획과 지원
② 최저 기준의 제정과 도서관 발전의 촉진
③ 도서관봉사의 개선을 위한 기준의 적용 및 규정의 감독
④ 전문직(사서), 자문위원회, 시민단체와의 협의 및 자문봉사 제공
⑤ 도서관에 지원하는 연방 및 주보조금의 관리
⑥ 각종 자료의 도서관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등과 같은 추가봉사의 제공
⑦ 종합목록의 작성, 서지정보의 제공
⑧ 도서관봉사의 사각지대(학교, 단체, 개인)에 대한 자료봉사의 제공

요컨대 미국의 도서관 행정조직은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주정부의 도서관국이 분담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자문기구로는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NCLIS가 있고, 또한 최근에는 연방보조금을 조성하고 통합·관리하는 IMLS가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분산형 조직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도서관 및 정보정책의 수립, 각종 보조금의 관리, 실무의 집행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7]

(2) 도서관 법령 체계

미국의 각종 도서관과 관련된 법령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연방정부에서 제정하는 공공도서관법은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법 속에 포함된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국회법 내에서 규정한 의회도서관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38]

37)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52
38)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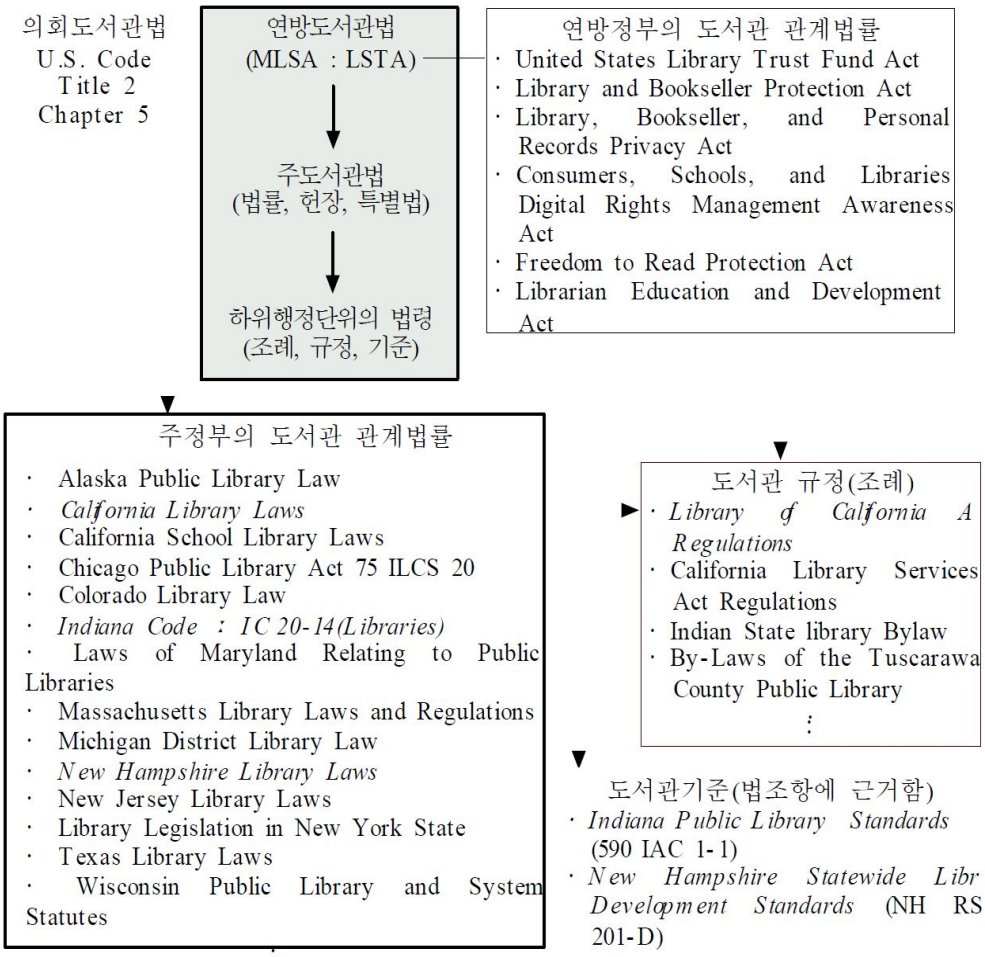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정부는 각주의 헌법, 일반법(법률), 헌장, 특별법 또는 특별헌정, 규정과 조례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가 일반법률(general public law) 속에서 도서관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도 비슷하다. 대개 다음의 3가지를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39)]

① 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의 설치여부는 대체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한 결정방식을 취한다.

② 도서관 세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서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③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

39)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54~55

한편,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주가 독립된 법률형식보다 다른 법령 속에서 그 설치를 인정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 도서관법을 들 수 있는데, 모든 학교구가 학생 및 교사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고, 주정부의 교육위원회가 그것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40]

(3) 주요 법령

1)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03

미국의 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제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허용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최대한의 권한과 자율을 보장받는 연방제의 특징에 따라,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실질적 집행은 주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원적 체제로 구성된다.[41]

연방수준에서 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 법령은 2003년 제정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이다. 이 법은 원래 1996년 제정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LSA)」이 의회 세출예산지출에 대해 가지고 있던 2002년까지의 권한을 2009까지 연장하고 도서관・박물관 관련 정책의 제도적 개혁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재수권법이다.[42]

장애인・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퇴치를 특징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도서관서비스진흥 정책은, 1956년 농촌지역 도서관서비스 보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관서비스법(Library Service Act)」에서 출발한다. 1964년에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도서관과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Act」이 LSA의 대체 법률로 제정되었고, 이는 기술이용과 자원공유를 강조하는 1996년 「도서관서비스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으로 대체될 때까지 무려 30년간 미국 도서관정책의 주축으로 기능하였다.[43]

40)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55
41)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8
42)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8
43)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8

연방정부는 1996년 LSCA의 대체입법으로 LSTA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도서관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1976년 제정 「박물관서비스법(Museum Service Act)」을 합쳐서,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LSA)」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나뉘었던 조성사업의 구조를 통합할 목적으로 '전미 예술 및 인문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의 하부조직으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을 설치하였다.[44]

2) 공공도서관법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은 「공공도서관봉사 및 건축법"(Public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이다. 이 법은 1956년 「도서관봉사법"(Library Services Act)」과 1964년 「도서관봉사 및 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의 뒤를 잇는 법으로 주요 내용은 정책의 선언, 공공도서관봉사, 공공도서관의 건축과 기술의 증진, 도서관 상호협력 및 자원공유, 인디안 부족을 위한 도서관봉사, 외국어로 된 자료의 수집, 도서관 문맹퇴치 프로그램, 평가와 사정, 도서관 학습센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45]

첫째, 정책의 선언에는 정책의 선언, 1984년의 법 개정에 대한 의회의 조사결과와 목적의 선언, 정의, 예산의 위임과 이용, 계획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선언에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도서관봉사를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주의 지역과 주민에게 주가 공공도서관봉사를 확장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또 인디안 부족들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도서관봉사를 기획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였다. 1984년의 법 개정에 대한 의회의 조사 결과와 목적의 선언에서는 도서관의 역할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서는 법에 사용된 용어 정의에 관한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봉사에 관한 내용은 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주 기본계획과 연간프로그램을 제출한 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44)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p.48~49
45) 이명옥, 앞의 책, pp.41~43

교부금을 제공한다고 하고 그 내용은 공공도서관봉사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봉사가 확장되도록 하고 주의 주민 개개인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봉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열한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도서관 상호협력 및 자원공유에 관한 것은 자원공유와 보존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자원공유의 내용으로는 주의 장기프로그램과 연간프로그램은 주전체적 자원공유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전체적 계획을 비롯하여 주의 기본계획과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주도서관국은 주도서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상호협력과 자원공유에 참가중이거나 참가 예정인 기관들의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 장기프로그램, 참여도서관, 학교수업이 아닌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프로그램에는 장기프로그램과 연간프로그램, 계획승낙조건, 기금의 이용, 주도서관 행정국의 계약권한에 관한 것이다.

넷째, 문맹퇴치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장관은 주립 및 지역공공도서관에 문맹퇴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준다는 장관의 의무에 관한 것, 도서관문맹퇴치프로그램의 조정과 기획,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서와 자원봉사자의 훈련을 위한 준비라는 주립도서관 교부금의 목적에 관한 것, 문맹퇴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 기관, 단체의 자발적 봉사의 활용을 증진하고 문맹퇴치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며 문맹퇴치프로그램을 위하여 도서관시설을 이용한다는 지역도서관 교부금의 목적에 관한 것과 교부금의 수령인은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는 수령인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다섯째, 도서관학습센터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은 가정학습센터와 도서관문맹퇴치센터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가정학습센터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가정이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참여하고 평생학습을 할 기회를 확대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도서관문맹퇴치센터의 설립 목적을 미국 내에서 문자 해독이 미숙한 성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역공공도서관에서 문맹퇴치 자료와 장비를 보급할 리소스센터(resource center)로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도서관기준

(1) 개 요

미국의 공공도서관 기준(public library standards)은 주(states) 단위로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 기준은 지역주민에게 지식, 정보, 그리고 다양한 사상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2005년판(4판) 위스콘신 공공도서관 기준(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은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4단계 수준으로 구분을 하였다. 그리고 영역은 지배구조와 운영, 인적자원, 장서 및 자원, 서비스, 접근 및 시설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서와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었다.[46]

(2) 공공도서관기준

미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은 50개 주정부 가운데 10주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주에서 공공도서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Oklahoma와 Alabama의 경우에는 계획노력(planning efforts)을 돕는 것, Missouri주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의무에 대해 평가메커니즘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 Alabama주는 양질의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해 철학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 Missouri주는 도서관발전 도구로서 성장과 발전을 제공하는 것, Maine주는 도서관발전을 위해 강도를 확인하고 영역을 선정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 Michigan주는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공유된 비전을 제공하는 것, Oregan주의 경우에는 자원이 충분한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New Mexico주는 주의 원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기준은 관리조직, 직원이나 인원, 장서, 서비스, 기술, 홍보 등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영역은 법적 실체로서 반영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47]

---

46) 곽동철 외 4인,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7), pp.44~45
47) 이명옥, 앞의 책, p.44

그리고 미국공공도서관기준 중 18개 주가 일반법이나 행정명령 또는 도서관법에서 도서관기준을 제정·준수하도록 규정하거나 포함시킴으로써 법적효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정부의 법률이나 행정명령(규정)에서 기준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New York, Utha, Virginia주이고 둘째, 기준이 실제적으로 주의 법률이나 규정에 포함되는 주는 6개 주로 Indiana, Massachusettes, Montana, New Hampshire, New Mexico, Pennsylvania이다. 셋째, 기준제정은 자발적이지만 도서관법에서 주정부 보조금의 수혜요건으로서 기준이 언급된 주는 Illinois주이다. 넷째, 기준제정은 자발적이지만 도서관법에서 주법률이나 행정규정에 기준제정을 명시한 경우는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Texas, West Virginia, Wisconsin주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Vermont주의 경우는 기준제정을 주법률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입법부에서 승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이다. 여섯째, 기준제정이 자발적이며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Alabama, Colorado 등 22개 주이며 일곱째,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는 Alaska, Arizona 주 등 10개 주인데 Arizona의 경우에는 기준은 없지만 지역계획프로세스를 채택하며 Delaware, Missisippi, Hawaii의 경우는 기준제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48)]

연방정부가 2003년부터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의 대다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주체인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와 산하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그리고 각 주에 대한 지원 및 연방자금 활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도서관법은 주정부 단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기준도 주별로 제정·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지아(Georgia)주와 텍사스(Texas)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도서관법은 주의회에서 주법률 형식으로 제정되었고 기준은 조지아주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주단위 도서관조직인 조지아공공도서관서비스(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s)에서 제정하였다. 「조지아도서관법」(Georgia Library Law)은 도서관 기금의 사용,

48) 이명옥, 앞의 책, pp.44~45

위원회조직과 기능, 연차보고서, 도서관설립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이 대부분인 반면에 공공도서관기준(Georgia Public Library Standards)은 서문에서 도서관 평가 및 측정을 위한 핵심도구인 동시에 주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이나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준은 도서관장과 직원을 위한 내부적 도구로서의 운영업무기준(Operating Service Standards)과 모든 도서관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법자 및 다른 기금출처들이 공유해야 하는 지침으로서의 핵심서비스기준(Primary Service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는 운영, 직원, 장서개발 및 평가, 공공서비스와 장서서비스, 기술서비스, 접근 및 시설이, 후자는 관리지침으로 주로 위원회 구성, 기금, 직원배치기준, 자료구입비 상한선 등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텍사스도서관시스템법」(Texas Library Systems Act)은 주립도서관과의 협정으로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주내 10개 지역도서관시스템의 운영체계 및 도서관기금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도서관의 정의(Sec.441.122)에서 소형도서관(community library)은 봉사대상 인구 25,000명 이하로, 중형도서관(area library)은 25,000명이상을, 대형도서관(major resource center)은 2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텍사스 공공도서관기준은 주립도서관 및 문서관위원회(Texas State Library and Archives Commission)와 텍사스도서관협회(Texas Library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이다. 이 기준의 서문은 도서관서비스 수준과 이용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면서 도서관 행정가나 지원자들이 기금요청을 정당화하는 인증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측정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과측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준의 구성내용은 서문(목적, 철학, 서비스수준, 평가, 개정), 운영, 장서, 시설, 재정, 마케팅 및 공공관계와 옹호, 인원, 서비스, 기술관련 기준 등 8개의 항목별 기준과 각각을 4단계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공간소요 조사표, 용어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텍사스주의 공공도서관은 각 항목기준별로 상(comprehensive), 중(enhanced), 하(basic)로 자체점검도 할 수 있으며, 주립도서관 도서관개발국의 2년 주기 도서관평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49)]

49) 윤희윤 외 6인,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0), pp.30~32

4. 사서자격기준

미국의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 정보학 분야에서 전문직 커리어를 준비하는 기본적 자격으로서 미국도서관협회(이하 ALA라 기술한다)가 인증하는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를 요구한다. ALA 인증은 그 교육프로그램이 문헌정보학 석사 프로그램을 위한 ALA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등에서는 ALA 인증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ALA의 "문헌정보학과 인적 자원 활용 정책선언(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Policy. LISHRU)"은 "모든 유형의 도서관 서비스의 최상 기준 및 그것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자격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도서관 직원의 범주, 이 범주의 직원의 준비에 적합한 훈련과 교육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는 도서관 전문직 직원의 범주와 기본요건 및 책임의 성격을 명시하며, 후자는 도서관 보조직 직원의 범주와 기본 요건 및 책임의 성격을 명시한 것이다. 전문직과 보조직 직원 범주의 자격은 "도서관 관련 자격(Library Related Qualifications)"과 "도서관 무관 자격(즉, 도서관과 관련 없는 자격 Non-Library Related Qualifications)"으로 구분되어 있다.[50]

※ 도서관 전문직(Professional) 직원의 범주

도서관 관련 자격	도서관 무관 자격	기본 요건	책임의 성격
선임사서 (Senior Librarian)	선임전문가 (Senior Specialist)	사서/전문가의 조건 +적합한 경험 및 계속적 전문성 발전	행정을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최상급 책임 사서직의 특정 측면의 고급 지식 도서관에 가치있는 다른 주제 분야의 고급 지식
사서	전문가	사서: 석사학위	독자적 판단을 요하는 관리와 감

50) 곽동철 외 2인,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pp.55~56

도서관 관련 자격	도서관 무관 자격	기본 요건	책임의 성격
(Librarian)	(Specialist)	전문가: 전문분야에 적합한 전문 학위	독 규칙과 절차의 해석 도서관 문제의 분석 및 그에 대한 독자적, 창의적인 해결책의 구성을 포함하는 전문적 업무 (보통 학위로 표현되는 주제 분야의 지식을 사용함)

※ 도서관 보조직(Supportive) 직원의 범주

도서관 관련 자격	도서관 무관 자격	기본 요건	책임의 성격
준사서 (LIS Associate)	준전문가 (Associate Specialist)	학사학위(LIS 학습 선호); 혹은 학사학위 +추가의 적합한 학업	관리자는 이전의 도서관 업무경력에 의거한 직업으로 고용 혹은 승진될 수 있음. 도서관 전문가는 어쩌면 전문화된 분야에서 직업이 지원하는 훈련에 의하여 보완되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짐(예를 들어, 상호대차/대출 보존 도서탐색 등)
사서보조 (LIS Assistant)	전문가보조 (Assistant Specialist)	적어도 2년의 대학교육, 혹은 AA 학위 (도서관기술 보조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음)가 선호됨 혹은 고등학교 이후 교육 및 적합한 기술 혹은 자격증 (Certificate) 프로그램	확립된 정책과 절차를 따르면서 보조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및 그러한 과제의 감독을 포함할 수 있음.
사무원 (Clerk)	사무원 (Clerk)	고졸 혹은 동등 학력	개별 도서관이 부과하는 과제

한편 ALA는 “ALA 인증 MLS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져야할 기본적 지식과 기술 및 일반사서(generalist librarian)의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의미하는 “핵심소양(Core competences)”을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 선언을 마련하고자 세부적인 내용을 개발하였다. ALA는 사서, 도서관 관리자(Library Managers) 및 도서관 관장(Library Directors)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세 개 직급에 대한 조건으로서 교육, 기술 및 경험의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ALA가 사서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커리어 안내를 위해 사서직 구인 시에 자주 요구되는 전형적 조건들을 예시한 것으로서, ALA가 규정한 자격취득의 필수적 요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51]

	조건	세부사항
사서	교육	① 어떤 분야에서든 4년 대학 학위
		② 도서관학 석사학위 (Master of Library Science. MLS)
		③ ALA 인증 학교로부터 MLS 학위
		④ ALA 인증 MLS 학위 + 교사자격증(Teaching Certificate) (주로 학교 도서관의 경우에 해당) 혹은 ALA 인증 MLS 학위 + 두 번째 석사 학위 (예를 들어, 법학 학위)
	기술	① 도서관 이용자 커뮤니티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봉사하려는 욕구
		②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새롭거나 개선된 시스템, 절차 및 업무흐름을 발전시킬 능력
		③ 이니셔티브 및 독자적 판단력을 행사하는 능력
		④ 컴퓨터, 인터넷 및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 소프트웨어의 지식
		⑤ 영어가 아닌 언어 사용 집단을 가진 지역사회를 위한 외국어 지식
		⑥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하고 명확하고 간명하게 문서형태 및 말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
		⑦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해석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능력

51)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58

		⑧ 동료, 상사, 자원봉사자, 기타 지역사회 기관 및 대중과 함께 효과적인 업무관계를 자극하고, 수립하며 유지하는 능력
		⑨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과 기술 지식
		⑩ 업무 책임을 조직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능력
		⑪ 도서관자료와 자원에 대한 입증된 지식
		⑫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및 이행하는 창의성
		⑬ 말과 글로써 의사소통하는 능력
		⑭ 특별한 요구를 가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⑮ 타이핑의 정확성과 기술
	경험	졸업 전에 도서관에서 일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음. 이것은 자원봉사자, 사환, 도서관 보조원으로서, 혹은 인턴쉽이나 대학원 학교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일 수 있음. 어떤 도서관들은 MLS에 대한 충분한 진도를 입증한 학생들로 하여금 사서로 일하기 시작하도록 허용함.
도서관관리자	교육	사서와 동일
	기술	사서의 조건 ①부터 ⑭는 동일
		도서관의 운영을 감독, 기획, 조직, 직원 배치, 조정, 예산 계획 수립 및 평가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리기술을 채택함
	경험	전형적으로 사서로서 4～10년의 경험, 이것은 도서관 규모와 직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
		몇 년의 관리 경험
		워크숍과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전문적 발전에 대한 입증된 관심
도서관장	교육	사서와 동일
	기술	도서관 관리자와 동일
	경험	전형적으로 사서로서 10년의 경험, 이 가운데 5년은 관리 혹은 행정 경험. 이것은 도서관 규모와 직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
		워크숍과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전문적 발전에 대한 입증된 관심

제 2 절 일 본

1. 도서관정책 운영 현황

(1) 개 요

일본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는 1890년의 소학교령의 개정으로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서관의 역사는 교육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도 공공도서관을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현(縣)에서 설립한 것과 시(市), 정(町), 촌(村)에서 설립한 것들이 있으며 도서관설립에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있다.[52] 현 교육위원회는 현립도서관을 관리하며 시, 정, 촌 도서관의 설치를 장려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 이동도서관구입비, 도서비 등을 보조하고 현도서관은 관내 타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종합목록을 작성하는 등 현 안에서 중앙도서관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고유사무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이다.[53]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왔는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 개선, 지자체 행정사무의 재배분과 행정체계의 정비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모든 도서관은 종래의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일본의 지방분권은 「지방

52)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정촌을 기초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와 시정촌을 포함하는 광역지방 공공단체로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는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정촌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무를 처리하고, 도도부현은 광역차원의 통일된 사무를 처리한다. 그 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수도에는 특별구, 시정촌에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조합이 있다. 공립도서관은 이런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설치되며, 시정촌립도서관, 도도부현립도서관, 사무조합설립도서관(즉, 광역도서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특별구도서관은 제도상 시립도서관과 동등하게 취급된다(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14).

53) 이명옥, 앞의 책, p.56

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과 「사회교육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1999년 12월 12일 「도서관법」도 개정·공포되었는데 국고보조를 받는 '도서관장의 사서자격 요건'(제13조 제3항)과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립도서관의 기준(제19조)'을 삭제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격기준을 삭제함으로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시정촌)는 고유사무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킨다는 미명하에 외부위탁을 강화하고 있다.[54]

도서관의 정책수립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하부조직은 문부과학성조직령 (政令제92호) 제2조에 의거하여 대신관방 외에 7개국(생애학습정책국, 초등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스포츠・청소년국)과 1개청(문화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사무를 관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애학습정책국이 주관하지만, 실제로는 제25조에서 규정한 산하에 6개과 중에서 사회교육과가 제30조 2호와 4～5호의 규정에 따라 사서직 강습, 공립 및 사립도서관의 정비를 위한 지도・조언・보조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교도서관은 초등중등교육국의 아동생도과가 제36조 3호에 의거하여 정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대학도서관은 연구진흥국의 학술기관과가 제65조 4～5호에서 규정한 대로 시설과 예산을 주관한다.[55]

이처럼 일본의 도서관행정은 문부과학성이 총괄한다. 그렇지만 도서관 및 정보정책의 기본방향은 총리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일본학술회의 및 과학기술회의가 결정한다. 또한 도서관정책은 교육정책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생애학습정책국이, 학교도서관은 초등중등교육국이, 대학도서관은 연구진흥국이, 학술정보(특히 과학기술정보)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기능은 국립정보학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가 각각 주관하는 집중시스템이다.

54) 이명옥, 앞의 책, pp.56~57
55)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72~73

다만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은 종전의 문부성 관할에서 입법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므로 통합부처인 문부과학성과의 조정 및 협력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56]

(2) 운영시스템

1) 국가도서관시스템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NDL)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국회의 요청으로 방일한 미국문화사절단이 권고한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입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NDL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NDL 동경본관과 관서관이 양대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국제어린이도서관, 국회분관, 그리고 행정기관 부속 지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NDL은 1948년에 「국회도서관법(National Diet Library Law)」에 따라 설립되었다. NDL은 관장-부관장 산하에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27개 지부도서관이 속해 있으며, 본관의 조직은 1국 4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NDL은 국내 출판물에 대한 납본제도를 통한 망라적 수집 및 보존, 국가목록 및 서지, 색인 등을 작성하는 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정보 제공 등의 일반적인 국가도서관 업무와 더불어 국회 및 행정, 사법 각 부문에 대한 서비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도서관협력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57]

NDL은 2012년 1월에 새로운 이용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자원과 전통적인 형태의 자료들에 대한 이용자의 막힘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명 “NDL search” 로 불리는 검색서비스가 이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검색서비스는 2010년 8월 시험서비스를 거쳐 1월에 정식 오픈되었으며,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의 자동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58]

56)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73
57)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13
58)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13

2) 공공도서관시스템

일본의 법제도 기준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분류된다.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과 민법 제34조에 의거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한 사립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 외에 어느 누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동종시설이 있다. 2계층 구조의 지방행정제도는 공공도서관 행정에도 반영되어 시정촌립도서관은 주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하며, 도도부현도서관은 주로 해당 도도부현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해당 도도부현 내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협력지원, 시정촌도서관 연락조정업무, 시정촌도서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소장목록 제공 등이 그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공공단체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설치를 위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다. 문부과학성은 2001년 7월 18일자로 문부과학성 고시(제132호)를 통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59]을 공표하였다.[60]

2. 법제 현황

(1) 개 요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도서관법은 헌법 - 교육기본법 - 학교교육법의 체계하에서 제정된 것이며, 하위법령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6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인데, 동법 제244조(공공시설) 제1항이 규정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시설에 공공도서관이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에서는 그 목적, 업무,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59) 이 기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60)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14
61) 일본의 경우 천황제, 국민주권, 전쟁포기,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회의 양원에서 의결로 제정되는 법규인 법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내각이 제정하는 법규(시행령에 해당)인 정령, 각 성청에서 제정하는 법규(시행규칙에 해당)인 성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를 상하관계의 법체계로 볼 것인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간주할 것인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동위의 법령간에 그 효력과 적용순서가 불분명하게 된다.62)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용순서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부분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다시 말해서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법은 헌법 - 교육기본법 - 학교교육법의 체계 내에서 존재하며, 학교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이다. 그리고 국립국회도서관법은 국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규는 그 설립주체에 따라 다르다. 국립대는 국립학교설치법 제6조, 공립대는 지방공공단체가 규정하는 자치조례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도서관을 설치한다. 반면에 사립대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규는 없는 상태이며, 문부과학성령 제44조로 제정된 대학설치기준 제36조 1항 3호에서 대학이 준비하는 교사 등의 시설로 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일본에도 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율한 단독 법령은 없다.63)

(2) 주요 법령

1) 도서관법(1950년)의 주요 내용

일본 도서관법은 소화 25년(1950년)에 처음 제정되어, 이후 많은 개정과정64)을 거치게 되었다.65) 일본 도서관법은 총 3장, 2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62)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74
63)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74
64) 도서관법은 제정이후 모두 7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조문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99년 7월 일본 지방행정 개혁을 위한 추진법령으로 제정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저기준(제19조, 제21조)과 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한 도서관장의 사서자격(제13조 제3항) 등이 삭제되면서, 는 모두 22개 조항만이 남아 있다. 또한 도서관법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는 자료이용의 무료원칙(제17조)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는 등, 일본 내에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이견과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143)
65) 1940년대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도서관의 경우, 그 수가 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공립도서관, 제3장은 사립도서관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각종 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도서관법이 아니라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단일법이라 할 수 있다.66)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제1조), 도서관의 정의(제2조), 도서관봉사(제3조), 사서 및 사서보의 구분(제4조)·자격(제5조)·강습(제6조), 협력의뢰(제8조), 공공출판물의 수집(제9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제2조로 "이 법에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기록 그 밖의 다른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교양, 조사연구, 여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지방공공단체,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 제34조(공익법인의 설립)의 법인이 설치한 건물(학교에 부속한 도서관 또는 도서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도서관 중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도서관을 공립도서관이라 하고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한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이라 한다"고 하였다.

제2장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으로 공공도서관설치(제10조), 직원(제13조), 도서관협의회(제14조-제16조), 입관료(제17조), 공립도서관의 기준(제18조), 도서관의 보조(제20조)에 관한 내용이다. 제10조를 보면 "공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도서관을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에서 제16조로 도서관협의회를 "도서관의 운영에 관해 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도서관이 행하는 도서관

려 32.5%(1940년 4,776개에서 1947년 1,551개관으로)나 감소하여 복구와 재건이 절실하였다. 1946년 3월에는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이 도서관의 공개, 공비운영, 무료이용, 법적 근거의 확립, 아동서비스 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1946년 11월에 언론출판의 자유, 검열금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신헌법(일본국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관련 법령체계도 교육기본법 과 사회교육법 으로 양분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도서관령 은 1950년 4월에 제정된 사회교육법 제9조(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때문에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될 필요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이 1950년(소화 25년)의 도서관법으로 총 3장 29개 조문(1장 총칙 : 제1～9조, 2장 공공도서관 : 제10～23조, 3장 : 제24～29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의 법령과 비교하면, 제3조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무료 이용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제18조에서 문부성 장관에게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국가 및 자치단체의 도서관 설립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고 사서의 직무규정과 자격기준도 명시하였다.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76~78)

66) 이명옥, 앞의 책, pp.57~59

봉사에 관해서 관장에게 의견을 설명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입관료에 대하여는 "공립도서관은 입관료 및 그 밖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기준에 관한 것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부과학대신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지시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도 알리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제20조는 도서관의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는 도서관을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은 사립도서관에 대한 내용으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제2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제26조-제27조), 입관료 등(제28조), 도서관 동종시설(제29조)에 관한 내용이다.

2) 일본 도서관법의 의미

1950년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법(1948년) 및 학교도서관법(1953년)과 함께 일본 도서관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도서관 관련법령의 하나이다. 이들 도서관 관련법령은 모두 패전 후 미군점령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민주적 사회질서로의 재편을 위하여, 승전국 미국의 도서관전문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얻어 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쟁 이전 군국주의적 황국체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정비되었다.[67]

1950년의 도서관법이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사회봉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적인 근거로는 1970년대 초부터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한 국가 보조금이 자치단체에 교부됨으로써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동경도의 경우, 1971년에 산하의 시・정・촌에 도서관 건설비의 절반을 보조함으로써 당시 88개관에 불과하던

67)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142

도서관수가 1976년에는 169개, 1981년에는 229개로 급증하였다. 또한 자료제공을 중핵기능으로 하는 도서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주민의 자주적 문고활동도 그 영역을 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이 운동은 문고의 조성과 도서관의 설치, 그리고 사회적 요구로 확대되어 지방자지제의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도시경영론이나 행정개혁론이 제기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삭감, 운영경비의 축소 내지 억제, 관리운영의 재단위탁 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1950년의 제정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 1990년 7월에는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체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6년 8월에는 사서강습과목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1997년 9월에는 도서관건설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폐지되었다.[68]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설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과는 달리, 일본의 도서관법은 사회교육법(1949년)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공공도서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에서 설치한 국립도서관, 초등 · 중등학교 부속 학교도서관, 고등교육기관 부속 대학도서관, 기업 등이 설치한 전문도서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공공도서관과 비슷하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한 문고 등은 모두 이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69]

3) 도서관법의 주요 개정내용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명치유신, 전후개혁에 이어 제3의 개혁으로 지칭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가 행정개혁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핵심내용은 중앙성청의 재편과 통합, 규제완화, 특수법의 정리·합리화, 국가공무원 정원의 감축,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방분권 등이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은 1995년 5월 19일자로 무려 475개에 달하는 관련법

68)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76~77
69)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142

률을 일괄 개정하도록 규정한 법안, 즉 지방분권일괄법(공식명칭 : 지방분관의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6호로 제정·공포되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사회교육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법도 1999년 12월 12일에 법률 제160호로 개정·공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고를 보조받는 도서관장의 사서자격 요건(제13조 3항)과 도서관의 최저기준(제19조 및 21조)을 삭제하고, 도서관협의회의 위원구성(제15조)을 단순화하였다. 도서관법 이 제정된 후 50년만에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단행된 실로 파격적인 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사회의 정보거점인 도서관을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최저기준을 삭제한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발한 바 있다.[70]

일본의 도서관법은 사회교육법 (법률 제106호) 제9조 제1항(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을 위한 기관이다)과 제2항(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립 및 사립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 외의 단독법률로는 학교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이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모법으로서, 2002년에 최종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 (법률 제41호)은 제1장 총칙(1조～9조), 제2장 공립도서관(10～23조), 제3장 사립도서관(제24～29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1]

① 도서관의 범주에 관하여 제2조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과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한 사립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전문직원의 명칭과 자격에 관한 조문이다. 제4조는 도서관에 배치하는 전문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로 지칭하고, 전자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후자는 사서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 그리고 제5조는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70)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78
71)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78~80

사 서 1.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의 강습을 수료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3년 이상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의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한 것을 포함)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 사서보 1. 사서의 자격을 갖는 자 2.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③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규정인데, 제18조에서 문부과학성 장관으로 하여금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시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18일 문부과학성고시 제132호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이 제정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고시에 관련된 적절한 수량적 목표의 설정, 운영결과의 점검과 평가, 그 결과의 고시 및 설명책임에 대한 의무는 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도서관에 위임하고 있다.

④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직원배치에 관한 규정이다. 제13조는 공립도서관에 관장 및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직원, 사무직원, 기술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에 규정하였던 관장의 사서자격 요건은 삭제되었다.

⑥ 국가의 도서관 보조에 관한 사항이다. 제20조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 기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제23조에서 3가지의 위반사항(도서관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1947년에 공포된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1953년 8월 8일 법률 제185로 제정된 학교도서관법은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1조(・・・학교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도서관 또는 도서실, 보건실,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는 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 운영의 대강을 명문화하고, 국고 부담제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에도 6번이나 개정되었는데, 특히 1997년(법률 제76호)에 일부 개정된 제5조에서는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48년 2월 9일 법률 제5호로 제정・공포된 국립국회도서관법 은 이후 2002년까지 6번이나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제4조는 관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제9조는 부관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4～25조에서 납본의무를 규정한 것이 전술한 다른 법률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3. 도서관기준

일본은 2001년 7월에 문부과학성이 「도서관법」(1950년 법률 제118호)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제정하였다.[72] 이 기준의 법리적 특징은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부서인 문부과학성 고시(제132호)로 공포・시행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용적 특징으로는 일반총칙과 지역단위의 공공도서관인 시(市)・정(町)・촌(村)립도서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인 도(都)・도(道)・부(府)・현(縣)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양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문부성과학성고시」와

72)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 - 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平成24年12月19日文部科学省告示第172号)

관련된 “적절한 수량적 목표의 설정, 운영결과의 점검과 평가, 그 결과의 고시 및 설명책임에 대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도서관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에 공표하고 2004년 3월에 개정한 ‘공공도서관의 임무 및 목표’도 일종의 지침에 해당한다. 이 지침은 개요에서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라고 하면 도서관법상의 기준과 혼동될 뿐만 아니라 기준에는 수량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의 지침은 공공도서관의 임무 및 목표에서 양적 수치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지만 마지막장에서 도서관시스템 정비를 위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기준은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자치단체가 당해지역의 인구수와 면적, 인구밀도 등에 따라 지역관 및 이동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도서관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되었다. 수치기준에는 연면적, 장서수, 개가책수, 자료비, 연간 증가책수, 직원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판 「일본도서관통계」의 수치에서 상위 10%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균값을 인구구간별로 정리하였다.[73] 이하에서는 상기 일본 도서관법에 근거한 도서관기준에 대하여 전문을 소개한다.

[1] 총 칙

1. 취 지

(1) 이 기준은 도서관법(소화 25년 법률 제118호. 이하 “법”이라 함) 제7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이며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법 제3조에 기재된 사항 등의 도서관 서비스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2. 설치의 기본

(1) 시(특별구를 포함. 이하 동일)의 주민에 대하여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권, 도서관 이용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정

73) 윤희윤 외 6인, 앞의 책, pp.35~36

촌립 도서관 및 분관 등의 설치에 힘쓰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활용한다. 아울러 시정촌립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시읍면 전역의 서비스망 정비에 힘쓴다.

(2) 도도부현은 도도부현립 도서관의 확충에 힘쓰고, 주민에 대하여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는 동시에 도서관 미설치촌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서비스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시정촌에 시정촌립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3) 공립도서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설치에 관해서는 서비스 대상지역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성, 면적, 지형, 교통망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 및 필요한 도서관 시설의 면적, 장서수집 능력, 직원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운영의 기본

(1) 도서관의 설치자는 해당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사서 및 사서보 확보 및 자질·능력의 향상에 충분하게 유의하면서 필요한 관리 운영 체제의 구축에 힘쓴다.

(2) 시정촌립 도서관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전자적 기록을 포함. 이하 동일)와 정보제공 등의 이용자 및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실시, 독서 활동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또한, 지역의 정보거점으로서 이용자 및 주민의 요청이나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에 힘쓴다.

(3)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힘쓰고, 주민의 수요를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함으로써 시정촌립 도서관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의 확보를 위한 원조에 노력하고,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간의 연락 조정 등의 추진에 노력한다.

(4) 사립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은 해당 도서관을 설치하는 법인의 목적 및 해당 도서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넓은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도서관의 설치자는 해당 도서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관 사업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시의 확보, 사업의 수준의 유지 및 향상, 사서 및 사서보 확보 및 자질·능력의 향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관리자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 기준에 정해진 사항이 확실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4. 제휴·협력

(1) 도서관은 고도화·다양화하는 이용자 및 주민의 요청에 대응하고 이용자 및 주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상호 이용 등의 다른 시설·단체 등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2) 도서관은 전항의 활동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상호 연계뿐만 아니라 국립 국회 도서관,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에 부설된 도서실,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의 도서 시설, 학교, 박물관 및 마을 회관 등 사회교육시설,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의 조사연구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에도 힘쓴다.

5. 저작권 등의 권리 보호

도서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직원과 이용자가 저작권법(소화 45년 법률 제48호)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위기관리

(1) 도서관은 사고, 재해 기타 비상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예상되는 사태에 관련된 위기관리에 관한 안내서의 작성, 관계 기관과 제휴한 위기관리에 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도서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및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2] 공립도서관

1. 시정촌립 도서관

(1) 관리운영

1) 기본적 운영방침 및 사업 계획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해당 도서관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 방침(이하 “기본적 운영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기본적 운영 방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연도별로 해당 사업 년도의 사업 계획을 책정,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정촌립 도서관은 기본적 운영 방침 및 전항의 지표 목표 및 사업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이용자 및 주민의 요망 및 사회의 요구에 충분히 유의한다.

2) 운영 상황에 관한 점검 및 평가 등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기본적 운영 방침에 근거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사업의 수준 향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년도의 도서관 서비스 기타 도서관의 운영 상황에 대해 정책목표 및 사업 계획의 달성 상황 등에 관한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전항의 점검 및 평가 외에 해당 도서관의 운영 체제의 정비 상황에 따라 도서관협의회(법 제14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도서관 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활용 그 외의 방법에 의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계자, 가정교육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도서관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서관 이용자, 주민, 기타 관계자・제3자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정촌립 도서관은, 전 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도서관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④ 시정촌립 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및 전항의 조치 내용에 대해 인터넷 기타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이하 “인터넷 등”이라 함)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힘써야 한다.

3) 홍보 활동 및 정보 공개

시정촌립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이용자의 확대를 위해 홍보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 발신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홍보 활동 및 정보 공개에 노력한다.

4) 개관 시간 등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 및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관일, 개관 시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태 및 이용자 및 주민의 다양한 생활시간 등을 배려한다. 또한, 이동도서관을 운행하는 경우는 적절한 주기에 의한 운행 등에 힘쓴다.

5) 도서관 협의회

①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도서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사용자 및 주민의 요망을 충분히 반영된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도서관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위원 임명의 기준을 따르고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인재의 참가를 얻도록 노력한다.

6) 시설・설비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 기준의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개가・열람, 보존, 시청각 자료의 시청, 정보의 검색・레퍼런스 서비스, 집회・전시, 사무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외국인 기타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서관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대면 낭독실 등의 시설의 정비, 확대독서기 등 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기기의 정비, 점자 및 외국어에 의해 표시의 충실하도록 힘쓰며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공간 확보 등에 힘쓴다.

(2) 도서관 자료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등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 및 주민의 요망, 사회의 요청 및 지역의 실정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전항의 방침에 따라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도서관 자료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그 때, 향토 자료 및 지방 행정 자료, 신문의 전국지 및 주요 지역 신문 및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의 정비에도 힘쓴다. 또한, 향토 자료 및 지방 행정 자료의 전자화에 힘쓴다.

2) 도서관 자료의 조직화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의 분류, 배가, 목록・색인의 정비 등에 의한 조직화에 충분히 배려하는 동시에 서지 데이터의 정비에 힘쓴다.

(3) 도서관 서비스

1) 대출 서비스 등

시정촌립 도서관은 대출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예약 제도나 복사 서비스 등의 운용에 의한 이용자의 다양한 자료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도록 노력한다.

2) 정보 서비스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인터넷 등과 상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활용에도 유의하면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의 제공・소개 및 정보의 제시 등을 실시하는 레퍼런스 서비스의 내실화・고도화에 힘쓴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도서관의 이용 안내, 테마별 자료 안내, 자료 검색시스템의 공용 등의 서비스의 충실에 노력한다.

③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가 인터넷 등의 이용을 통한 외부의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요구 자료·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지역 내외의 기관 등을 소개하는 서비스의 시행에 노력한다.

3) 지역의 과제에 대응한 서비스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 및 주민의 생활이나 업무에 관한 과제나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및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다음에 게제한 사항 기타 서비스의 시행에 노력한다.

① 취직·전직, 창업 직업 능력 개발, 일상 업무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정비·제공

② 자녀 양육, 교육, 젊은이의 자립 지원, 건강·의료, 복지, 법률·사법 절차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정비·제공

③ 지방 공공 단체의 정책 결정, 행정 업무의 집행·개선 및 이들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정비·제공

4) 이용자에 대응한 서비스

시정촌립 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 및 주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제휴를 도모하면서, 다음의 사항 및 기타 서비스의 충실에 노력한다.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 아동·청소년용 도서의 정비·제공, 아동·청소년 독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연 등의 실시,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좌·전시회의 실시, 학교 등 교육 시설 등과의 제휴

②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 큰 활자 책, 녹음 자료 등의 정비·제공, 도서관 이용 시의 간병, 도서관 자료 등의 대독 서비스의 실시

③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 점자 자료, 큰 활자 책, 녹음 자료, 수화나 자막 영상 자료 등의 정비·제공, 수화, 필담 등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보, 도서관 이용 시의 간병, 도서관 자료 등의 대독 서비스의 실시

④ 유소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 유아용 도서 및 관련 자료·정보의 정비·제공, 구연의 지원, 강좌, 전시회 실시, 탁아 서비스의 실시

⑤ 외국인 등에 대한 서비스 : 외국어에 의한 이용 안내의 작성·배포, 외국어 자료나 각국 사정에 관한 자료의 정비·제공

⑥ 도서관 내관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 택배 서비스의 실시

5)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 및 주민의 자주적·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좌, 상담회 자료 전시회 등을 주최하거나 관계 행정 기관, 학교, 다른 사회 교육 시설 민간 관계 단체 등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에 힘씀과 동시에 학습 활동을 위한 시설·설비의 공용, 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 그 활동 환경의 정비에 힘쓴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이용자 및 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기회의 제공에 힘쓴다.

6) 봉사 활동 등의 촉진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도서관에서의 자원 봉사 활동이 주민 등이 학습의 성과를 활용하는 장소인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의 내실화에도 기여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구연, 대독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 등의 기회나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정촌립 도서관은 전항의 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해당 활동의 기회나 장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해당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4) 직 원

1) 직원 배치 등

① 시읍면 교육 위원회는 시정촌립 도서관 관장으로서 그 직책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및 다른 도서관의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지식·경험과 함께, 사서로 될 자격을 가지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읍면 교육 위원회는 시정촌립 도서관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의 사서 및 사서보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채용 및 처우 개선에

힘쓰고 이들 직원의 직무 중요성에 비추어 그 자질·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으로부터, 법 제14의2에 규정하는 관계 기관 등과의 계획적인 인사 교류(복수의 시읍면 또는 도도 부현의 기관 등과의 광역적인 인사 교류를 포함)에 힘쓴다.

③ 시정촌립 도서관에는 전항의 사서 및 사서 후보 외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둔다.

④ 시정촌립 도서관은 전문적 분야에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2) 직원 연수

① 시정촌립 도서관은 사서 및 사서 보조 기타 직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국제화의 진전 등에 유의하면서 이들 직원에게 지속적·계획적인 연수의 실시 등에 힘쓴다.

② 시읍면 교육 위원회는 시정촌립 도서관 관장 기타 직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연수 기회의 확충에 힘쓰는 동시에, 문부과학대신 및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연수 기타 필요한 연수에 이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

2. 도부현립 도서관

(1) 역내의 도서관 지원

1)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요구에 따라 도서관 지원에 힘쓴다.

① 자료 소개, 제공에 관한 것

② 정보 서비스에 관한 것

③ 도서관 자료의 보존에 관한 것

④ 향토 자료 및 지방 행정 자료의 전자화에 관한 것

⑤ 도서관 직원 연수에 관한 것

⑥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

2)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상황에 따라 그것들의 도서관과의 사이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나 그의 도서관 자료의 대출을 위한 원활한 반송의 확보에 힘쓴다.

3)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상호 협력 촉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으로 구성하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간의 연락 조정 추진에 힘쓴다.

(2) 시설・설비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다음에 제시하는 기능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에 힘쓴다.

① 연수

② 조사 연구

③ 시정촌립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자료 보존 등

(3) 조사 연구

도도부현립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힘쓴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및 주민의 요망,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지역의 각종 조건, 이용자 및 주민의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연구에 힘쓴다.

(4) 도서관 자료

도도부현립 다음에 게재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한다.

① 시정촌립 도서관 등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기 위한 자료의 정비

② 고도화・다양화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향토 자료 다른 특정 분야에 관한 자료의 목록・색인 등의 정비 및 배포

(5) 직 원

1)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는 도도부현립 도서관에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 직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것들의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수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3] 사립 도서관

1. 관리 운영

(1) 운영 상황에 관한 점검 및 평가 등

① 사립 도서관은 그 운영이 적절히 행해지도록 도서관 서비스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상황 등에 관한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립도서관은 전항의 점검 및 평가 외에 해당 도서관의 운영 체제의 정비 상황에 따라 도서관사업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자, 해당 도서관 이용자 기타 관계자・제3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사립 도서관은, 전 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도서관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④ 사립 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및 전항의 조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2. 홍보 활동 및 정보 공개

사립도서관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 및 정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관 시간

사립 도서관은 개관일, 개관 시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설・설비

(1) 사립 도서관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서관 자료 : 사립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이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집·조직화·저장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서관 서비스 : 사립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의 정비 상황, 다양한 이용자의 요청 등에 배려하여 열람·대출·레퍼런스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직 원

(1) 사립 도서관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의 사서 및 사서 보조 기타 직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립 도서관은 그 직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서자격기준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다. 도서관법의 “1장 총칙(제1조-제9조)” 제4조 제1항은 “도서관에 배치된 전문적 직원”을 사서와 사서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서 사서를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업무가 전문적 사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사서가 되는 자격”은 ① 사서강습, ② 대학의 통신교육, ③ 단기대학의 사서과정, ④ 4년제 대학의 사서과정, ⑤ 4년제 대학의 도서관정보학 전문 과정이라는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매년 약 10,000 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시간수나 이수내용의 면에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동일한 자격으로 간주하므로, 결과적으로 사서자격 취득자가 일정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74]

74)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31~32

※ 일본의 사서자격 구분

구분	역할	자격 (도서관법 제5조)
사서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	(1)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조의 규정에 따르는 사서의 강습을 수료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다음에 열거한 직에 있는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로서 규정에 따라 사서의 강습을 수료한 자 ① 사서보의 직 ②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에 있는 직으로서 사서보의 직에 상당하는 자 ③ 위에 열거된 자 외에, 관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있는 직으로서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기타 사서보의 직과 동등 이상의 직으로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자
사서보	사서의 직무를 보조	(1) 사서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교교육법 (昭和22년 법률제26호)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로서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일본 도서관법에서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과학대신의 위촉을 받아 수행할 수 있고, 이수과목, 학점 단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 또한 문부과학대신과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사서 및 사서보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사서 및 사서보의 연수). 한편 일본의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장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은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75)]

75)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상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주로 강습을 통한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과목 및 학점의 수도 많지 않아, 매년 많은 수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배출되어 왔다. 사실상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

※ 일본의 사서 및 사서보 강습의 조건

구분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서 (제2조)	(1)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고 62단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고등전문학교 혹은 도서관법 부칙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포함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3호에 열거된 직무에 통산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도서관법 부칙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그밖에 문부과학대신이 앞에 열거된 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다고 인정된 자
사서보 (제3조)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소화22년 법률제26호)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

다. 첫째, 일본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図書館法”과 “学校図書館法”에 의하여 수행되고, 그것에 기반한 省令에 따른 사서와 사서보 및 사서교사(司書教諭)의 양성 커리큘럼은 강습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서양성은 그 강습 커리큘럼을 준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문직 교육이 대학교육으로부터 대학원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의 교육은 매우 “구태의연한” 양성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법적 구조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모든 도서관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전문적 자격이 없다. 주제별 학・협회수준에서 의학도서관협회가 ‘보건학정보전문원(Health Science 情報専門員)’ 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사서자격이 공공도서관 이외의 곳에서도 도서관 직원의 기초적 자격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은 대학에서 학부 전문교육이나 대학원 석사과정에 서의 전문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서서히 도서관 직원의 양성에서부터 정보전문직 양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본에서도 조속히 이러한 국제적 수준으로 교육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넷째, 이렇게 제도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서나 사서보 자격은 충분한 사회적 인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자격이라고 해도 이것에 따라 취직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공립도서관의 수는 2,700여개이고, 설치한 자치단체의 수는 1,500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서로서 발령되는 신규 정규직원수는 연간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학생이나 사회인의 수는 많아서, 연간에 10,000 명 이상의 유자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사서강습을 행하는 대학은 전국에 13개교, 통신교육이 7개교, 강습에 준하는 학점(単位) 인정을 행하는 4년제 대학이 148개교, 전문대학(短期大学)이 98개교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서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은 20만 명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섯째, 제도적으로 강습이라고 하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사서 양성을 위해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대학 커리큘럼으로서 검토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자격의 인정은 소정의 학점 취득에 따라 개별 기관마다 수행하고 있어, 그 교육내용이나 취득된 기술 수준은 큰 격차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33~34)

일본의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에서 취득해야 하는 과목과 학점 수를 규정하고 있다.[76)]

※ 일본의 사서 및 사서보 강습의 학점 취득 조건

구분	학점취득조건	군	과목	수	군	과목	수
사서 (제4조)	사서의 강습으로 사서 자격을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표의 갑군(甲群)에 열거된 모든 과목 및 을군(乙群)에 열거된 과목 중 둘 이상에 대하여, 해당 수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甲군	생애학습이론	1	乙군	도서 및 도서관사	1
			도서관개론	2		자료특론	1
			도서관경영론	1		커뮤니케이션론	1
			도서관서비스론	2		정보기기론	1
			정보서비스개설	2		도서관특론	1
			참고서비스연습	1			
			정보검색연습	1			
			도서관자료론	2			
			전문자료론	1			
			자료조직개설	2			
			자료조직연습	2			
			아동서비스론	1			
사서보 (제6조)	사서보 자격을 취득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모든 과목에 대하여, 각각 정해진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甲군	생애학습개론	1	乙군	도서관의 자료	2
			도서관의 기초	2		자료의 정리	2
			도서관서비스기초	2		자료의 정리 연습	1
			참고서비스	1		아동서비스 기초	1
			참고자료의 해제	1		도서관특강	1
			정보검색서비스	1			

제 3 절 영 국

1. 도서관정책 현황

(1) 개 요

영국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을 재정의하다’ (Redefining the Library: Overview for the British Library's Strategy 2005-2008)를 통해 도서관 중장기적 발전계획

76)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34

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4대 비전으로 ① 변화하는 연구 정보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② 학계, 개인, 상업적 목적 등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 ③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영국 도서관의 장서와 전문지식에 대한 원격 접근성 향상-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구축, ④ 타 기관과의 파트너쉽 발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서관은 별도의 디지털도서관 정책인 '디지털과 콘텐츠 전략'(Digital and Content Strategy, 2007)을 수립해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전략은 납본법, 라이선스획득을 통한 구독, 그리고 무료자원에 대한 연결 등의 세 가지를 통해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후 2008년에 새롭게 수립된 영국국립도서관 전략 2008-2011(The British Library's Strategy 2008-2011)에 반영되었다. 200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도서관전략의 내용 중 주요 내용은 ① 영국의 디지털 출판물을 확대하여 수집하고 저장하며 전자납본에 의거하여 웹사이트와 전자 출판물 수집, ②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연구자들을 위해 전자화, ③ 디지털 자원의 수집, 저장, 보존[77]을 통해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제공, ④ 적절한 메타데이터의 제공 및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등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78]

한편,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England와 Wales가 같은 법률로 규제되며 지역별 공공도서관봉사는 각 지방정부(County, District)의 도서관당국(Library Authority)

77) 2003년 영국도서관은 'Digital Object Management Programme' (DOM Programme)을 시행하면서, 도서관이 소장한 디지털 아이템(objects)에 대한 접근 및 장기적 보존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들을 개발하는데 착수했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 대상물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저장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이후 'Digital Library Programme'으로 변경되어 영국의 통합적인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디지털화의 고려사항으로 디지털화 대상, 범주, 콘텍스트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웹아카이빙 대상으로는 특별한 요소기술의 이용 여부, 최신 기술 구현, 웹사이트의 이용가능성, 웹사이트의 존재의 위험성등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납본법 역시 웹사이트를 선별적으로 납본받고 하비스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웹페이지 아카이빙을 위해 BL은 Domain.uk와 UKWAC(UK web archiving Consortium)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확보와 접근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아날로그 자원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디지털화하려는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저작권의 지기가 지난 과거 자료들이 대상이다. 대표적인 BL의 디지타이징 프로젝트로는 중국 둔황 유적지의 사료들을 디지타이징한 Dunhauang Project가 있다. (김세균 외 2인, 앞의 책, p.33)

78) 김세균 외 2인, 앞의 책, pp.31~32

이 책임지고 있다. Scotland는 별도의 법률로 규제되며 지역별 공공도서관봉사는 Region과 District로 알려진 지방정부의 의회가 책임지고 있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법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 및 도서관령(Order)"에 의해 "교육 및 도서관위원회"가 봉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79]

(2) 운영시스템

1) 영국의 도서관정책 추진체제

영국의 국가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크게 4개로 집약된다. 국가차원에서 도서관행정을 주관하는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DCMS)와 도서관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자문기관으로 활동하는 박물관도서관문서관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그리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가지식자원 보존을 책임지는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BL)과 도서관 사서 및 정보전문직 권익을 대변하는 도서관및정보전문가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등이 그것이다.[80]

DCMS는 중앙정부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원조를 포함한 도서관 정책 및 지원행정에 있어 조정적 역할에 치중한다. 반면에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행정부서가 맡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의 도서관행정당국(Library Authority)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Joint Boards)가 맡기도 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영국은 각 지역마다 지방정부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라 지역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카운티(county), 단일자치체(Unitary Authority), 디스트릭트(District) 등의 행정단위가 지방정부마다 수준이 달라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행정체계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이에 따라 도서관행정을 주관하는 지방행정단위 또한 다양한 형식의 행정단위를 구성하고 있다.[81]

79) 이명옥, 앞의 책, p.45
8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102
8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2

MLA는 도서관정책자문을 임무로 하는 공공기구로서, 원래 1999년 BL내에서 연구·개발업무를 맡고 있던 연구혁신센터(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BLRIC)를 분리하여 도서관서비스분야 연구개발 및 정책자문을 맡고 있던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S)와 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LIS조직을, 2000년 박물관미술관위원회(Museum and Galleries Commission; MGC)와 재차 통합하면서 탄생한 종합적인 문화정책자문기구이다.[82)]

BL은 영국 내 생산되는 지식자원의 포괄적인 수집을 목적으로, 1972년 제정된 영국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에 따라 영국내 주요 5개 도서관을 통합하여 발족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가차원의 집중형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서지생산과 전국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영국도서관정책 추진체제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83)]

CILIP는 영국도서관협회(The Library Association; LA)과 영국정보전문가협회(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IIS)가 통합하여 2002년 발족한 도서관정보학분야 민간전문직단체로서, 정부 및 사회에 대한 홍보활동과 도서관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 개발, 전문직 재교육프로그램 주도, 연구출판 지원, 국제협력 등 과거 LA의 주요사업을 계승하며, 새롭게 부각되는 정보전문가의 권익홍호를 위한 사회적 발언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84)]

2) 국가도서관시스템

영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그 역사가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도서관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통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내 DCMS 관할 하에 있는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대략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BL), 문헌보급센터(Document Supply Centre, DSC), 신문도서관(Newspaper Library, NL)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85)]

8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3
8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3
8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3
85) 이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영국 국립도서관은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와

영국의 국가도서관인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The British Library Act 1972)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1973년 7월 대영박물관도서관부문 등 5대 도서관과 단일화한 결과 대영도서관이 창설되었다. 대영도서관은 비정부조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자금, 정책, 관리감독 등의 지원업무는 문화・미디어・스포츠성(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영도서관은 납본과 전국적인 서지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지적・과학적・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그것을 핵심자원으로 하여 자국 내 모든 계층에게 봉사하는 국가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각국 정보요구자에게도 원격 대출 및 원문제공(DDS) 서비스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86]

3) 공공도서관시스템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법과 교육 및 도서관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64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스코틀랜드는 1995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Scotland] Act 1955), 북아일랜드는 1972년의 교육・도서관령(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thern Ireland] Order 1972) 을 따르고 있다.[87]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매우 완벽한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850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단위의 도서관법(the Public Library and Museums Act)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작업으로는 eTHOS (e-Thesis National Service Pilot)가 대표적이다. 이토스는 영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 풀 텍스트의 전자적 접근을 제공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2001년 이후 디지털 보관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DPC(The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을 설립하였다. DPC의 목적은 영국내에서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보존을 일차적으로 하며, 지구적 차원의 디지털 기억에 대한 지식 베이스를 보장하는 다른 국제 기구들과도 공동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영국도서관은 스탠포드대학이 주도하는 LOCKSS(Lots of Copies Keep Stuff Safe)에 참가하여, 디지털 보관 및 운용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및 소프트웨어 제공을 위한 국제적 공동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세균 외 2인, 앞의 책, p.34) ;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59

86)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59

87)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160~161

을 제정하였고, 맨체스터(Manchester)시는 이 법에 근거하여 1852년에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공적자금으로 건립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이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매우 명확한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들은 일부(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 및 관리되고, 완전한 분관시스템 하에서 운영된다. 한 지역, 즉 한 지방자치정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하나의 중앙관(Central Library)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상호 연계(networked)되어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분관(Branch Library)이 된다. 따라서 중앙관과 분관의 상호 관계는 의도적인 관계가 아닌 태생적 관계이다. 즉, 분관이 만들어지고 차후에 의도적으로 이 분관이 중앙관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모 밑에 자식이 태어나듯 분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중앙관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이 점이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서관이 건립되고 차후에 같은 지역에 또 다른 도서관이 문을 열 때, 그 도서관은 첫 번째 도서관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도서관간에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도서관의 탄생이 중앙도서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한지역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중앙관의 최고 경영자인 도서관장의 주도하에 다른 도서관(분관)을 건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서관을 중앙관과 연계되는 분관으로 삼는다.[88]

도서관관련 주무부처인 영국의 DCMS는 산하에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을 설치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무상(Secretary of State)은 2010년 7월 기존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2011년 10월부터 ACE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10). 영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저작물에

88) 김영석,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pp.37~38

대해 그 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PLR (Public Lending Right)을 운영하고 있다. 1979년의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을 근거로 1982년에 도서관에서의 자료대출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89)]

(3) 정책추진기구

영국 중앙정부의 도서관 행정조직은 문화・매체・체육부 (DCMS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산하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유산국 (Museum, Galleries, Libraries & Heritage Group)이 주관하고 그 하부조직인 박물관・도서관・사료과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료정리 및 보존, 박물관, 교육, IT에 관한 정책)와 박물관・도서관 후원과 (잉글랜드의 국립박물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업무)가 집행한다. 그리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수립 및 행정기능을 자문하는 기구로 도서관정보위원회(LIC :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8)를 두고 있다.[90)] 이 국가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자로 영국도서관 연구혁신센터(BLRIC :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와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NCLIS, 일본의 학술심의회, 한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유사한 위상과 성격을 지닌 LIC는 내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처별 도서관 및 정보정책을 조정하고, 외적으로

89)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161

90) 영국은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로서 1995년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와 이 위원회가 강력한 기구로 통합・개편되어 2000년에 발족한 "박물관・도서관・기록보존소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가 대표적이다. MLA는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비정부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인데, 형태만 다를 뿐 인류문화의 핵심 자원을 공통적으로 수집・관리・활용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박물관・도서관・기록보존소 등 3개 기관의 국가 정책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의 위원회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도서관・정보 분야 발전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활동, 도서관 관련 중앙정부기관・지방정부기관・지역단체・국가대표도서관・비즈니스 기관 등에 대한 자문활동, 정책제안 및 성명서 발표, 연구보고서・정책보고서 등의 간행 활동,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정보 분야의 문제를 조율하고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국제 활동을 통해 각 부문 별 정책수행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정보정책 연구기능은 1999년까지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의 연구개발부에서 담당해 왔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직원을 흡수하여 는 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연구 기능이 일원화 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17명)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사무기구는 LIC 시절에는 소규모였으나, 국가대표도서관 연구개발부를 흡수하고 MLA로 통합된 후에는 대형화되었다. (이용남, 앞의 논문, pp.106-112)

영국의 권익을 대변·옹호한다. 이 위원회의 산하에는 연구소위원회(research sub- committee)와 국제소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ttee)가 있으며, 주요 기능과 역할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91]

① DCMS 장관의 국가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도서관·정보분야의 정책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③ 정부 보조금의 조성·집행·평가에 대하여 자문한다.
④ 유럽도서관계획(ELP)에 대한 영국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도서관·정보정책 및 관련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킨다.
⑥ 기타 도서관·정보와 관련된 국제활동을 주관하거나 참여한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도서관 행정조직은 DCMS, 정책자문기구는 LIC로 체계화되어 있다. 다만 DCMS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원조를 포함한 조정적 역할에 치중하며, 그 실제의 운영은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의 도서관 및 정보정책은 자문기구인 LIC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등의 전문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92]

2. 법제 현황

(1) 개 요

영국의 도서관법 체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과 영국도서관법 (The

91)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36~37
92) 이외에도 자문기구로서 “Resource”가 있다. “Resource”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 및 행정기능을 자문하는 기구로 1995년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로 출범하였다가 'Museums & Galleries Commission'과 통합하여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로 2002년 4월에 재발족하였다. 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부처별 도서관 및 정보정책을 조정하고 외적으로는 영국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한다. “Resource”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보면 DCMS 장관의 국가자문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정보분야의 정책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보조금의 조성·집행·평가에 대하여 자문한다. 유럽도서관계획(ELP)에 대한 영국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정보정책 및 관련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며 기타 도서관·정보와 관련된 국제활동을 주관하거나 참여한다. (이명옥, 앞의 책, p.46)

British Library Act)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지방정부법 이나 자치단체별 도서관조례 등이 존재한다.[93] 기타 관련법으로는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Freedom of Information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art 4. Libraries and Learning Centres, UK Copyright Act, Public Library Web Sites and the Data Protection Act 등이 있다.[94]

즉, 판례법과 관례법을 우선하는 영국에서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으로서 전국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도서관관련 기본법령으로는,「영국도서관법」과「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등이 있고, 기타 관련법령으로「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art 4 : Libraries and Learning Centres)」,「영국저작권법(UK Copyright Act)」등이 지적된다. 이 중에서「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은 1850년 제정된「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을 모체로 100년이 넘게 무려 30여 차례나 개정을 반복하여오다가, 1964년 박물관 및 미술관분야를 포함하여 전문 3장 26개 조문으로 제정된 공공도서관 기본법이다. 이는 지난 100년간「공공도서관법」을 실시한 결과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정법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자, 새로운 입법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도서관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조하는 입법취지를 수용하여 제정한 것이다.[95]

---

93) 영국의 법원(法源)으로는 불문헌법,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유럽연합법, 법률(acts of parliament, statutes), 법규명령(statutory instrument), 판례법 등이 있다. 법원의 위상은 이론상으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나 사실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cts of Parliament, Statute, 또는 Primary Legislation은 의회가 입법 절차를 따라 제정하는 법률로 가장 중요한 법제이며 법규명령에 대해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영국 전역에 또는 특정 관할권에 적용되며 판례법을 대체한다. 법규명령은 Statutory Instruments 또는 Delegated 또는 Secondary Legislation이라고 불린다. 법률이 세부사항에 관한 규율 제정을 행정에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법규명령의 형태로 제정되며 행정입법(regulations) 또는 명령(orders)라는 명명된다. 판례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불린다. 영국은 전통적인 보통법 국가로서 선례구속성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의 판례를 구속한다. 귀족원(House of Lords)는 자신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판례법은 법률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영국전역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법률에 의해 대체된다.

94)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38

9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p.103~104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의 조문 중 특징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는, 제2조에서 도서관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s)"를 설치하여 장관에게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각 도서관 행정단위 지역마다 도서관간 협력을 목적으로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s)"를 조직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정체결과 그 실시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도서관행정당국이 도서관시설에서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96]

또한, 제8조에서는 도서관서비스의 기술적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인정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무료원칙에 근거해서 수행되어 왔던 도서관서비스가 각종의 전자적 장치와 유료정보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도서관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되면서 도서관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조문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1991년 제정된 「도서관요금규정(The Library Charges Regulations)」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실정을 반영한 결과였다.[97]

(2) 주요 법령

1) 공공도서관법 (PLA, 1850)

1850년 8월 영국 국회는 최초로 공공도서관법(Library Act 1850)을 통과시켰다.[98] 이 법은 세금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및 무료공개주의 원칙

9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4
9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04
98) 영국에서는 18세기말 산업혁명의 결과로 초래된 일련의 사회개량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1833년의 제1차 공장법, 1848년의 제1차 공중보건법 등의 사회개혁법이 제정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제정된 영국 최초의 도서관법이자 국가가 도서관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 1850년 8월 14일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 in England and Wales 1850)이다. 이 PLA가 제정된 단초는 비록 17세기 초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적 성격의 도서관이 존재하여 왔으나, 1835년 대영박물관을 개혁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전국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를 표면화시킴으로써 도서관 설립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된데서 찾을 수 있다. 그 핵심인물은 처음에 벽돌공장의 직공이었다가 Mechanics' Institute libraries 에서 독학하여 1839년에 대영박물관 간행부의 직원이 되었으

을 확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구 1만명 이상의 자치도시(borough)에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과세권을 인정하는 등 이후 유럽 각국의 공공도서관법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지방공공도서관 운영의 여건을 확립하였다. 이후 1884년의 개정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의회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위를 완전하게 만들었으며 1892년에는 공공도서관조례(Public Library Act)가 제정되어 흩어져 있던 모든 공공도서관법을 전면 통·폐합하여 단일법화하였으며 1964년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 Act)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법이 되었다. 이 법은 지방관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종전의 법률에 비하여 모든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은 본문이 3장, 2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조문은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이며 그 이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계되는 조문이다.[99]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 중앙자문심의회, 도서관상호간의 협조를 위한 지역위원회, 도서관행정집행기관 및 그의 관할구역, 합동위원회, 시 및 면에 관한 특례, 도서관행정집행기관의 일반적 의무, 도서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제한, 분담금

며, 후에 영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정신적 대부로 추앙받은 에드워즈(E. Edwards, 1812- 1886)이다. 그는 1848년 3월 20일 런던통계학회에서 유럽 및 미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에 관한 통계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고 1848년 8월에 학회의 기관지에 게재되었다. 논문의 요지는 유럽에 1만권 이상의 장서를 가진 공공도서관이 383개(프랑스 107, 오스트리아 41, 프러시아 30, 영국 29, 스페인 17, 벨기에 14, 스위스 13, 러시아 12, 등)에 달하지만, 영국 도서관의 장서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전체 42개국 가운데 41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 주목한 인물이 1840년부터 인민헌장운동가(Chartist)로 활동하였던 에드워즈, 그리고 브로더튼(J. Brotherton)과 함께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에와트(W. Ewart, 1798- 1869)이다.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에와트는 에드워즈와 접촉하여 1849년초에 하원의회에서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년 3월 15일 하원에 공공도서관의 설치촉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에와트는 그 해 7월 12일에 개최된 대책위원회에 도서관설치 및 유지를 위한 과세권한을 시의회에 부여하고 도서관 설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자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부분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어 1850년 2월 14일 하원에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안) 을 제출하였고, 세 차례에 독회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찬성 64, 반대 15)되었으며, 이어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8월 14일 국왕이 공포하였다.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38~39)

99) 이명옥, 앞의 책, pp.46~47

및 보조금, 의무불이행에 대한 장관의 권한, 직원의 신분, 자산 및 의무의 이양에 관한 보충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에게 "영국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서비스의 향상을 감독하고 지원하며 이 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에 부과된 도서관 관련 기능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서관정책결정기관은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서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지만 자료대출은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또는 종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한다. 또한 법에 의하면 인쇄자료와 매체자료를 대출하거나 참고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서관시설을 보장해야 하고 자료들은 자료의 수나 범위, 질적인 면에서 성인과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요구와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른 도서관정책결정기관과의 협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도서와 기타 자료를 적절하게 보유, 유지해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에게 서지정보와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어 도서관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100]

2) 공공도서관통합법 (PLA, 1892)

1850년의 PLA는 수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법을 중심으로 한 부수적 법률이 무려 6개에 달하여 적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1892년에 에와트의 후계자로 지칭되는 러복(J. Lubbock) 의원이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총 7개의 법률을 전면 통합한 새로운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Law Consolidation Bill)을 제정하였다. 이 통합법의 법제사적 함의는 1964년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합한 법률, 즉 PLMA가 제정될 때까지 72년간 영국 공공도서관의 모법으로 운용된 점에 있다.[101]

그러나 1892년의 법률도 역시 과세비율, 법률채택의 절차와 방식, 적용대상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1955년까지 13회나 개정

100) 이명옥, 앞의 책, pp.47~48
101)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40~41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1893년에는 법률을 도시지역에 적용할 때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법률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1901년의 개정에서는 지방관청이 그 지역에 법률을 채택할 경우에 즉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위원회에 서면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도서관의 이용과 자료보존에 필요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였으며, 1898년에 제정된 도서관범죄법 (Libraries Offences Act)을 적용한 도서관의 징계권을 대폭 강화하였다.[102)]

한편 1919년에는 도서관세의 상한조항을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다. 그것은 지역 내에 산재하는 도서관의 관리감독권이 주정부에 부여되고, 도서관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던 과세금액의 상한선이 폐지됨으로써 예산증액과 더불어 봉사권역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의회(county council)는 농촌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할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적 낙후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1850년에 영국 최초로 공공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후술할 현행 법률인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66회나 제(개)정 법안이 제출되었다.[103)]

3)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 (PLMA, 1964)

과거 1세기 동안 PLA는 영국 공공도서관의 모법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4년에 종래의 모든 법률을 통합한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 (PLMA)이 제정되었다. 과거의 PLA를 새로운 법률로 대체한 이론적 배경은 일련의 연구보고서 (Kenyon, McColvin, Roberts, Bourdillon 등)에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자국 내에서 도서관 공백지대가 해소되어 PLA의 제정취지인 채택제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PLA는 중앙정부가 도서관 설치를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그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 법률로써 지역 내의 도서관 공백지대를 해소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법률을 1세기 동안 적용한 결과,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미설치 행정구역이 사라져 실정법으로서의 존재가치

102)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41
103)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41

를 상실하자 새로운 입법정신을 반영한 법률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 PLMA는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신은 제1조 제1항(교육부 장관은 지방행정청이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사업을 감독하고, 그 개선을 촉진하며, 이 법이 도서관 행정국으로서의 지방행정청에 부과한 도서관 관련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는 책무를 지닌다), 제4조(새로운 법에 의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자치단체는 도, 특별시, 런던 특별구,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구 4만 이상의 시와 구에 한한다), 제7조 제1항(도서관 행정국은・・・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설비・도서・기타 자료를 구비・유지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이 반증하고 있다.[104]

요컨대 PLMA는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법률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만 적용되는 단일법이며, 입법정신이 종전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다른 법률이 규정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의 도서관봉사의 의무화, 국가의 도서관봉사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도서관 상호협력의 의무화 등의 키워드를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공공도서관법을 제(개)정할 때 표준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다음 해인 1966년에 영국정부는 과거 30년의 숙원이었던 지방정부를 개편하게 되어 지방정부법도 1972년에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PLMA의 지방행정청 문제를 비롯한 관련조항도 개정되어 도서관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었다.[105]

4) 국가도서관법 (BLA, 1972)

1967년에 영국정부는 노팅험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의 부학장이던 데이튼(F.S. Dainton)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도서관의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위원회는 1969

104)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43
105)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45

년 9월에 국립도서관위원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립도서관관리국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법인을 구성하되 기존의 주요한 국립도서관을 합병하여 관리운영을 개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즉시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교육과학부 장관은 1970년 4월 4일 하원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 해 1월에 정부는 영국도서관 (British Library)이라는 백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 골자는 런던의 대영박물관도서관(British Museums Library : 장서 700만권 이상),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 장서 300만권), 웨일즈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Wales : 장서 200만권), BML의 부속기관인 국립참고도서관(National Reference Library of Science and Invention : 12만건의 레포트), 영국국립서지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보스톤 스파의 국립대출도서관(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장서 90～100만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국립기관은 아니지만 교육과학부를 통해 국고를 보조받는 전국중앙도서관(National Central Library : 장서 73만)을 통합한 새로운 국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계획을 추진하려면 근거법령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1972년 7월 27일에 법률 제22호로 제정・공포된 대영도서관법 (British Library Act, 1972)이다.[106)]

1972년 제정된 “영국 도서관법”은 당시 영국박물관도서관(BML), 국립과학기술대출 도서관(NLLST), 국립과학발명참고도서관(NRLSI), 국립중앙도서관(NCL) 등 4개 도서관과 영국국가서지(BNB)를 통합하여 새로 발족한 영국도서관을 감독 및 관리하는 책임기구로서 ‘영국도서관위원회(British Library Board)’를 설치하였다.[107)]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전국적인 참고 및 서지 정보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 관리하며, 도서관서비스를 다른 교육기관이나 산업에 활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 1인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도서관이나 재정 및 행정 등에 경험이 있는 전

106) 김세훈 외 3인, 앞의 책, pp.45~46
10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115

문가를 우선하여 구성된다. 법인으로서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기구로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체의 규정을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료대출, 기타 이용에 관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의 임명과 규정의 제정 등 운영절차에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도서관법에서는 영국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국립도서관법에서 흔히 보이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이나 임무, 수집범위 및 납본업무, 국가서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이나 서지네트워크 등에 관한 조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례와 판례가 우선하는 영미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단위도서관으로서 영국도서관의 지휘체계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108)]

3. 도서관기준

(1) 개 요

영국은 2001년에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공공도서관서비스기준(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의 목적은 도서관당국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또한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성과평가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원래 영국에는 전국단위의 도서관법이 없고 잉글랜드 및 웨일즈지방을 위한 단일도서관법이 제정되었지만 1964년에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 신법은 1850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이 100여년간 입법취지에 맞게 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이 보급되면서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10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앞의 책, pp.115~116

임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입법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제1조에 DCMS 장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방행정당국의 책무를 제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서비스기준은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2008년판 개정기준의 서문에서 알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2001년판 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적어도 3년에 1번씩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되어 왔다. 마지막 개정판인 2008년 기준은 총 10개 항목, 즉 "도서관 건물로부터 일정거리에 거주하는 세대의 비율, 개관시간, 전자정보 접근비율, 전자형 워크스테이션 수, 예약자료 입수시간, 도서관 방문횟수, 16세 이상 및 16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구입자료수, 소장자료 교체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109]

공공도서관법 제7조는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행정국으로 하여금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봉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의회도서관법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CMS는 1999년부터 지방정부협회 및 도서관협회에 협력을 구하여 2000년 5월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안을 발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001년 1월에 DCMS의 공식기준인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Standards and Assessment"를 공포하였다.[110] 이하에서는 2001년 당시 제정되었던 상기 도서관기준에 대하여 소개한다.[111]

(2) 주요 내용

1) 기준 일반

영국 정부는 2001년 공공도서관 기준을 발간하면서 2001년 4월에 3년 시효를 두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의 목적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당국의 법적 의무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의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돕는 데 있었다. 또한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109) 윤희윤 외 6인, 앞의 책, pp.32~33
110) 이명옥, 앞의 책, p.48
111) 이하의 "영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 - 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 (PLSS)"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 발간한 도서관 정책자료를 인용하였다.

수행 감독 체제를 설정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정비 후, 도서관 개관시간 확대를 비롯하여 장서와 ICT 규정의 개선,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 이용자의 증가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다.[112)]

도서관 유형	세대 비율		
	1마일	2마일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도서관 2마일
런던 내부(London Inner)	100		
런던 외곽(London Outer)	99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95	100	
유니테리(Unitary)	88	100	72
카운티(County)		85	72

* 전체 도서관의 10%는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있다.

112) 영국 도서관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견해가 있다. 즉, 영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면적 조사결과 1관당 평균 면적은 550㎡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면적인 2,689㎡의 4.9분의 1에 불과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결과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의 평균 도서관 규모로 도서관을 작게 건립해왔었다면 1개관의 건립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섯 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도서관만을 건립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규모로 몇 개의 도서관만 건립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늘 도서관의 부족을 느끼게끔 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립정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야기 시켰다. 만약에 우리가 영국식의 소규모 도서관 건립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면 우리는 지금의 도서관 수보다 거의 다섯 배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500여개인데 이 도서관들의 규모가 영국처럼 작게 건립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약 2,500여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정도의 도서관 수면 프랑스의 공공도서관수(2,577개)와 거의 같고 일본의 공공도서관 수인 2,681개와 비슷해진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을 인구 1,000명당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은 26.32㎡이고, 영국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은 35㎡26)이다. 도서관수에 있어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7.6배이다. 즉,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7.6배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면적에 있어서는 두 나라 사이의 차이는 1.3배밖에 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국의 국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서관 면적을 아주 적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작 도서관 이용에 절대적이 영향을 끼치는 도서관 수 즉, 접근성면에서는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것이다. (김영석, 앞의 논문, pp.40~42)

2) 이동도서관이나 기타 서비스 아울렛(outlets) 등의 이용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은 자동차나 기타 상설 서비스 창구(outlet)를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허용가중치 0.25에 지수 1-4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이나 기타 서비스 아웃렛”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보고한다. 인구 밀집 지역에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를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도 똑같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목표이다.

3) PLSS 1 - 수치 산출 근거에 대한 정의

관종 상관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1/4마일 내에 이동도서관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과 1마일 내에 “기타 서비스 아웃렛”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적 라이브러리(static library) 근처에 사는 세대 비율, 이동도서관과 기타 서비스 아웃렛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다만 이동도서관은 차량이 정류소에 매 3주마다 최소 10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이 된다.

4) “기타 도서관 아웃렛”에 대한 정의

일반인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서, 자료대출을 위한 시설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열람용 터미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버타운 같은 폐쇄 공동체를 위한 특수도서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도서관통계조사(CIPFA Actuals Survey)에 응한 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서비스아웃렛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최소한 1주일에 10시간이상 이용 가능한 정적 라이브러리도 포함된다. 거리는 가까운 서비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역도서관 소재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다.

5) PLSS 2 - 총 개관시간

모든 도서관 이용자의 인구 1,000명당 128시간 개관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인구수는 도서관 소재 주민이 대상이다. 런던 당국자는 매일

이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과 방문자까지 포함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주민으로 한정하였다. 매년 개별 도서관들의 개관시간 총계를 총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PLSS 1에서 정의한 모든 서비스 포인트(정적 라이브러리, 이동도서관, 기타 서비스 아웃렛)들이 포함되었다. 이동도서관의 경우 이동시간은 제외하였고 정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 포함시켰으며, 기타 서비스 아웃렛의 경우도 서비스 공간이 개방된 시간만 포함시켰다.

6) PLSS 3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정보원 이용이 가능한 정적 라이브러리 (static libraries(CIPFA에 의한 정의))의 비율 : 100%

이용자에게 1주일에 10시간 이상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정적 서비스 포인트의 비율을 말한다.

7) PLSS 4

인구 10,000명이 인터넷 접속과 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에 접근가능한 총 워크스테이션의 개수 : 6대

‘전자워크스테이션(Electronic workstation)‘이란 인터넷과 온라인 열람목록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터미널을 말한다.

8) PLSS 5

예약도서 획득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 입수까지 7일이내 : 50 %

○ 입수까지 15일이내 : 70 %

○ 입수까지 30일 이내 : 85 %

대출자가 예약한 날부터 요청한 책이 도착하였음을 통보받은 때까지의 기간임

9) PLSS 6

인구 1,000명 당 도서관 방문 횟수

○ 런던 시내 거주자(Inner London Boroughs) : 7,650회

○ 런던 외곽 거주자(Outer London Boroughs) : 8,600회

○ 메트로폴리탄 거주자(Metropolitan Districts) : 6,000회
○ 유니태리 거주자(Unitary Authorities) : 6,300회
○ 카운티거주자(County Councils) : 6,600회

10) PLSS 7

도서관 서비스를 받은 16세 이상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평가
▷ 서비스의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안 좋음
○ 아주 안 좋음
응답자의 94%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 답함.
* Public Library User Survey (PLUS) 결과임

11) PLSS 8

도서관 서비스를 받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평가
▷ 서비스의 수준
○ 좋음
○ 보통
○ 안 좋음
응답자의 77%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좋음'이라 답함.
* PLUS Children's questionnaire 결과임
두 기준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75%를 상회하고 있음을 나타냄.

12) PLSS 9

인구 1,000명 당 자료 구매수 : 216종 추가
자료구매에는 책과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자료, 전자자료 등이 포함되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는 제외된다.

13) PLSS 10

대출 가능한 자료들의 교체 기간 : 6.7년

특수자료와 참고자료, 예약도서를 제외한 개가용 대출가능한 도서과 기타 자료들이“대출자료”에 포함된다. 대출가능 자료들이 교체되어 다시 채워지는데 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6.7년이다.

※ 정리 1

목 표	PLS	내용 및 도달기준
편리하고 적절한 도서관의 위치	1. 도서관(모든 도서관, 편의시간 동안 개관한 도서관)의 일정거리 내에 있는 가구의 비율	편의시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이외의 시간중 주당 5시간
	2. 도서관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	중앙관과 분관이 비상휴관한 비율과 이동도서관운영이 차질을 빚거나 취소된 비율
이용자에게 적절한 개관시간	3. 모든 도서관의 인구 1000명당 총 개관시간	인구 1000명당 연간 128시간
	4. 주당 최소 45시간을 개관하는 대규모 도서관의 비율	대규모도서관: 인구4만명 이상 통학범위에 위치, 연간이용자 20만명, 이동도서관은 제외
전자적 접근방법을 능하게 함	5. 주당 10시간이상 개관하는 도서관이 온라인목록을 제공하는 비율	온라인목록: 전체기관에 대한 목록을 의미, 계획 종료후에는 100% 달성 목표
	6. 인구 1000명당 사용가능한 전자워크스테이션수	전자워크스테이션: 온라인목록이나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컴퓨터단말기
만족할 만한 대출 및 예약서비스	7. 정상적인 도서대출기간	최소 3주
	8.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최대 책수	1회 8책
	9.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의 비율	7일 이내 - 50%, 15일 이내 - 70%, 30일 이내 - 80%
도서관 서비스의	10. 인구 1000명당 도서관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수한 도서관홈페이지의 방문횟수만 계산

목 표	PLS	내용 및 도달기준
이용촉진	11. 인구 1000명당 도서관 방문자 수	런던특별구내(밖):7,650(8,600) 대도시권: 6,000명 Unitary: 6,300명, 카운티: 6,600명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제공	12. 특정한 책을 찾는데 성공하는 이용자의 비율	성인과 어린이(3년 계획종료후) : 65%
	13. 정보검색과 참고봉사의 성공률	성인과 어린이(3년 계획종료후) : 65%
	14. 직원의 지식에 대한 평가	성인과 어린이(3년 계획종료후) : 95%
	15. 직원의 도움에 대한 평가	성인과 어린이(3년 계획종료후) : 95%
유용한 자료의 제공	16. 질적인 지표	성인소설, 성인비소설, 아동도서, 참고자료, 대형본과 tape형태의 책, 영어이외 언어로 된 자료에 대한 질적인 지표는 국가적 지역적 범주에서 규정될 예정임
	17. 인구 1000명당 연간 증가 책수	상위 25%도서관 : 1000명당 216책
	18. 대출서고를 보충하는데 걸리는 시간	초기목표 : 8.5년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한 서비스제	19. 1000명당 직원수	정보경영자격과 ICT자격을 가진 직원을 적절하게 제공, LA등과 협력하여 연구후 각 행정청에 제공

4. 사서자격기준

영국의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정보전문직협회인 CILIP(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가 관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도서관정보학 관련 전문직 영역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CILIP가 인증(accreditation)한 정규 대학 혹은 대학원(postgraduate) 코스를 거쳐야 한다. CILIP가 인증한 영국,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의 대학 및 대학원 도서관정보학 코스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CILIP에

차터(Charter)로 등록할 수 있다. CILIP는 2002년 The Library Association(1877년 창립, Royal Charter 1898년)과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1958년 창립)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영국 내에서 가장 큰 전문직 단체로서, 도서관정보전문직의 교육 및 훈련코스의 발전과 관리 및 지속적인 전문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CILIP는 Certification, Chartered Membership 및 Fellows라는 세 가지의 전문자격증을 수여하고, Chartered Member와 Fellow에 대하여 재인증(Revalidation) 체계를 제공한다. CILIP는 "Register of Chartered Members and Fellows"라는 등록부를 유지하며, 여기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CILIP 인증 혹은 승인 자격이 최소요건이 된다. CILIP의 "자격체계(Framework of Qualifications)"는 다양한 경로로 차터멤버쉽과 펠로우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 도서관정보 전문직 체계는 최초 도서관정보 직무로 진입할 때부터 이론적 지식 및 실무적 경험을 누적해 가면서 지속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강조하고 있다.[113)]

Certification은 준전문직 (para-professionals)이 도서관정보 업무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는 것이다. CILIP의 준회원(Affiliated Member) 혹은 부회원(Associate Member)은 Certification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영역 1(Categogory 1)과 영역 2(Categogory 2)로 나눌 수 있는데, 2009년 1월부터는 의 영역2인 지원자 영역 하나만 인정한다고 하였다.[114)]

※ Certification의 지원 요건 및 경로

지원요건	내 용
지원 자격	(1) 영역 1: 도서관정보 업무에서 5년 이상 전임(FTE)으로 일한 자
	(2) 영역 2: 도서관정보 업무에서 2년 이상 전임(FTE)으로 일하고 업무기반 훈련이나 기타 직원계발에 참여한 자
평가 기준	(1) 개인적 성취와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
	(2) 지속적 전문적 발전의 중요성의 이해
	(3) 보다 큰 커뮤니티에서 도서관정보 서비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정

113)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38~39
114)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40

지원요건	내 용
	영역 1: 실무를 통해 발전된 개인적 기술 및 전문적 기술의 인정
	영역 2: 훈련 및 계발활동을 평가하고 이론과 실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성장함을 보여주는 능력

차터쉽, 즉 Chartered Membership(이하 "CM"으로 기술한다)은 영국의 CILIP가 수여하는 전문자격의 두 번째 등급이며,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의 "황금표준(gold standard)"으로 여겨진다. 사서 및 정보관리자가 CILIP 전문가 수준회원으로서 차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CILIP 인증 도서관정보학 학위 혹은 졸업 후 자격(postgraduate qualification), ② CILIP 인증(Certification), ③ CILIP가 인정하는 해외의 도서관정보 자격, ④ 비인증 학위수준 자격 및 상당한 전문적 경험과 같은 자격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CM 지원자는 기본적 평가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CM은 3년마다 시행되는 자발적인 재인증 체계(Revalidation Scheme)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전문적 발전의 공식적 기록을 갖게 되고, 두 차례의 성공적인 재인증을 받은 후에 펠로우쉽에 지원할 수가 있다.[115)]

※ Chartered Membership의 지원 요건 및 경로

지원요건	
평가 기준	* 개인적 성취를 핵심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 성취를 반영하는 능력
	* 지속적 전문성 발전에 대한 적극적 헌신
	* 경험 및 계발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 전문적 발전과 진보를 분석하는 능력
	* 전문지식 및 보다 넓은 전문적 맥락의 이해 범위
포트 폴리오 구성 요소	* 목차
	* 이력서(CV) (업무의 명칭과 내용 기술)
	* 완성된 "개인전문적발전계획(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 PPDP)"

115)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40~41

지원요건		
		* 개인평가서 (1,000단어 이내) 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료를 선정한 이유 (평가기준과 연계) ② 그동안 참여한 계발활동의 결과 및 자신의 전문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 ③ 포트폴리오 내 다른 항목들에 대한 상호참조
		* 협회와 정보서비스/제품의 목적을 이해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목적들이 달성되는지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도록 선택된 자료
		* 해당되면, 조직구조도(Organizational Structure Chart)
		* 직무기술
		* 멘토 체계(Mentor Scheme)에 참여한 증거
지원 경로	경로 1	* CILIP (이전의 The Library Association 및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인증 자격(qualifications) 소지 및 1년 전임(FTE) 경력을 포함하는 PPDP 소지자
	경로 2	① CILIP 자격증(Certification) (ACLIP) 소지 및 적절한 훈련계획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전문수준 경력자
		② (UK 학위와 동등한) 해외 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
		③ CILIP 인증자격이나 해외 LIS 학위를 갖지 않지만, 다른 주제 및 전문수준 경력 학위나 동등한 것을 가진 자(Extraordinary Chartership Candidates로 알려짐)
		④ 스코틀랜드 자격체계(Scottish Qualifications Framework) 10등급 혹은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HE4 등급으로 평가되는, 비인증 도서관정보 자격증을 소지한 자

펠로우쉽은 최상위의 CILIP 전문자격으로 “개인적 헌신과 성취의 최고수준”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펠로우쉽은 이름 뒤에 “Chartered Fellow of CILIP”을 의미하는 FCLP를 붙일 수 있게 허용한다 (CILIP Byelaws, Section 3, Professional Qualifications, No.15). 펠로우쉽은 보통 CILIP의 회원으로서 적어도 6년 이상 등록된 사람들에게 수여되며, 예외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새로운 “자격체계”에 따라 두 차례의 재인증을 연속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CM에게 펠로우쉽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116)]

116)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42

※ Fellowship의 지원 요건 및 경로

지원요건	내 용
지원 자격	(1) CILIP의 Chartered Member 등록부에 적어도 6년 이상 있었던 CM, 혹은
	(2) 성공적으로 재인증을 연속 두 차례 받은 CM
평가 기준	* 전문적 실무에서 상당한 성취의 증거
	* 전문직의 전부 혹은 부분에 대한 중대한 기여의 증거26)
	* 지속적 전문적 계발에 대한 적극적 헌신의 증거
평가 기준 의 세부 내용	* Chartered Membership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범주의 소양을 계속 발전시켜 옴
	* 평가 및 분석기술을 확대하였고, 지원서에 반영된 전문적 활동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적용시켜 옴
	* 전문적 실무, 연구 혹은 간행물을 통하여 전문적 지식의 성장에 기여함
	* 그 결과에 반영된 자신이 기여한 바를 분석하고, 그 중요성을 평가함
	* 갖고 있는 기술을 발전 및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습득 및 적용함
	* 문제나 전문적 기술의 적용에 혁신적 혹은 창의적 접근의 성장하는 증거를 갖고, 전문적 및 지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함

제 4 절 기 타

1. 독 일

(1) 공공도서관정책

독일연방공화국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서,[117] 지방자치문화의 전통

117) 연방과 주(州) 사이의 입법관할권의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연방기본법 제70조에서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라고 연방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은 연방국가를 국가형태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한의 배분이 문제된다. 연방에 입법권한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연방에 입법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방은 입법권을 지닌다(연방기본법 제70조 제1항). 또한 “연방법은 지방법에 우선한다”는 연방기본법상의 규정(연방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연방법 및 연방의회는 주(州)법 및 주(州)의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 강한 행정체계상 도서관정책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은 주로 주(州)정부에서 운영되고, 연방수준에서 제정・실시되는 도서관 관련법령은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이 유일하다.[118] 연방정부 내에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특별한 전담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독일의 도서관들은 역사 문화적 특성상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공립도서관들은 특정 관종을 고집하기 어려울 만큼 제도상의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지역소재 대학도서관이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도서관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공립학교도서관 역시 지역주민의 이용에 개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편익에 대한 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행정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셈이다.[119]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주정부의 장려금으로 운영되지만, 로마가톨릭교회와 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 200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도서관이 5,788개관(54.7%)인 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지역공공도서관이 무려 4,687개(44.3%)나 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도 109개관(1.0%)이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0]

통일 이후 독일도서관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한 [도서관 '93]에서는, 독일 내 도서관들을 모두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지닌다. 입법영역은 크게 '전속적 입법사항'과 '경합적 입법사항'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연방기본법 제71조).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연방이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방이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방기본법 제72조). 연방기본법 제73조 및 제105조 등에서는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연방기본법 제74조에서는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18)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중앙집권의 지방분권화를 중심으로 하며 어느 국가보다 분권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대다수의 공공사무는 주정부에 이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육 및 문화행정을 주정부에 위임하여 문화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교육 및 문화행정에는 문화주권과 독립성의 원칙이, 재정지원에는 보완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명옥, 앞의 책, p.50)

119)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38

120)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38

협력활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도서관들은 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 및 분관규모의 공공도서관 활동으로 묶이는 제1수준, 문헌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립중앙도서관 규모의 제2수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대형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제3수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국립도서관과 전문연구도서관들이 포함되는 제4수준으로 나뉘어 전국적인 수준별 도서관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121]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문화매체국 제4과 43계로 되어있지만 어떤 정치적 또는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고 각 주가 교육 및 문화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에 관한 책임도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발전계획도 주단위의 중앙집중적 색채가 강하며 1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은 독일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지자체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다.[122]

독일의 모든 도서관은 기능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학술·연구도서관으로 구분되며 공공도서관은 그 성격에 따라 참고도서관과 일반도서관으로 나눠진다. 독일 공공도서관 운영체계의 특징은 첫째, 철저한 지방분권형체제로 주정부가 주립도서관을, 지자체가 시·읍·면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 외에 각종 종교단체, 학회, 협회, 기업이나 재단 등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ies)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 주에 설립된 주립 및 왕립도서관으로 39개가 있으며 대다수는 주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으로 지칭되며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왕립·법정부속·도시의 도서관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다. 넷째, 광역시 공공도서관시스템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그 아래 아동·청소년도서관, 예술도서관, 음악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동도서관, 분관, 병원도서관 등이 연결되어 있다.[123]

---

121)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p.38~39.
122) 이명옥, 앞의 책, p.50
123) 이명옥, 앞의 책, p.51

(2) 운영시스템

1) 국가도서관시스템

독일의 국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국립도서관(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DNB)은 연방수상부의 특임장관인 연방문화매체담당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 산하에 속해 있다. DNB는 전문 22개조로 구성된 독일국가도서관법 (Entwurt eines Gesetzes üer 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DNB의 법률상 지위(제1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보존도서관과 전국적인 서지센터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임무 및 권한(제2조)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1913년 이후에 독일에서 공표된 저작물과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 저작물 및 독일어로 공표된 저작물의 기타 언어로의 번역과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진 저작물에 대해 원상태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서지를 작성하고, 보존과 동시에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독일 망명자기록보관소, The Anne-Frank-Shoah-Bibliothek 및 독일도서박물관의 운영과 국내외 전문시설과의 협력 및 전국적 전문기구 및 국제적 전문기구에 참가하는 것이 임무 및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124)]

DNB는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서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DBF), 문학분야를 주제로 하는 라이프찌히의 die Deutsche Bücherei Leipzig (DBL), 음악분야 주제도서관인 베를린의 das Deutsche Musikarchiv Berlin (DMB) 세 개관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DNB가 IFLA에 제출한 2010년도 Country Report에 따르면 유럽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들을 연계하여 디지털 장서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Europeana 프로젝트, 유럽 국가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약 32개 국어로 된 1,00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한 “Reading Europe”, 8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독일디지털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 DDB) 프로젝트 등이 있다. 독일 국가도서관에서 특이한 점은 국립도서관을 후원하는 도서관의 친구들이

124)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88~89

라고 할 수 있는 Gesellschaft für das Buch의 존재다. 이 단체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립독일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125)]

2) 공공도서관시스템

독일은 지방분권에 따라 문화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서관의 설치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주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된다. 약 11,500여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독일 도서관시스템은 대중의 정보와 연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나뉜다. 제 1수준은 중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교외나 시골마을의 작은도서관이나 분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제 2수준은 도심의 중앙도서관들에 의한 서비스, 제 3수준은 대도시의 도서관이나, 해당지역의 전문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이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 제4수준은 국가적인 장서와 서비스를 갖춘 국가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의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해당된다.[126)]

독일의 공공도서관운영체계는 연방정부의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도서관정책의 부재, 분산형시스템, 주정부간 조정 및 협력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하여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정기구와 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도서관장회의”가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독일연방도서관협회(The Federal Union of German Library Associations : 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ande)는 연방차원의 도서관협회로 사서직 및 관종별 협의회나 단체를 포괄하는 조직체로서 독일 내의 사서직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해외에 독일의 사서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다른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127)]

125)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89
126)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89~90
127) 이명옥, 앞의 책, p.51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주정부도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문화적 성숙도가 높고 선진국형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이다. 독일에서 국가차원 즉, 연방정부가 제정한 유일한 도서관 관계법률은 1990년 9월에 개정된 현행 독일국가도서관법(BGB1.IIS.885호)이며 총 3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방기관으로서의 독일 도서관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설립, 업무, 규정, 관리조직, 관장, 감독기관, 직원의 신분과 임명, 최고집행기관, 예산제도, 직원의 법적 지위, 관장 및 이사의 보수 등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2장은 '법적 납본'에 관한 내용으로 납본부수, 납본주체, 무상납본 및 피납본처, 피납본기관의 의무, 납본보상, 신간목록제출, 납본관련 법령제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3장은 종장으로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28)]

(3) 주요 법령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은 국가적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임무를 독일국립도서관의 기본임무로 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1947년 개관)"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Deutschen Bűcherei, 1912년 개관)", 베를린 소재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n Musikarchiv, 1970년 개관)"을 포함하는 복수의 국립도서관체제를 구축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은 원래 2차대전 이전 독일제국의 국립도서관이었던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이 공산권으로 속하면서, 구 서독지역 중앙도서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시 및 하센(Hassen)주의 공법에 따라 독일 출판 및 서적거래업자들의 출자금으로 설치한 재단법인 조직이었으나, 1969년 당시 독일 출판물에 대한 납본업무 수행과 국가서지작성의 필요를 인정한 연방의회의 「독일도서관법」 제정으로 비로소 독일연방공화국 중앙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관'을 통

128) 이명옥, 앞의 책, pp.51~52

합하여 '독일도서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 29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국립도서관법」에 따라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129)]

2006년 개정된 새로운 「독일국립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기매체 등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 의무 대상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의 공표저작물(medienwerke in unkőrperlicher form)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상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국립도서관이 로봇에 의한 수집(harvesting)이 가능하도록 독일국립도서관이 지정하는 상태로 인터넷에 개방하기만 하면 되며, 다만 납입대상 출판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즉, 인터넷 저작물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납본에 의한 출판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답게 「독일국립도서관법」은 납본의무자가 공표저작물을 적시에 납본하지 않는 경우 행정규칙위반으로 1만유로(약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의 내용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국립도서관의 정책결정에서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13인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구성원에 출판 및 서적판매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 파견자 2명, 연방정부 문화·매체부 파견 3명, 독일출판 및 판매업자조합 파견 3명, 그리고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합,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라이프찌히시 당국 등의 파견자 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출판 및 판매업자들의 노력으로 출발을 보게 된 국가도서관 설립이력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도서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서관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130)]

129)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39
130)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40

(4) 사서자격제도

독일의 사서자격제도는 실무적 훈련과 이론적 학습을 통합한 독일의 이원적 전문가 훈련제도에 기반하여 3등급의 사서를 양성한다. 각 등급별 사서는 해당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과 전문적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등급별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131)]

1) 1등급(Grade 1): FAMI(Fachangestellter Medien und Information = Media and Informa tion Assistant. 매체정보보조원)

1등급의 '매체정보보조원'에 해당하는 매체 및 정보서비스의 전문직원은 3년의 훈련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10학년을 수료해야 한다. 독일의 전문직 교육을 위한 이원적 훈련체계에 따라 3년 동안 10주 학습 후 10주 도서관 실습을 계속한다. 새로운 훈련체계는 데이터베이스와 뉴미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 등급의 직원들은 종합목록을 사용한 단순한 편목업무, 대출창구, 정기간행물관리, 서가관리, 참고업무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인증사서와 정보전문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 2등급(Grade 2): Diplom-Bibliothekar(Certified Librarian. 인증사서)

2등급 '인증사서'는 사서 인증(Librarian Certification) 혹은 도서관 학위(Library Diploma)를 가진 사람으로서 12학년 혹은 13학년에서 완료되는 중등학교 학위(Secondary School Diploma)를 필요로 한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4년이 소요되며, 기술대학(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제공된다. 인증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의 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한 광범한 실무훈련이 의무적이며, 후보자는 도서관 관련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학위 수료자는 고급편목, 어려운 수서, 참고사서, 구입자료 선정 등을 담당하고, 이것은 적어도 그들이 종종 관리직을 갖게 되는,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최근 이 훈련프로그램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코스와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다.

131)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45~46

3) 3등급(Grade 3): Fa chreferent(Subject Specialist. 주제전문가)

3등급의 '주제전문가'는 주로 과학 혹은 학술사서(scientific or academic librarian)로서 대학 학위 이후 2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주제전문가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문학 혹은 독일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과학 및 컴퓨터사이언스의 석사학위를 가진 지원자는 극히 소수이다. 왜냐면 이 전공은 도서관 밖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등급의 학술사서는 주로 장서개발을 맡고, 대학도서관이나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같은 관리직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매년 대략 40명 정도의 과학 혹은 학술사서가 훈련되며, 이 훈련과정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훈련기간 중 1년간 도서관 인턴쉽 후 1년간 전문도서관학교에서 학습하였으나, 최근 그 순서를 교체하는 개념도 도입되었으며, 정보학 코스가 추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은 3등급의 전문적 훈련에 추가로, 학술사서로서 자격을 갖기 위한 원격학습 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Humboldt University에서 도서관학 학위(석사 및 박사학위)도 수여되고 있다. 후자는 기본적으로 3등급의 훈련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2. 호 주

(1) 개 요

호주국립도서관은 1901년 설립된 호주연방의회도서관에서 출발하여, 1912년 저작권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시행으로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은 물론 아시아 주변 국가의 자료를 중점 수집하면서 규모를 키워 오늘날 9백만 종의 장서를 갖추고, 직원 479명에 연간 방문이용자 532,000여명을 서비스하는 국제적인 명성의 국립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이 운영하는 호주도서관게이트웨이(Australian Libraries Gateway)의 도서관총람(Libraries Directories, http://www.nla.gov.au/libraries/resource/directories.html)에 따르면, 호주연방에는 모두 6,300여개의 도서관에서 12,300여명의 사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립도서관법에서 부여하는 호주 국립도서관의 기본적 사명의 하나는 이들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들을 연계하는 협력사업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132)]

6개의 주(州)와 2개의 준주(準州)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호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주정부에서 각기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지역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33] '호주도서관게이트웨이'에서 연계하고 있는 웹 링크를 따라 공공도서관을 추적 확인한 결과, 호주 수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9개,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에서는 369개, 북부지역(Northern Territory)에서는 32개,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370개, 남부호주(South Australia)에서는 146개, 태즈마니아(Tasmania)에서는 52개, 빅토리아(Victoria)에서는 270개,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는 246개로 전국적으로 모두 1,500여개의 공공도서관 링크가 확인되었다. 시드니, 캔버라 등의 도시인구 비중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스지역과 빅토리아, 퀸즐랜드 등의 동부 해안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34]

호주의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서비스는 1932년 미국 카네기 기금의 호주도서관 실태조사를 기회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시설과 장서에 대한 반성이 계기가 되어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에서 활발하였던 무료도서관운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1939년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도서관법'은 아직까지도 호주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기본원리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종반기에 퀸즐랜드 의회에서 제정한 '도서관법(1943)'을 계기로 주마다 법적 기초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의 보

132)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230

133) 주의 법률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와 유사한 입법 체계를 취하고 있고, 특히 연방제 국가의 법률 관계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constitutional law), 법률(Act), 행정입법(Regulation), 규칙(Standard), 명령(Executive Order), 고시(Order 그리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관해서는 국가 형태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규로서 구체적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법규 형태의 최상위는 Act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Act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비교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의 시행령, 고시 등에 명시한 사항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호주 Regulation의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 Reugulation은 우리나라의 시행령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호주의 Regulation은 다른 미국, 영국과 유사하게 Act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호주 등 기타 영미권 국가의 Regulation은 법의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시행을 위한 시스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Regulation의 입법 주체는 정부 소관부처이다.

134)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231

급을 촉진하였고. 이후 1960년대 국립도서관법(1960)의 제정, 저작권법(1968)의 법정납본 정비 등으로 체계화된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도서관서비스 체제로 발전하였다.[135)]

(2) 도서관정책

1) 국가도서관시스템

연방국가인 호주의 국가도서관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이며, 지역행정 및 예술스포츠부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 산하에 속해있다.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은 1960년 발효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에 따라 기존의 연방의회도서관에서 분리되어 1968년 캔버라에서 개관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의 궁극적인 기능은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교육, 혁신, 학문, 창의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136)]

호주국립도서관은 법에 따라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를 두고 있는데 이 도서관위원회는 호주국립도서관장과 상・하원 양원에서 선출된 각 1명씩의 의원을 포함하여 총12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도서관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IFLA CDNL에 제출된 호주국립도서관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2011)에 따르면 최근 호주국립도서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00여개에 이르는 호주의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에 대해 일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TROVE Project다. 이 TROVE Project는 이미 250만 건이 넘는 책, 이미지, 신문, 지도, 음악 등의 온라인 자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별도의 사이트(http://trove.nla.gov.au/)를 운영하고 있다.[137)]

그 외 특기할 만한 사업으로는 2009년 호주의 가족,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 원주민 사업부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서 다년간 사업으로 실시했던 구술을 통한 역사복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Forgotten Australians” 관련 자료의 온라인 제공과, 1980

135)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231
136)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2
137)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52~53

년 이래 주요연방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Federal election related material” 프로젝트가 있다. 호주의 전역에 있는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준주립도서관(territory library)은 호주 국가도서관 및 주립도서관 협회(National & State Libraries Australia, NSLA)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매년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별로 운영주체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138)]

2) 공공도서관 시스템

①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우선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결합해있는데, 지역자치서비스부(Department of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에서 도서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는 9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정부도서관(government library)과 의회도서관(assembly library)에서 담당하고 있다.[139)]

② New South Wales (NSW)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단일 지방정부에 의해 운용되는 독립적인 형태의 도서관운영과 최대 8개까지의 지역협의회가 공동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협약을 통해 지역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은 도서관법(Library Act 1939) 및 도서관규칙(Library Regulation 2010)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의회가 관리하는 도서관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정부는 매년 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지역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지역서비스 부서가 NSW의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통해 일련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립도서관의 의무는 대략 아래와 같다.[140)]

138)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3
139)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3
140)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3

- 연간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 공공도서관들의 도서관법 및 도서관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지도
- 공공도서관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수집, 배포
- 모든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 공공도서관협력망을 대신한 연구업무 관리
- 평가, 정보서비스, 어린이 및 노인 서비스, 다문화서비스, 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③ Northern Territory

준주에 속하는 Nothern Territory는 Northern Territory Library (NTL)를 통해서 준주 내 모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NTL은 다양한 규모의 32개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Northern Territory 공공도서관 협력망(public library network of the Northern Territory, PLNT)을 지원하며, 준주 내에 있는 일부 중등학교와 대학의 도서관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책과 자료를 교환해주거나 원주민인 애보리진 공동체 등 도서관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141)]

④ Queensland

퀸스랜드州에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위원회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은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지역 도서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 서비스 및 장서에 대한 지원, 퀸즈랜드 전역에 있는 전자데이터베이스와 지역내 공동대출서비스인 CLS (country lending service) 운영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교부세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 재정은 대부분 장서구입에 사용되며, 최대 5%까지 도서관자료의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인구 15,000명 이하의 지방정부는 공동대출시스템인 CLS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체제에서는 주립도서관이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서구입 및 장비에 이르는 전

141)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53~54

처리과정을 대신해 주게 된다. 정리된 책들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도서관에 배분되며,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연간 전체 장서의 25%정도의 책들을 교환해준다. 퀸스랜드주립도서관은 원주민지역처럼 지역사회의 공동체언어(community language)로 된 책이나, 특화된 자료들의 대출,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자문, 참고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제공, 주 전체를 아우르는 상호대차서비스, 공공도서관협력망 및 자료공유 촉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142)]

⑤ South Australia

지방정부협의회장과 주의 예술부장관 사이의 MOA에 따라 도서관이사회(Library Board)가 각 주정부 보조금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한다. 교외지역 및 소외지역의 평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이사회와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uthority)가 교육아동부의 부서로 참여하여 School Community Library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주 전역에서 호주작가의 책을 읽는 독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The Little Big Book Club”, 시 낭송회 “Poetry Slam”, 7개의 주립도서관 및 지역공공도서관이 연합하여 다문화자료의 전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My Language Consortium” 등이 있다.[143)]

⑥ Tasmania

타스마니아州에서는 주민 모두가 21세기에 필요한 정보 및 디지털 기술개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 전역에 걸친 도서관서비스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LINC Tasmania”이다. LINC Tasmania는 주 전역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유산, 특화자료, 참고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Virtual LINC는 온라인 정보자원 및 도서관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일주일 내내 24시간(24/7) 지원되는 디지털 자료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넓혀가고 있다. 각 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역시 TALIS

142)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4
143)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4

(Tasmanian Automated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로 묶여 주 전역에 전자화된 목록과 디지털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 TALIS에는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참여하고 있다.[144)]

⑦ Victoria

빅토리아주에는 모두 79개의 하위 자치단체에 총 4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30관)이고 나머지는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14관)이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지방당국에서 운영하며, 대부분이 멜버른에 위치해 있다. 그 외의 경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Local Government Act 1989에 따라 공동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장관급의 공공도서관 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 on Public Libraries)의 자문을 받는 지방행정장관(Minister for Local Government)에게 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 내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한 부서인 Local Government Victoria에서 핵심적인 공공도서관에의 자금지원, 공공도서관 통계수집 및 도서관협력망 구성 등을 담당한다.[145)]

⑧ West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이사회(Library Board of Western Australia)와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다. 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인력・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이사회는 주 전역의 233개 공공도서관에 보낼 정리된 자료의 수서와 배분을 책임지고 있다. 도서관이사회는 이 외에도 목록, 색인, 교육훈련, 자문, 지역보조금 집행,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전역에는 크리스마스섬과 코코스섬을 포함 140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총 23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각 도서관의

144)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p.54~55
145)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5

장서는 개별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서로 교환 대출되며 운용된다. 주립도서관은 마치 어음교환소처럼 각 도서관의 장서를 서로 교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주 전역 도서관의 장서를 서로 교환시킴으로써 장서를 새롭게 해서 사장되는 도서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146)]

(3) 호주도서관법의 개요

1960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법은 모두 5개부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법령의 제목과 용어의 정의 등이 제시되고, 제2부는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기능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자체의 고유인장을 가지며 법률적 행위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립도서관의 주요기능으로는 호주 내 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서비스의 임무가 부여되며, 특별히 의회와 연방정부, 영토 내 국민, 정부공공기관 등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호주내 도서관문제와 관련한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것도 국립도서관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의 권한으로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구입과 임대 혹은 대여의 권한과, 자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국립도서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국립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장의 보수와 수당, 대행, 사직, 퇴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립도서관의 실질적 책임경영기구인 위원회는 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과 관장, 연방총독이 지명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가 3년인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도서관장은 임기가 7년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여받고 있다. 제4부는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도서관 재정으로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재정장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잉여자금에 대한 투자의 허용과 도서관재정에 대한 세금 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부 기타사항에서는 도서관구내에서의 주류의 판매와 처분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건물 및 부지 내

146) 정은경 외 1인, 앞의 책, p.55

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147]

(4) 사서자격제도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로 사서(Librarian)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ALIA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학부(학사) 학위 소지자, 둘째, 어떤 주제에서의 첫 번째 학위 및 ALIA가 인증한 대학원(대학원 학위 혹은 석사) 코스, 셋째, ALIA 인증 도서관 기술직원(Library Technician) 자격(TAFE에서 취득함) 및 ALIA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학부(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완료한 기술사 코스에 대해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전문직인 사서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된다.[148]

사서 1등급(Librarian Grade 1): 전문실무자(Professiona l Practitioner)
① 전문적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 혹은 도서관정보 서비스와 시스템의 개발 지원 및 별개의 도서관정보관리 프로젝트 조정 또는 과, 팀 혹은 도서관서비스의 운영과 시스템 지원. ② 도서관정보서비스 개념, 원리 및 이론의 건전한 지식. 도서관시스템, 실무 및 절차의 건전한 이해 요구. ③ 확립된 기준, 실무 및 절차에 관련하여 일련의 운영 혹은 개념적 과제 및 문제를 다루는 데 판단력 행사. 시스템과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적응시키고 전례로부터 제한된 정도로 벗어날 수 있음. 경험을 가지고, 전례에 관련하여 실무와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비일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선임전문가나 관리자의 일반적 감독 하에 일한다. 팀의 구성원 혹은 작은 비계층적 팀의 리더로서 개인적 혹은 협력적으로 일한다. ⑤ 업무의 결과는 보통 직접적이거나 단기부터 중기적이지만, 이용자, 컬렉션 및 동료들에게 장기적 영향 가능. 업무는 절차나 정책의 구성을 돕고, 전문적 지식의 총체에 기여 가능.
사서 2등급: 경력전문실무자 및/ 혹은 개발전문가(Experienced Professional Pra ctitioner and/ or Developing Specialist)

147) 주요국 도서관법령집(2008), pp.232~233
148) 곽동철 외 2인, 앞의 책, pp.46~50

① 복잡한 혹은 전문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 별개의 도서관정보관리 프로젝트, 과, 팀 혹은 도서관서비스의 운영과 시스템을 조정이나 관장. ② 도서관정보 관리 개념, 원리 및 이론의 잘 발전된 지식, 그리고 도서관정보 시스템, 컬렉션, 서비스 혹은 주제지식의 응용에서 잘 발전된 기술 요구. ③ 확립된 기준, 실무 및 절차에 관련된, 광범한 복잡한 과제 및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판단력과 선도력 행사. 시스템,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적응시키고 전례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 있음. ④ 선임전문가나 관리자의 일반적 감독 하에 일함. 팀 혹은 별개의 프로젝트 리더나 감독자로서 개인적 혹은 협력적으로 일한다. ⑤ 결정을 포함하는 업무의 결과는 직접적이지만, 이용자, 컬렉션 및 동료에 대하여 장기적 영향 가능. 선임관리에 대한 정책과 조언 형성을 도움. 종종 전문적 지식의 총체에 기여 가능한 업무 수행.
사서 3등급: 선임전문실무자, 관리자 및/ 혹은 전문가(Senior Professional Pactitioner, Manager and/ or Specia list)
① 복잡한 혹은 전문 도서관정보서비스 관리 및/혹은 제공. 중요한 도서관정보관리 프로젝트, 혹은 과, 팀 혹은 도서관서비스의 운영과 시스템 관리. ② 도서관정보 관리 개념, 원리 및 이론의 상당한 지식 요구. 특정한 시스템, 컬렉션, 서비스 혹은 주제지식에 고도의 실력과 전문성 가짐. 관리전문성을 갖거나, 조직에 중요한 학문영역에서 내부적으로 인정되는 권위로서 입지 요구. ③ 즉각적 업무영역을 넘어설 수도 있는 일련의 복잡하고 상세한 운영 혹은 개념적 문제 및 과제를 다루는 데 판단력 및 주도권 행사. 전례를 제한된 정도로 참조하고 실무,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을 발전 및/혹은 소개 가능. 전문적 기준, 실무 및 이론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해석능력을 보여준다. ④ 선임 전문가 혹은 관리자의 지도하에 업무 수행. 업무는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의 고수와 판단의 건전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핵심단계에서 평가될 수 있다. ⑤ 결정을 포함하는 업무의 결과는 보통 중기부터 장기적이며, 법적인 도서관정보 관리 맥락에서 이용자, 컬렉션 및 동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목표와 성과에 상당한 효과 및 영향 가능. 업무는 선임관리에 대한 정책과 조언 가능. 지식의 전문적, 주제 혹은 정책영역의 총체에 기여 가능.
사서 4등급: 책임전문실무자 및/ 혹은 선임관리자 및/ 혹은 선임전문가(Principal Professional Practitioner and/ or Senior Manager and/ or Senior Specia list)
① 중요한 조직의 서비스(들), 프로젝트(들) 혹은 프로그램(들)을 선도하고 관리하

며, 선임관리, 조직 전체, 혹은 외부 당사자에 대한 권위 있는 고도의 전문적 조언제공. 주요한 도서관정보 관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행하거나, 중요한 과, 팀 혹은 도서관 서비스의 운영과 시스템 감독. ② 전문직의 복수 측면을 넘어서 확장되는 도서관정보 관리 개념, 원칙 및 이론의 중요한 지식 요구 및 응용. 또한 중요한 관리 전문성 필요, 혹은 조직, 산업 혹은 전문직에 중요성을 갖는 학문영역에서 혹은 시스템, 컬렉션, 서비스 또는 주제지식에 대한 인정된 내부 혹은 외부적 권위로서 입지 필요. ③ 일련의 고도로 복잡하고 상세한 운영 혹은 개념적 문제 및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독자적이거나 해석적인 판단 및 주도권 행사. 새로운 시스템, 기준 혹은 접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전혀 혹은 거의 전례가 없는 정보 해석. 새롭거나 고유한 해결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도서관정보 서비스의 전문적 기준 및 여러 측면의 광범위한 이해능력을 보여준다. ④ 인정된 전문가로서 임시적 관리 혹은 전문적 평가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 업무는 합의된 조직의 목표에 대한 효과 및 진전이 주로 평가된다. 결정을 포함하는 업무의 결과는 ⑤ 중대한 장기적 효과를 가지고, 보통 조직의 성과 및/혹은 전문적 혹은 주제지식의 총체에 상당하게 기여. 업무는 조직수준에서 중요한 정책, 법적 혹은 서비스 제공 의미를 가진다고 기대되며, 또한 주(state) 혹은 국가수준에서 영향 가능.
사서 5등급: 책임전문관리자 및/ 혹은 책임전문가(Principal Professional Manager and/ or Principal Specia list)
① 조직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분관, 프로그램 혹은 도서관 서비스 인도 및 지도, 혹은 조직, 산업 혹은 전문직에 중요한 전문가 전문지식 영역에서 최고 등급의 권위 있는 조언 제공. ② 전문직의 복수 측면을 넘어서서 확장된 도서관정보관리 개념, 원칙 및 이론의 광범한 지식 요구. 또한 서비스 제공과 개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리 전문성 및 상세한 지식 필요, 혹은 조직, 산업 혹은 전문직에 중요성을 갖는 학문영역에서 혹은 시스템, 컬렉션, 서비스 또는 주제지식에 대한 인정된 내부 혹은 외부적 권위로서 입지 필요. ③ 전략적 조직적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를 예측, 개념화 및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혹은 관리적 판단과 선도력 행사. 프로그램 목표와 전략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접근방법의 독자적 창안 및 실행. ④ 업무는 조직 정책과 행정통제에 의하여 주로 지도된다. ⑤ 결정을 포함한 업무의 결과는 전략적이고, 조직성과 혹은 전문적 또는 주제지식

의 총체에 상당히 기여. 업무는 조직, 주 혹은 국가 수준에서 중대한 법적, 정책 혹은 서비스 제공 의미를 가진다.

제 5 절 정 리

주요 국가의 도서관 정책 및 법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국가의 도서관 정책 및 법제의 주요 내용 개관 >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호 주
기본 체계	"국가도서관시스템"과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				
국가도서관 시스템	행정부 산하	입법부 산하	행정부 산하	행정부 산하	행정부 산하
국가도서관 정책 추진	중앙정부(연방정부)에 의한 독립법률로 근거 마련				
공공도서관 정책 추진	주정부(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개별 근거 마련				
주요 추진 기구	- 국가 도서관정보과 학위원회 - 미국연방 도서관정보센터위원회 - 미국문헌 정보학위원회 - 미국 공공도서관협회	문부과학성	- 문화매체 체육부 - 박물관 도서관문서 관위원회 -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 협회	- 문화 매체국 - 연방 문화매체 담당관	- 지역행정 및 예술스포츠부 - 도서관 위원회
주요 법제 현황	- 의회 도서관법 - 도서관	- 국회 도서관법 - 도서관법	- 공공 도서관법 - 공공	- 독일 국립도서관 에 관한 법	- 국립 도서관법 - 각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호 주
	서비스법 - 박물관 ・도서관서비스법 - 공공 도서관봉사 및 건축법 - 각 주정부의 법률		도서관통합법 - 공공 도서관 및 박물관법 - 국가 도서관법 - 지방정부법 이나 자치단체별 도서관조례	- 도서관 정책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은 주로 주(州)정부에 서 운영	주정부의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기준	각 주단위로 발표되어 적용	문부과학성은 2001년 7월 18일자로 문부과학성 고시 (제132호)를 통하여 「공립도서관 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문화매체체육 부에 의한 공공도서관서 비스기준	주정부에서 공공도서관 기준 제정	각 주정부가 제정하나, 호주도서관협 회(ALIA)의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기준및 지침에 근거함
사서자격 기준	미국도서관협 회에서 인증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 규칙에 규정	도서관정보전 문직협회인 CILIP이 관장	실무수습과 이론교육과정 을 경유하여 등급별 사서자격 획득 (전문도서관 학교에서 이수)	호주도서관협 회(ALIA)가 기준 제정 및 인증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호 주
공공도서관 설립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	지자체에 하여 설립된 공립도서관과 사단・재단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도서관으로 분류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경우 개별 법령 있음)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	주정부에 의하여 설립
특수목적 도서관	- 대학(학교)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지 않고, 개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 - 교육, 국방,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포함되어 관련 목적의 도서관 등이 설립운영되어서, 이에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 또한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적용운영 -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병원, 대학, 병영 등에 관한 도서관 기준과 운영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과 같이 개별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				

제 4 장 도서관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

제 1 절 개 관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도서관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서관법령 개정 이슈를 ①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등의 개선, 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③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개선, ④ 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도 개선, 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제도의 개선, ⑥ 도서관 기준의 개선, ⑦ 사서제도의 개선, ⑧ 기타 개정 이슈 등 총 8가지로 분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149)]

번호	개정 이슈 및 세부 개정 사항	관련 조문
1	o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등의 개선 -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개선	법제2조제4호~7호
2	o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기준 개선	신설,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
3	o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도서관 지식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개선 -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신설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집 근거 마련	신설

149) 도서관 기준,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해 그동안 정부, 학계,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각 이슈별로 입장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큰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의 경우 개선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 연구도 즉각적으로 입법화 가능하여 시행이 용이한 부분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도서관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입법되기를 바란다.

번호	개정 이슈 및 세부 개정 사항	관련 조문
4	o 도서관 자료 납본 제도 개선 - 전자출판물 등 온라인자료의 납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의무화 - 공공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 및 방법 구체화	법제20조, 21조, 시행령 제13조
5	o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제도의 개선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 신설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운영 기준 신설	법 제22조~제26조, 시행령 제15조
6	o 도서관 기준의 개선 - 국내 현실에 맞는 도서관 기준 개선 - 도서관 관종별 도서관 기준 제시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7	o 사서제도의 개선 - 사서자격취득 방법의 개선(표준 교과목제도 도입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 - 사서배치 기준 개정 - 사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관리·감독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별표3 등
8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구성·운영 - 도서관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장 임기 신설 - 기타	법 제24조, 법 제13조 등

구체적인 개정사유 및 근거, 개정(안)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제 2 절 주요 이슈별 개선 방안

1.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등의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현행 공공도서관의 관종 구분은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

로 구분[150]되며, 그 외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별도의 도서관으로 분류되는 형태이다[151]. 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 공립 공공, 사립 공공, 작은,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 등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실제 관리·운영과 현행법상의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현재에 이른 취지는 2006년「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현행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될 당시,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부

150) 참고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151)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도서관 관종 체계를 "국가도서관시스템"과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도서관이 국회(입법부)의 소속을 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처의 산하에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독립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도서관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의 입법과 행정에 의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독립된 체계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영미권과 유럽권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구별되는 점은 일본의 경우, 법제도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볼 때에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과 민법 34조에 의거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한 사립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상기 단체 이외에 어느 누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동종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웨일즈의 경우 공공도서관박물관법, 스코틀랜드의 경우 공공도서관법, 북아일랜드의 경우 교육도서관령으로 지역별로 구별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학교)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지 않고, 개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교육, 국방,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포함되어 관련 목적의 도서관 등이 설립 운영되어, 이에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 또한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적용·운영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병원, 대학, 병영 등에 관한 도서관 기준과 운영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과 같이 개별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보취약계층에의 도서관서비스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정책 부서의 차이에 따른 적용상의 혼선, 도서관기준 및 사서배치기준의 미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부족,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반 공중에의 이용을 특성으로 하는 반면, 병영, 교도소, 병원,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특수한 장소에 한정되어 일반 계층의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공도서관의 법적 성격에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였다. 공공도서관 중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도 어린이 계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부모 등 다른 계층의 이용이 다른 도서관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외 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 등 특수한 장소에 한정되어 일반 계층의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강한 도서관의 경우는 특수도서관으로 별도로 구분・분류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분류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교육감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도서관법상의 공공도서관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2) 개정(안)

□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안)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 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 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삭제)**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삭제)**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삭제)**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마. (삭제)**

현 행	개 정(안)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 7. (생 략) 7의2.<신 설>	**나.**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 7. (현행과 같음) **7의2. "특수도서관"이란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나 보호자,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7의3.<신 설>	**7의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현재 도서관자료의 관리는 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고시로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전체장서의 1998년 100분의 3에서, 2003년 100분의 5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100분의 7로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장서 수장 능력의 한계,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의 사정(수장 능력, 자료 이용률, 도서관 이용자의 수)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장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현행 기준의 삭제 또는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안으로 범위 제한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전 위임하는 형태(조례에서 지역대표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장에게 일정 범위를 정하여 위임), 제2안으로는 현행에서 일정 기준을 완화(9%~10%, 14~15% 정도)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100분의 10~15 범위 내[152]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의 사정(수장능력, 자료이용률, 도서관 이용자의 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법령에서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의 사정(수장능력, 자료이용률, 도서관 이용자의 수)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담보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152) 현행 고시에는 100분의 7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15범위 내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도서관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양적 범위의 확대라는 현장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개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도서관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되 도서관 자료의 보존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의 균형·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서 삭제하고, 해당 고시도 추후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도서관자료의 제적 및 폐기범위 관련 참고 입법례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폐기·제적)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계획을 매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6조(장서점검·이관·폐기)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관리중인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

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8 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2) 개정(안)

□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 5 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생략> ②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2항의 도서관 자료**

현 행	개 정(안)
	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표준화, 상호운용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통합도서서비스 기반 구축),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확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자료 운영 및 회원 관리(대출·반납 관리 등)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에서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제안하였다.

(2) 개정(안)

□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 7 조의2<신 설>	**제 7 조의2(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및 지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관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통한 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13조의5<신 설>	**제13조의5(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도서관장은 이용자에게 법 제2조제3호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민감정보 및 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이용자의 성명,

현 행	개 정(안)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도서관 납본 제도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ICT 발전에 따라 인쇄도서의 형태가 전자출판물로 제작·발간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책 등 도서형태의 도서관 자료 수집, 보존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온라인 자료 중 도서 형태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153]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작·발간되는 공공자료의 경우 공공자료의 디지털파일 납본 의무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자료 서비스 확대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판사들이 납본 파일 유출을 이유로 납본을 거부하는 경우[154]가 있어 ① 출판사가 디지털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② 저작물의 전송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③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제한한 경우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155]를 대통령령에 한정하여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파일 납본 실적을 높여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인쇄도서 및 연속간행물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153) 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ISBN 부여건수는 1,430,884건, ISSN 부여건수는 16,552건이며, 이 중 전자출판물의 ISBN부여 건수는 66,030건, ISSN부여 건수는 800건이다(국립중앙도서관 제공).

154) 2012년 기준으로 58개사 97건의 납본 거부가 있었다(국립중앙도서관 제공).

155) 실제 도서관법에 의한 디지털파일 납본 시행('09.3.) 이후 주요 출판사 납본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이하 출판사)가 디지털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② 출판사와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자)와의 출판권 설정 등이 이전·변경·소멸되어 납본 거부(ex. 타 출판사가 동일 도서 발행)하는 경우, ③ 번역서의 경우 출판사가 저작물의 납본 권리가 없다는 주장(원저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④ 특정 도서 내 이미지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납본 불가(대체자료 서비스가 웹서비스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 ⑤ 반드시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납본 가능하다는 주장, ⑥ 저자는 납본에 동의하지만, 출판사가 상업적 이윤 때문에 납본거부를 하는 경우 등이다(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부여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내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효율적 관리 및 국제 유통을 위하여 국제표준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장서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 제20조의 납본 부수 및 형태, 디지털 파일의 납본 대상 기관,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2) 개정(안)

□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 또는 증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 설>	**②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현 행	개 정(안)
응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

현 행	개 정(안)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납본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납본: 2부** **2. 제2항에 따른 납본: 3부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된 자료 1부** **3. 제3항에 따른 납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 1부**
④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 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다.)**
⑥ <신 설>	**⑥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 그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파일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해**

현 행	개 정(안)
⑦ <신 설>	당 파일의 온라인 상의 위치를 통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수집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으로 납본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디지털 파일은 최종 발행되어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와 내용상 동일한 것일 것 2. 해당 디지털 파일은 보존 목적에 적합한 품질을 갖출 것 ⑦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디지털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의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된 경우 3.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저작물의 전송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제한한 경우

5.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제도의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도서관법상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주요 역할과 성격이 열람봉

사서비스 기능보다는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자료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도서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도서관협력활동을 주도하고, 지역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서관 정책을 집행하는 도서관지원 기능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다.[156]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당해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

현행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는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지역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지원 등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제시하기 보다는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가장 적절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인 지역공동 보존 서고 운영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56) 김세훈 외,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2007, p.12~14 참조.

(2) 개정(안)

□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의2.<신 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 및 법 제23조의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6. 도서관기준의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1988년에 개정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현 공공도서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공도서관 설립시 봉사대상 인구수별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건물 면적, 장서수가 도출・제시되어야 하고, 작은도서관의 경우 현행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서 실질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 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국제 기준 및 선진국과의 비교가 용이하게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즉, 현재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의 장서수가 1.43권인 점을 감안하여 IFLA 인구 1인당 1.5~2.5권,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인당 장서수가 2권 이상(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의 수준으로 국민 1인당 1.5권~2권 이상으로 법상의 기준을 상향하자는 것이다.[157)]

그러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현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역 중심 및 전문화・세분화된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실제 2012년 공공도서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별표 기준상의 연면적 및 장서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연면적 기준 준수 도서관 현황>

봉사대상인구(명)	연멱적 기준 준수 도서관수(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100%)	0(0%)	4(100%)
2만~5만미만	63(91%)	6(9%)	69(100%)
5만~10만미만	80(70%)	35(30%)	115(100%)
10만~30만미만	181(60%)	123(40%)	304(100%)

157) 구체적인 안은 곽동철·윤정옥·곽철완, 「도서관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2007.12),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편(2013) 등 참고 바람.

봉사대상인구(명)	연면적 기준 준수 도서관수(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30만~50만미만	75(34%)	148(66%)	223(100%)
50만이상	11(15%)	60(85%)	71(100%)
전체	414(53%)	372(47%)	786(100%)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서 기준 준수 도서관 현황>

봉사대상인구(명)	장서기준 준수 도서관수(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100%)	0(0%)	4(100%)
2만~5만미만	69(100%)	0(0%)	69(100%)
5만~10만미만	112(97%)	3(3%)	115(100%)
10만~30만미만	274(90%)	30(10%)	304(100%)
30만~50만미만	98(44%)	125(56%)	223(100%)
50만이상	10(14%)	61(86%)	71(100%)
전체	567(72%)	219(28%)	786(100%)

다만, 실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장서 기준은 현행처럼 법상에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시행령상의 도서관 기준은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장서 기준을 제시[158]하고, 국제기준 및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또는 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 활용)하여 정책부서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현재의 틀을 기초로 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158) 구체적인 수치는 2013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연구 용역 결과 등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제안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였다.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은 도서관 건립시 필요한 일반 계획, 시설 계획, 운영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도서관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적합한 것으로 매뉴얼에서 도출된 시설 기준 및 장서 기준, 인력 배치기준이 법 개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발간된「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p.58에 따르면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열람석 수가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제안되어 있다.

부분을 수정하고 도서관 운영상의 권장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수치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제공이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인 점을 감안하여 열람석 기준을 삭제하고, 연간 증서는 추후 운영상 필요한 기준으로 시행령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건물 면적 및 장서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의 경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인구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접근거리를 기준으로 도서관의 봉사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의 인구수를 봉사대상인구수로 하여 도서관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59)]

그 외 작은도서관의 경우 건물 면적 및 장서수를 건축법 최소 기준에 따라 100㎡ 이상으로 하고, 최소한의 도서관의 역할을 위해 장서수도 3,000권으로 상향 제시하였다.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에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도서관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 외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

봉사대상인구수	면적(㎡/1000명)	열람석수(석/1000명)		
		일반열람석 비율	어린이열람석 비율	디지털 열람석 비율
2만 이하	60	6.5		
		6	5	2
4만	55	5		
		10.5	8	2
6만	50	4.5		
		15	9	3
8만	45	4		
		17	10	4
10만	40	3.5		
		18	10	5
20만 이상	35	3		
		20	10	5

159) 2010년「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p.26에 제시된 거리에 따른 봉사대상인구 범위(직선거리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중앙관	분관	작은 도서관
반경	2km 이하	1km 이하	500m 이하

도서관,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민간 영역의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법 또는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장애인 도서관의 경우 특수도서관이기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현행 기준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을 제정[160]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봉사대상인구의 개념, 시설의 건물 면적의 해석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개정(안)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o 별표1 개정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건물면적 ㎡)	도서관 자료
		기본장서(권)
2만 미만	-	-
2만 이상 5만 미만	-	-

160) 도서관법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제2항 제2호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중 하나로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을 두고 있다.

5만 이상 10만 미만	-	-
10만 이상 30만 미만	-	-
30만 이상 50만 미만	-	-
50만 이상	-	-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최소 건물면적 (㎡)	**도서관 자료**
	(최소) 기본장서(권)
100 이상	**3,000권 이상**

라. 어린이 도서관

공립일 경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립일 경우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2.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3.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 자료	
최소 건물면적 (㎡)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66㎡ 이상 자료 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 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3,000권 이상	500점 이상

4.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중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5. 이 외의 도서관 : 해당 사항 없음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읍・면지**

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시설의 건물 면적은 장서 공간, 이용자 공간, 관리자 공간, 서비스 공간을 합한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봉사대상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 ·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7. 사서제도의 개선

(1) 개정 방향 및 개정 근거

1) 사서배치기준의 적정성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의 사서배치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건물면적인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1988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건물면적과 장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서관은 전체 786개 공공도서관 중 2개로, 99.7%가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기준을 제외하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전체 공공도서관 786개 중 45개(6%)가 기준 준수, 82개(10%)가 기준 초과, 그 외 659개(84%)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령상의 기준은 현실에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

행 기준에 따르면 면적 및 장서가 증가할수록 사서수가 증가되어야 하나 공공도서관 전체 평균 사서수가 4~5명[161]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사서의 경우 봉사대상인구 구간별로 사서수를 설정하는 경우 봉사대상인구 2만이하 임에도 도서관 면적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사대상인구 구간별로 규정하지 않고, 도서관 건물 면적에 따라 사서 배치기준을 정하였다. 실제 이용자수에 따라 사서배치인원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자수를 산정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행대로 사서의 서비스 공간인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설립 시 면적은 추후 신·증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서수의 경우 면적에 따른 장서규모의 제한, 설립 이후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사서 배치 인원 기준에서 장서수 기준은 삭제하였다.

따라서 현재처럼 건물 면적기준으로 사서 배치 인원을 제시하였고, 본 기준은 도서관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330㎡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소 3명으로 하고, 660㎡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조정하였다. ICT 발전에 따른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의 정보화, 현실상에서 실제 준수가 어려운 기준의 완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기준보다 하향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의 기준대로 하였을 경우에도 전체 공공도서관 786개 중 82개(10%)가 기준 준수, 176개(22%)가 기준 초과로 약 32%가 기준을 준수하게 되고, 528개(67%)가 기준에 여전이 미달되는 상태로 각 도서관의 사서 배치 인원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서관 설립시, 최소한 법상의 사서 배치 인원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재 도서관의 경

161)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앞의 토론회 자료집(김지봉 토론문) p.40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 참조.

연 도	인 력 현 황			1관당 직원수	1관당 사서직원수
	직원수	사서직원	사서직 비율		
2008년	6,385	2,892	45	9.9	4.5
2009년	6,785	3,052	45	9.6	4.3
2010년	7,018	3,175	45.2	9.2	4.2
2011년	7,169	3,320	46.3	9.1	4.2
2012년	7,018	3,175	45.2	9.2	4.2

우 건물 면적이 330㎡의 경우 사서인원이 0명인 도서관이 1개, 1명인 경우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4개, 3명인 경우는 3개에 불과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관리・감독

현행법상 사서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별표3 사서의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교육기관의 지정・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서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안된 개정(안)은 법 제6조 2항의 사서의 양성에 관한 위임 근거에 기초하여 시행령에 사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정 및 취소의 경우 침익적 처분으로 향후 법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서자격 취득방법의 개선

사서의 전문성 등 질적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사서자격직제의 개편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162],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표준교과목제 도입, 이수학점 상향 조정(51학점), 사서실습과목 필수 도입(120시간 이상) 등 기존 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우선 도입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표준교과목의 경우 다양한 선행연구와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대상으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도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62) 그동안 논의된 사항은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한국도서관협회, 2013)' 참조.

< 참고 선행 연구 >

- 자료 I :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 자료 II :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필수과목 (6과목)	필수과목 (9과목)	핵심과목 (6과목)	핵심과목 (3과목)	선택과목 (20과목)	선택과목 (9과목)
· 문헌정보학개론 · 정보조직학 · 정보서비스론 · 도서관경영론 · 정보검색론 · 사서실습	· 문헌정보학개론 · 도서관사 · 정보사회론 · 정보추구행태론 · 장서개발론 · 목록법(II), 전자매체 기타 · 정보검색론 · 데이터베이스론 · 도서관자동화(II)/도서관시스템론	· 정보자료분류 · 목록실습 ·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 장서개발론 · 디지털도서관론 · 서지학개론 · 기록관리학개론	· 목록법(I), · 인쇄자료 · 분류법 · 도서관자동화(I)	· 도서 및 도서관사 ·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 도서관과 저작권 ·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 메타데이터의 이해 ·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 정보활용교육론 · 독서지도론 · 정보이용자연구 · 도서관협력론 · 관종별도서관운영론 · 도서관마케팅 · 비도서자료관리론 · 데이터베이스운영론 · 색인초록론 · 정보학개론 · 정보시스템론 · 도서관시스템자동화 · 도서관정보네트워크 · 기록보존론	· 도서관연구방법론 · 이용자교육론 · 독서지도론 · 디지털도서관관리론 · 서지학 · 기록관리론 · 주제정보자료론 · 장서보존론 · 정보매체론

1. 개정(안) 별표의 교과목은 자료I「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에서 선정한 과목 중에서 “필수과목”과 “핵심과목”을 합하여 별표상의 “필수과목”으로 정하였고, “선택과목”은 그대로 인용하였음.

※ 필수과목 (6개 과목) : ① 문헌정보학개론, ② 정보조직, ③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⑤ 정보검색론, ⑥ 사서실습

※ 핵심과목 (6개 과목) : ① 정보자료분류・목록실습, ②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③ 장서개발론(장서관리론), ④ 디지털도서관론, ⑤ 서지학개론, ⑥ 기록관리학개론

※ 선택과목 (20개 과목) :

① 문헌정보학개론 영역 4개 과목 (도서 및 도서관사,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② 정보조직학 영역 2개 과목 (메타데이터의 이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③ 정보조사제공학 영역 3개 과목 (정보활용교육론, 독서지도론, 정보이용자연구),

④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영역 4개 과목 (도서관협력론,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마케팅, 비도서자료관리론),

⑤ 정보학 영역 6개 과목 (데이터베이스운영론, 색인초록론, 정보학개론, 정보시스템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도서관정보네트워크),

⑥ 기록관리학 영역 1개 과목 (기록보존론)

2. 자료I에 근거한 이유는 현행 문헌정보학과에서 수행하는 교과목의 명칭에 가장 일치하여 사용하였고, 사회복지사 전공과목과 비교하였을 때에 과목수가 유사함.

3. 자료 II「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도서관협회, 2013)」내용과 비교 검토

※ 자료 II에서도 “필수과목”, “핵심과목”, “선택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편의상 “필수과목”과 “핵심과목”을 합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칭하였음.

※ 일부 과목명의 경우 명칭에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의미인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자료I의 과목명을 사용하였음.

① 자료II에서는 필수과목 12개 (필수 9, 핵심 3), 선택과목 9개 과목으로 분류 : 상대적으로 자료I에 비하여 선택과목의 수가 적음

② 자료I과 자료II 공통으로 된 필수과목 : 문헌정보학개론, 정보검색론, 장서개발론, 정보자료분류・목록실습

③ 자료I과 자료II 공통으로 된 선택과목 : 독서지도론, 정보이용자연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기록보존론(장서보존론)

④ 자료I에서는 필수, 자료II에서는 선택 :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디지털도서관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⑤ 자료I에서는 선택, 자료II에서는 필수 : 도서관사,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도서관정보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운영론

⑥ 자료I에서는 필수, 자료II에서 언급없음 : 도서관경영론, 사서실습

⑦ 자료I에서는 선택, 자료II에서 언급없음 : 도서관과 저작권, 메타데이터의 이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도서관협력론,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마케팅, 비도서자료관리론, 색인초록론

④항, ⑤항, ⑥항, ⑦항에 해당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회의',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 선택과목으로 분리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사서자격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외 이수학점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 42학점[163]으로 되어 있으나, 51학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51학점부터 72학점까지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필수, 선택 과목 등을 고려하여 51학점으로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각 대학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편차가 있긴 했지만 평균 63학점으로 나타났다.[164] 최저 기준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51학점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60~63학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서 실습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160시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즉 주5일 근무로 계산할 때 4주,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총 160시간 이상이 적합하며, 최근 산학연계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부의 경우 실습 인정 기간을 4주간 16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165]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습시간은 120시간이며, 평생교육사 실습시간은 160시간으로 하고 있다. 160시간을 적정 시간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법상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취지로 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120시간으로 안을 마련하였다.[166]

16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참조.
164) 노영희, 「전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방안 연구」, 국립중안도서관(2011), 22개 대학 이수학점 현황표를 참조하여 평균을 도출하였다.
165)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앞의 토론회 자료집(안인자 토론문) p. 66
166)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의 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필수과목의 경우 사서 교육기관의 현행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서

(2) 개정(안)

1) 사서 배치기준의 적정성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 4 조(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제 4 조(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시**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o 별표2 개정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은 제외)	공립 공공 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6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 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1명을 둘 수 있다.
	어린이 도서관	**공립 어린이 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에 따른다.**
특수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비고 :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중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표준교과목(안)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고려하여 개설 교과목을 선정하고, 이수학점의 경우 현재 30학점(1학점은 16시간의 강의)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51학점과의 균형을 맞추어 동일 또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 관리 · 감독

□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 4 조의2<신 설>	**제 4 조의2(사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서의 양성을 위하여 사서교육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 과정 및 이수학점, 사서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사서자격취득 방법의 개선

□ 도서관법 시행령

o 별표3 개정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 1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서 자격을 인정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

	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서 자격을 인정한다.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 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일부를 이수하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자에 한함)**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특수도서관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안)
제 3 조의2<신 설>	제 3 조의2(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영 별표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o [별표 1] 신설

[별표1]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1.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학,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사서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정보자료분류・목록실습,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장서개발론, 디지털도서관론,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개론, 도서 및 도서관사,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메타데이터의 이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정보활용교육론, 독서지도론, 정보이용자연구, 도서관협력론,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마케팅, 비도서자료관리론, 데이터베이스운영론, 색인초록론, 정보학개론, 정보시스템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도서관정보네트워크, 기록보존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1과목 33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서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7의2의 도서관으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도서관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8. 기 타

(1) 사서의 정의 규정 신설

현행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인적 자원인 사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서직 명칭과 업무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 제2조 제7의2호를 신설하여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6호에는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도서관진흥법」상의 학교도서관의 정의와 도서관법상의 학교도서관의 정의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적 규정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 행	개 정(안)
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의3.<신 설>	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의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 공인 자격사 정의 규정에 대한 참고 입법례

o 제1유형 : 자격 취득 요건만 규정한 형태(업무 별도로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o 제2유형 : 자격 취득과 해당 업무 요건을 같이 규정한 형태

건축사법

제 2 조(정의)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6.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o 제3유형 : 업무만 규정한 형태(자격 취득요건 별도 조문으로 규정)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o 기 타

-「공인노무사법」상의 공인노무사,「법무사법」상의 법무사,「세무사법」상의 세무사의 경우 정의 규정에 정의를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모두 두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상담자,「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의 학예사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만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음(현행 도서관법상의 "사서"의 경우도 동일함)

⇒ 자격사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통일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과 종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격사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사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자격 취득 요건과 해당 업무를 규정하여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서관위원회의 민간 위촉 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

입법 불비되었던 민간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법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⑥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장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규정 개정

정책 개발 업무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일원화하고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조사 기능에 집중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업무인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정책개발업무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일원화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규정을 삭제하였다. 한편,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변경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국가문헌의 체계적인 관리·보존과 함께 국가 차원의 도서관자료 보존·복원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법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 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④ ~ ⑤ (생 략)	법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도서관발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7호의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4)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 직급 조정

현행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5급·4급)으로 직급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현 행	개 정(안)
법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법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자격 규정 개정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공무원직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 등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영역의 사서를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③ (생 략)	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6)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조문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도서관 정책과의 연관성이 적은 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제 6 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현 행	개 정 (안)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②~④ (생 략)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7)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신설

도서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있어 도서관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신설(시정 요구, 등록 취소,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 요구되었다. 이 중, 시정 요구제도를 도입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법상의 도서관기준 준수 등 도서관법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법제화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현 행	개 정(안)
제30조의2<신 설>	**제30조의2(시정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공립 공공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도서관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서관법령 개정 이슈를 ①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 등의 개선, 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③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 제도 개선, ④ 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도 개선, ⑤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제도의 개선, ⑥ 도서관 기준의 개선, ⑦ 사서제도의 개선, ⑧ 기타 개정 이슈 등 8가지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현행 도서관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취지 및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관종 구분 체계의 경우, 현행 도서관 운영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맞지 않고, 현행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공도서관에서 특수도서관으로 분리된 장애인, 병영, 교도소, 병원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체계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각 담당 정책 부서 및 해당 도서관 운영 주체의 관리·운영 영역으로 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부분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장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표도서관이 중심축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도서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도서관법,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지식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화제도 개선의 경우 도서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상호 운용성, 표준화를 담보하도록 관련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정보화 전담 기관의 설치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출판물 등 온라인 자료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작·발간되는 공공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제도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도록 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의 미비 보다는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그 역할과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강한 부분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도서관 기준의 개선 및 사서제도의 개선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였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법령상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안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상의 기준은 도서관을 설립할 때 필요한 최저·최소한의 양적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국제 기준 및 선진국 수준의 질적·양적 권장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책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서의 자격취득제도 부분도 사서의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자격증 관리·운영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정 의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다만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정책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곽동철 외 4인,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7)

곽동철 외 2인,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김세균 외 2인, 디지털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사회 선도전략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9)

김세훈 외 3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김세훈 외,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김영석,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노동조 외, 주제전문사서 인력수급 전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8)

노영희 외,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윤희윤 외 6인,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0)

이명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14권 2호 (2003)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정은경 외 1인,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부 록 Ⅰ

도서관법령 개정(안)

□ 법령명: 도서관법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의2.<신 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o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성격을 명확히 함.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	o 공공도서관에 공립 공공, 사립 공공, 작은,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실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 등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포함되는 등 실제 관리・운영과 현행 법상의 공공도서관의 범주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도서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함. o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교육감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도서관법상의 공공도서관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o 공공도서관 중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도 어린이 계층을 중심으로 하지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 7. (생 략) 7의2.<신 설>	**나.**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 7. (현행과 같음) **7의2. "특수도서관"이란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나 보호자,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도서관서**	만 부모 등 다른 계층의 이용이 다른 도서관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킴. 그 외 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 등 특수한 장소에 한정되어 일반 계층의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강한 도서관의 경우는 특수도서관으로 별도로 구분·분류함(병원, 병영, 교도소, 장애인 도서관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상 규정을 두도록 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7의3.<신 설>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7의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o 사서의 정의 규정 신설
제 5 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생략> ②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제2항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법령에서 제시(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10~15 범위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구체적인 범위는 도서관계와 협의 후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의 사정(수장능력, 자료 이용률, 도서관 이용자의 수)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담보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 시행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삭제 및 해당 고시의 폐지 고려.
제 7 조의2<신 설>	**제 7 조의2(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및 지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관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통한 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o 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통합도서 서비스 기반 구축),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확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⑥ 제3항 제2호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장 및**	o 민간 위촉 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 · 개정사유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 · 연구 8. ~ 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④ ~ ⑤ (생 략)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도서관발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7호의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o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업무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정책개발업무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과 이용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조사 기능에 집중 o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변경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국가문헌의 체계적인 관리 · 보존과 함께 국가차원의 도서관자료 보존 · 복원 지원 역할을 수행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	o ICT발전에 따라 인쇄도서의 형태가 전자출판물로 제작 · 발간됨에 따라 국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 자료 중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 또는 증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납본대상에 포함.
② <신 설>	**②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 수집 근거를 명확하게 함(새롭게 납본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납본받는 디지털 파일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출판사들이 납본 파일 유출을 이유로 납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명확히 한정하여 디지털 파일 납본 실적을 높여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등에 활용하고자 함.

현 행	개 정(안)	제 · 개정사유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 · 종류 · 형태 · 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o 전자출판물의 발간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우리나라는 ISBN국제관리기구에 가입('91)한 국가로서 국내 전자출판물의 효율적 관리 및 국제유통을 위해 국제표준식별체계로서의 ISBN부여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o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③ (생 략)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o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공무원직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 도서관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 등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영역의 사서를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 법령명: 도서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 · 개정사유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 설립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현행 고시로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장서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보존 공간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이를 100분의 10~15 범위내(구체적인 범위는 도서관계와 협의 후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도서관의 사정(수장능력, 자료이용률, 도서관 이용자의 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함.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생 략)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제 5 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삭 제>	o 도서관자료의 구체적인 교환, 이관, 폐기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 6 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②~④ (생 략)	제 6 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o 오류 수정 o 당연직 위원에서 도서관 정책과의 연관성이 적은 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함.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	o 국립세종도서관 장서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 제20조의 납본 부수 및 형태를 구체화함. o 디지털 파일의 납본 대상 기관,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방법을 구체화함. o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시행령의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 · 개정사유
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④ (생 략) ⑤ <신 설>	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납본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납본: 2부** **2. 제2항에 따른 납본: 3부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된 자료 1부** **3. 제3항에 따른 납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 1부** ④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을 개정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⑥ <신 설>	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 그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파일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파일의 온라인상의 위치를 통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수집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으로 납본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디지털 파일은 최종 발행되어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와 내용상 동일한 것일 것 2. 해당 디지털 파일은 보존 목적에 적합한 품질을 갖출 것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⑦ <신 설>	⑦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디지털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의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된 경우 3.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저작물의 전송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제한한 경우	
제13조의5<신 설>	제13조의5(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도서관장은 이용자에게 법 제2조제3호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민감정보 및 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자료 운영 및 회원 관리(대출・반납 관리 등)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안)	제·개정사유
		o「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에서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입법화함.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 및 법 제23조의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o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핵심 역할인 지역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세부 운영 기준 수립을 강제함.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

현 행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table>
<tr><th rowspan="2">봉사대상 인구(명)</th><th colspan="2">시설(건물면적 ㎡)</th><th colspan="2">도서관 자료</th></tr>
<tr><th>건물면적
(제곱미터)</th><th>열람석
(좌석수)</th><th>기본장서
(권)</th><th>연간증서
(권)</th></tr>
<tr><td>2만 미만</td><td>264 이상</td><td>60이상</td><td>3,000이상</td><td>300이상</td></tr>
<tr><td>2만 이상
5만 미만</td><td>660 이상</td><td>150이상</td><td>6,000이상</td><td>600이상</td></tr>
<tr><td>5만 이상
10만 미만</td><td>990 이상</td><td>200이상</td><td>15,000이상</td><td>1,500이상</td></tr>
<tr><td>10만 이상
30만 미만</td><td>1,650 이상</td><td>350이상</td><td>30,000이상</td><td>3,000이상</td></tr>
<tr><td>30만 이상
50만 미만</td><td>3,300 이상</td><td>800이상</td><td>90,000이상</td><td>9,000이상</td></tr>
<tr><td>50만 이상</td><td>4,950 이상</td><td>1,200이상</td><td>150,000이상</td><td>15,000이상</td></tr>
</table>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

</td><td>

o 현행 도서관법 시설, 자료 기준은 1988년 개정되어 25년이 경과된 상태로 현재의 공공도서관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 전문화 · 세분화된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이에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설립시 기준과 운영시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서관법상의 기준은 설립시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시 봉사대상 인구 구간별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건물 면적, 장서수, 사서배치 인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공

</td></tr>
</table>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
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table>
<tr><th colspan="2">시설</th><th rowspan="2">도서관 자료</th></tr>
<tr><th>건물면적</th><th>열람석</th></tr>
<tr><td>33제곱미터 이상</td><td>6석 이상</td><td>1,000권 이상</td></tr>
</table>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table>
<tr><th colspan="2">시설</th><th colspan="2">도서관 자료</th></tr>
<tr><td>최소 건물면적 (㎡)</td><td>기계 · 기구</td><td>장서</td><td>녹음테이프</td></tr>
<tr><td>면적 66㎡ 이상
자료 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td><td>5. 점자제판기 1대 이상
6. 점자인쇄기 1대 이상
7. 점자 타자기 1대 이상
8. 녹음기 4대 이상</td><td>3,000권 이상</td><td>500점 이상</td></tr>
</table>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table>
<tr><th>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th></tr>
<tr><td>열람석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td></tr>
</table>
</td><td>
공도서관 건립매뉴얼」등 참고하여 도출),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현행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 조정함.
※ 추후 국제기준 및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또는 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 활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td></tr>
</table>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를) 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 ·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

개 정(안)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table>
<tr><th rowspan="2">봉사대상 인구(명)</th><th rowspan="2">시설(건물면적 ㎡)</th><th>도서관 자료</th></tr>
<tr><th>(최소) 기본장서(권)</th></tr>
<tr><td>2만 미만</td><td>-</td><td>-</td></tr>
<tr><td>2만 이상
5만 미만</td><td>-</td><td>-</td></tr>
<tr><td>5만 이상
10만 미만</td><td>-</td><td>-</td></tr>
<tr><td>10만 이상
30만 미만</td><td>-</td><td>-</td></tr>
<tr><td>30만 이상
50만 미만</td><td>-</td><td>-</td></tr>
<tr><td>50만 이상</td><td>-</td><td>-</td></tr>
</table>

나. 사립 공공도서관

</td><td></td></tr>
</table>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table>
<tr><td rowspan="2"><u>최소 건물면적 (㎡)</u></td><td>도서관 자료</td></tr>
<tr><td><u>(최소) 기본장서(권)</u></td></tr>
<tr><td><u>100 이상</u></td><td><u>3,000권 이상</u></td></tr>
</table>

<u>라. 어린이 도서관</u>

<u>공립일 경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립일 경우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따른다.</u>

<u>2.</u>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u>3.</u>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table>
<tr><td colspan="2">시설</td><td colspan="2">도서관 자료</td></tr>
<tr><td>최소 건물면적 (㎡)</td><td>기계 · 기구</td><td>장서</td><td>녹음테이프</td></tr>
<tr><td>면적 66㎡ 이상
자료 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td><td>9. 점자제판기 1대 이상
10. 점자인쇄기 1대 이상
11. 점자 타자기 1대 이상
12. 녹음기 4대 이상</td><td>3,000권 이상</td><td>500점 이상</td></tr>
</table>

</td><td></td></tr>
</table>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4.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중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5. 이 외의 도서관** : 해당 사항 없음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구 · 읍 · 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시설의 건물 면적은 장서 공간, 이용자 공간, 관리자 공간, 서비스 공간을 합한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봉사대상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실 · 회의실 ·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전체 열람석(자료실에 배치되는 각종 열람좌석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다. 그 밖의 향토자료 ·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현 행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 정(안)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
<table>
<tr><td rowspan="3">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은 제외)</td><td><u>공립 공공
도서관</u></td><td>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u>660제곱미터</u>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td></tr>
<tr><td>작은도서관</td><td>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1명을 둘 수 있다.</td></tr>
<tr><td><u>어린이 도서관</u></td><td><u>공립 어린이 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에 따른다.</u></td></tr>
<tr><td><u>특수도서관</u></td><td>장애인도서관</td><td>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td></tr>
<tr><td colspan="3"><u>비고 :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중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u></td></tr>
</table>
</td><td></td></tr>
<tr><td>
현 행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자격요건</th></tr>
<tr><td>1. 1급
정사서</td><td>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td></tr>
</table>
</td><td>o 사서의 전문성 등 질적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전문사서제도의 도입, 사서자격직제의 개편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표준교과목제 도입, 이수학점 상향 조정(51학점), 사서실습과목 필수 도입(120시간 이상) 등 기존 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우선 도입</td></tr>
</table>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u>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u>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능한 사항만 반영함.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table>
<tr><th>현 행 · 개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td><td></td></tr>
<tr><td>개 정(안)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자격요건</th></tr>
<tr><td>1. 1급정사서</td><td>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u>정보관리기술사</u>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td></tr>
<tr><td>2. 2급정사서</td><td>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u>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u></td></tr>
</table>
</td><td></td></tr>
</table>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서 자격을 인정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서 자격을 인정한다.**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현장 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일부를 이수하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자에 한함)**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 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특수도서관**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현 행 · 개정(안)	제 · 개정사유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법령명: 도서관법 시행규칙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제 · 개정사유</th></tr>
<tr><td>제 3 조의2<신 설></td><td>제 3 조의2(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영 별표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td><td rowspan="2">o 사서의 전문성 등 질적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하여 표준교과목제도를 도입하고, 최소 취득학점 상향 조정 및 도서관 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현장 실무 적응성을 높임.</td></tr>
<tr><td colspan="2">[별표1]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1. 문헌정보학 · 도서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및 학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교과목</th><th colspan="2">이수과목(학점)</th></tr>
<tr><th>대학원</th><th>대학 · 전문대학</th></tr>
<tr><td>필수 과목</td><td>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학,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사서실습, 정보자료분류 · 목록실습, 주제별정보원(참고정보원), 장서개발론, 디지털도서관론,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개론</td><td>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td>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tr>
<tr><td>선택 과목</td><td>도서 및 도서관사,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메타</td><td>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td><td>11과목 33학점 (과목당 3학점)</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현 행</th><th colspan="2">개 정(안)</th><th>제·개정사유</th></tr>
<tr><td></td><td>데이터의 이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실습, 정보활용교육론, 독서지도론, 정보이용자연구, 도서관협력론,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마케팅, 비도서자료관리론, 데이터베이스운영론, 색인초록론, 정보학개론, 정보시스템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도서관정보네트워크, 기록보존론</td><td>이상</td><td>이상</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4">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서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7의2의 도서관으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도서관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td></tr>
</table>

부 록 Ⅱ

2011년 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

▣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공공도서관 분포도

구 분		빈 도	%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인구수	2만 미만	4	0.5
	2만 ~ 5만 미만	69	8.8
	5만 ~ 10만 미만	115	14.6
	10만 ~ 30만 미만	304	38.7
	30만 ~ 50만 미만	223	28.4
	50만 이상	71	9.0
합계		786	100.0

▣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공공도서관 시설 등 현황 분포도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공공도서관 (전체)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786	92,208	723	22,971	35,488	40,565	46,421	57,159	68,688	80,686	101,545	116,393	143,831	197,352	669,505
			향토자료수	권	786	519	0	0	0	0	0	0	0	24	100	156	252	896	76,522
			비도서자료수	점	786	3,944	0	0	402	651	1,007	1,649	2,413	3,067	4,501	5,483	6,346	9,430	53,771
			전자자료수	종	786	3,758	0	0	0	0	0	0	1,000	2,084	3,456	4,769	5,782	9,236	190,985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786	165	0	12	22	25	31	45	61	89	126	152	190	403	4,730
			연간증가자료수	권	786	9,473	0	1,998	3,144	3,796	4,363	5,282	6,338	8,170	10,092	11,396	13,242	19,676	152,504
			연간제적자료수	권	786	2,263	0	0	0	0	0	0	15	295	1,655	2,591	3,877	6,651	100,184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786	7,274	107	663	1,074	1,279	1,491	1,916	2,669	3,727	4,966	6,037	7,308	13,427	946,887
			연면적	㎡	786	2,536	165	550	877	972	1,055	1,346	1,628	2,033	2,733	3,302	3,901	5,840	22,416
			총좌석수	석	786	395	2	82	120	147	166	210	269	334	447	501	590	868	2,700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786	28	0	4	8	10	12	15	20	25	31	36	43	62	181
		인적자원	정규직	명	786	9	0	2	3	3	4	5	6	7	9	11	13	23	70
			비정규직	명	786	6	0	0	1	1	2	3	4	5	6	7	9	12	50
			지원인력현황	명	786	225	0	0	1	1	2	5	10	20	52	85	175	669	5,764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786	5	0	1	2	2	2	3	3	4	5	7	8	12	59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786	775,169	0	103,565	177,853	232,245	277,812	370,618	448,351	582,637	797,968	964,212	1,228,802	1,946,064	15,028,275
			도서관총예산-인건비		786	383,189	0	32,347	78,817	101,263	126,261	184,259	223,784	271,711	382,576	467,449	583,553	1,062,212	3,755,054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786	86,362	0	16,600	29,796	33,179	40,340	49,998	63,000	76,086	95,865	110,880	123,635	191,766	1,030,655
			도서관총예산-운영비		786	365,739	0	13,705	38,632	57,931	88,971	132,042	174,101	242,953	341,353	426,578	537,193	898,063	11,475,309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786	22,795	0	1,155	2,383	2,948	4,217	6,675	9,746	15,583	24,428	30,896	38,819	62,799	263,722
공공	2만미만	도서관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4	59,725	29,969	29,969	29,969	38,956	47,943	65,917	68,232	70,547	71,507	71,987	.	.	72,467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구분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향토자료수	권	4	392	8	8	8	34	60	112	278	443	724	864	.	.	1,004
			비도서자료수	점	4	2,068	15	15	15	646	1,277	2,539	2,697	2,854	2,859	2,861	.	.	2,863
			전자자료수	종	4	687	0	0	0	26	52	104	552	999	1,322	1,484	.	.	1,645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4	99	0	0	0	8	17	33	64	95	182	225	.	.	268
			연간증가자료수	권	4	5,253	2,163	2,163	2,163	2,799	3,435	4,707	4,732	4,757	7,072	8,229	.	.	9,386
			연간제적자료수	권	4	1,089	0	0	0	8	17	33	1,016	1,998	2,161	2,243	.	.	2,324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4	2,610	731	731	731	849	967	1,203	1,502	1,800	4,252	5,478	.	.	6,704
			연면적	㎡	4	1,180	646	646	646	715	785	923	1,008	1,092	1,576	1,818	.	.	2,060
			총좌석수	석	4	195	66	66	66	87	108	150	174	197	282	325	.	.	367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4	9	1	1	1	2	4	6	9	12	14	14	.	.	15
		인적자원	정규직	명	4	4	0	0	0	1	2	4	5	5	6	6	.	.	6
			비정규직	명	4	2	1	1	1	1	1	1	2	2	3	3	.	.	3
			지원인력현황	명	4	15	0	0	0	0	1	1	1	1	30	45	.	.	59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4	2	0	0	0	1	1	2	3	3	3	3	.	.	3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4	206,241	42,820	42,820	42,820	70,008	97,196	151,571	189,055	226,538	315,287	359,661	.	.	404,035
			도서관총예산-인건비		4	82,088	24,630	24,630	24,630	25,048	25,465	26,300	48,697	71,093	138,712	172,521	.	.	206,330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4	43,720	23,880	23,880	23,880	25,410	26,940	30,000	41,800	53,600	60,500	63,950	.	.	67,400
			도서관총예산-운영비		4	96,476	11,760	11,760	11,760	32,479	53,199	94,637	115,861	137,085	139,754	141,088	.	.	142,422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4	3,248	271	271	271	1,130	1,989	3,706	3,808	3,910	4,507	4,805	.	.	5,103
	2만~ 5만미만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69	59,493	11,202	23,060	34,208	43,362	48,399	54,248	59,264	63,180	67,555	69,388	71,388	82,119	238,602
			향토자료수	권	69	190	0	0	0	0	0	0	0	8	25	64	97	294	5,005
			비도서자료수	점	69	2,890	0	0	204	462	677	1,198	2,325	2,698	3,471	4,073	4,379	5,827	35,901
			전자자료수	종	69	1,284	0	0	0	0	0	0	445	1,056	1,470	1,855	2,332	3,254	9,593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69	82	0	0	10	17	21	30	42	60	74	85	114	295	616
			연간증가자료수	권	69	4,748	0	1,153	1,902	2,599	3,153	3,790	4,386	4,990	5,433	5,702	6,107	7,312	27,449
			연간제적자료수	권	69	1,488	0	0	0	0	0	0	0	425	2,235	2,871	3,498	4,411	9,754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69	3,540	256	940	1,234	1,311	1,376	1,630	1,920	2,520	2,908	3,182	3,838	4,601	57,918
			연면적	㎡	69	1,332	256	695	785	912	945	1,055	1,198	1,349	1,543	1,600	1,664	2,167	5,045
			총좌석수	석	69	237	18	76	118	134	145	196	212	251	295	303	318	350	1,243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69	16	0	2	8	9	10	11	13	15	20	24	25	30	80
		인적자원	정규직	명	69	5	0	1	2	2	3	4	5	5	6	6	6	7	33
			비정규직	명	69	2	0	0	1	1	1	1	1	2	3	3	4	7	18
			지원인력현황	명	69	43	0	0	0	0	0	1	1	3	7	8	11	76	1,727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69	3	0	1	1	1	2	2	3	3	3	3	3	4	21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69	320,650	0	68,101	147,768	161,883	185,266	268,254	323,521	374,135	434,838	449,132	493,931	568,407	1,011,943
			도서관총예산-인건비		69	179,514	0	5,050	38,000	60,738	78,795	112,202	174,000	196,239	223,927	238,739	250,950	281,351	1,697,707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69	40,359	0	5,000	13,400	19,644	21,350	31,440	38,920	50,110	56,416	59,086	62,500	72,604	155,220
			도서관총예산-운영비		69	165,636	0	14,000	39,620	54,123	57,010	106,098	127,647	147,340	179,380	191,504	204,117	337,006	1,117,508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69	6,484	0	343	1,470	1,748	1,971	3,430	4,850	6,007	6,935	7,344	7,872	9,814	97,268
	5만~10만미만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115	71,510	13,558	25,871	36,381	42,712	44,642	55,920	59,339	68,669	78,783	83,985	88,845	105,736	456,613
			향토자료수	권	115	400	0	0	0	0	0	0	5	43	109	147	208	643	11,616
			비도서자료수	점	115	3,304	0	0	392	687	905	1,745	2,314	2,973	4,530	5,050	5,642	7,781	18,722
			전자자료수	종	115	1,936	0	0	0	0	0	79	1,066	1,772	2,781	3,117	3,433	5,158	15,190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115	111	0	9	15	18	22	31	45	64	83	110	133	190	1,574
			연간증가자료수	권	115	6,383	223	1,928	2,747	2,918	3,214	3,893	4,788	5,609	7,071	7,723	8,712	12,873	28,779
			연간제적자료수	권	115	1,628	0	0	0	0	0	0	0	154	1,237	2,009	2,484	5,477	25,518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115	3,502	107	796	1,177	1,355	1,506	1,697	2,095	2,642	3,700	4,073	4,733	7,777	24,080
			연면적	㎡	115	1,682	214	569	775	880	984	1,081	1,309	1,481	1,654	1,835	2,092	2,889	10,027
			총좌석수	석	115	293	32	88	110	117	125	173	205	236	300	333	394	609	1,986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115	20	0	5	8	10	11	13	16	18	22	24	25	36	170
		인적자원	정규직	명	115	6	0	2	3	3	3	4	5	5	6	6	7	12	45
			비정규직	명	115	3	0	0	0	1	1	1	2	3	4	5	5	7	32
			지원인력현황	명	115	54	0	0	0	0	0	1	2	3	4	7	13	57	1,977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115	3	0	1	1	2	2	2	2	3	3	4	4	7	29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115	580,864	0	111,813	162,183	194,093	230,447	275,982	342,076	393,537	435,006	495,413	618,188	1,256,347	6,897,779
			도서관총예산-인건비		115	290,070	0	27,127	59,677	80,000	92,591	166,322	195,400	213,062	259,009	280,000	330,741	602,368	2,650,695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115	69,391	0	21,470	29,952	32,727	36,224	45,400	50,500	62,128	74,480	84,813	90,277	130,648	544,200
			도서관총예산-운영비		115	230,415	0	5,750	36,053	55,041	73,667	99,359	125,560	149,385	180,224	202,861	236,352	455,801	4,920,110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115	10,506	0	1,034	2,026	2,401	2,647	3,646	5,012	7,843	9,959	11,848	13,509	21,418	170,544
	10만~30만미만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304	103,938	723	29,940	42,093	47,039	51,172	66,974	77,820	95,086	118,035	143,037	155,691	221,283	669,505
			향토자료수	권	304	707	0	0	0	0	0	0	11	50	172	254	443	1,179	76,522
			비도서자료수	점	304	4,328	0	0	531	816	1,221	1,845	2,706	3,495	4,733	5,638	6,499	10,730	53,771
			전자자료수	종	304	4,012	0	0	0	0	0	2	1,028	2,164	3,826	4,977	6,262	10,948	84,014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304	169	0	18	24	30	37	51	70	101	144	168	220	393	3,179
			연간증가자료수	권	304	9,898	6	2,526	4,104	4,584	5,027	5,954	7,212	9,218	10,784	12,614	14,034	20,574	84,574
			연간제적자료수	권	304	2,450	0	0	0	0	0	0	37	524	2,125	3,128	4,175	6,836	62,440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304	6,884	165	961	1,527	1,792	1,998	2,800	3,725	4,990	6,698	7,897	9,948	15,415	67,983
			연면적	㎡	304	2,896	165	750	999	1,130	1,298	1,624	1,963	2,519	3,451	3,861	4,457	6,390	22,416
			총좌석수	석	304	435	6	100	147	164	190	245	315	380	489	546	650	1,001	2,625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304	30	0	5	10	11	13	18	22	27	34	38	44	68	181
		인적자원	정규직	명	304	10	0	2	3	4	5	6	6	8	10	12	15	25	70
			비정규직	명	304	6	0	0	1	2	2	3	5	6	7	8	9	14	47
			지원인력현황	명	304	219	0	0	1	2	2	5	14	31	77	129	316	712	3,146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304	6	0	1	2	2	2	3	4	5	6	7	8	12	59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304	884,994	0	97,663	226,686	279,362	322,867	408,795	524,846	750,209	942,625	1,137,152	1,365,023	2,121,410	15,028,275
			도서관총예산-인건비		304	434,142	0	27,748	89,056	122,117	154,599	198,889	251,842	349,462	455,094	586,953	713,352	1,197,332	3,755,054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304	93,551	0	16,310	31,614	41,553	47,703	60,560	73,844	91,500	113,510	120,962	130,468	203,802	682,640
			도서관총예산-운영비		304	433,085	0	7,460	47,200	66,549	104,693	144,448	204,440	325,490	439,082	555,448	671,000	1,017,894	11,475,309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304	22,514	0	1,197	2,489	3,367	4,844	7,860	11,618	18,839	29,883	34,555	42,465	56,268	124,143
	30만~50만미만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223	102,351	4,675	19,235	29,695	37,259	40,317	55,144	75,769	94,743	137,398	149,163	161,784	220,588	651,501
			향토자료수	권	223	517	0	0	0	0	0	0	0	2	100	149	233	836	13,336
			비도서자료수	점	223	4,446	0	1	352	584	904	1,631	2,222	3,223	5,531	6,784	7,680	10,694	40,238
			전자자료수	종	223	4,780	0	0	0	0	0	2	1,582	3,609	5,767	6,084	7,958	11,518	190,985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223	216	0	10	23	29	37	59	84	100	149	203	269	561	4,730
			연간증가자료수	권	223	12,117	1	1,981	3,767	4,750	5,113	6,642	8,060	10,115	12,477	14,161	16,445	20,916	152,504
			연간제적자료수	권	223	2,691	0	0	0	0	0	0	9	160	1,402	3,034	4,517	8,305	100,184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223	9,487	109	482	947	1,000	1,063	1,576	2,126	3,774	4,878	5,631	7,171	12,419	946,887
			연면적	㎡	223	2,963	201	432	882	997	1,095	1,498	2,018	2,790	3,629	4,221	4,910	6,723	14,900
			총좌석수	석	223	453	2	71	127	155	186	238	321	446	539	610	734	968	2,700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223	31	0	3	6	8	12	17	23	31	39	45	50	70	167
		인적자원	정규직	명	223	10	0	2	3	4	4	6	7	9	12	14	16	24	68
			비정규직	명	223	7	0	1	2	2	2	3	4	6	8	9	10	14	50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지원인력현황	명	223	333	0	1	3	4	7	11	17	38	85	182	377	1,077	5,764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223	6	0	1	2	2	3	3	4	5	7	8	11	14	40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223	901,029	0	127,369	223,002	262,519	316,606	442,566	600,491	777,312	1,128,659	1,302,910	1,605,345	2,156,481	7,311,415
			도서관총예산-인건비		223	428,265	0	45,000	87,669	113,495	136,800	185,544	253,996	380,289	502,626	582,172	721,713	1,083,213	1,984,267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223	103,779	0	20,368	33,023	40,300	44,440	57,688	76,058	92,724	113,056	126,160	146,528	215,440	1,030,655
			도서관총예산-운영비		223	444,346	0	15,693	57,177	97,041	125,253	173,623	255,963	333,710	438,418	494,476	563,155	1,030,650	6,608,300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223	32,283	0	1,605	3,216	4,371	6,236	13,437	20,341	29,820	41,833	48,035	59,389	85,306	182,027
	50만이상	도서관 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71	77,277	8,522	17,061	23,800	26,549	30,303	39,662	54,451	71,984	84,365	104,861	137,763	209,344	251,795
			향토자료수	권	71	239	0	0	0	0	0	0	0	0	13	17	59	364	7,196
			비도서자료수	점	71	2,890	0	12	386	477	572	1,156	1,712	2,558	3,545	3,974	5,591	8,305	12,086
			전자자료수	종	71	4,988	0	0	0	0	0	0	409	1,646	2,945	4,915	5,881	10,151	144,482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71	161	8	14	19	25	29	36	52	83	121	127	163	655	1,065
			연간증가자료수	권	71	9,181	0	2,010	2,637	2,776	3,363	3,935	6,694	8,699	12,421	13,921	16,506	20,210	45,531
			연간제적자료수	권	71	1,963	0	0	0	0	0	8	56	193	759	894	1,662	9,529	17,134
		시설 및 설비	도서관부지면적	㎡	70	12,066	266	400	610	701	971	1,258	1,533	3,033	5,330	7,723	9,980	21,341	410,456
			연면적	㎡	71	2,285	307	353	450	539	638	888	1,381	1,963	2,611	3,405	4,144	6,560	8,472
			총좌석수	석	71	375	30	65	87	100	126	164	213	300	493	550	646	859	1,832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71	29	1	2	4	6	11	18	24	31	41	46	48	66	115
		인적자원	정규직	명	71	10	0	2	2	3	4	5	6	7	9	11	15	29	37
			비정규직	명	71	8	0	0	1	2	2	3	4	5	7	9	14	27	45
			지원인력현황	명	71	373	0	4	9	11	12	18	26	86	168	299	395	1,466	4,060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71	7	1	1	2	2	3	4	4	5	6	7	9	18	39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71	698,115	27,256	98,384	131,998	150,085	217,261	397,682	486,553	572,028	899,942	1,031,857	1,227,909	1,587,045	3,131,574
			도서관총예산-인건비		71	389,169	2,560	53,128	100,499	110,604	132,536	218,045	259,477	270,777	326,985	462,579	627,970	1,129,282	1,823,900
			도서관총예산-자료구입비		71	75,480	2,800	16,880	24,000	31,660	32,000	37,288	56,196	70,100	92,101	105,780	122,944	184,347	252,824
			도서관총예산-운영비		71	259,317	0	21,429	24,939	30,924	33,458	77,654	163,901	214,952	303,978	442,229	505,415	720,251	1,328,170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71	31,053	354	1,127	2,508	3,054	5,092	8,384	11,492	18,906	28,000	30,971	42,162	104,776	263,722
교도소도서관		소장자료	도서자료(인쇄)		50	6,800	0	4,296	4,699	4,993	5,214	5,565	5,973	6,894	7,608	8,087	8,556	10,864	17,723
			비도서		50	19	0	0	0	0	0	0	0	0	0	0	0	29	385
			연속간행물(인쇄)		50	2	0	0	0	0	0	0	0	0	0	0	0	8	39
			연간증가자료수	권	50	1,219	0	0	85	133	209	474	811	924	1,000	1,052	1,374	2,484	17,743
		시설 및 설비	도서관건물연면적	㎡	50	47	9	16	23	24	28	33	37	46	50	58	63	78	330
			총좌석수	석	50	3	0	0	0	0	0	0	0	0	0	2	5	10	20
			업무용컴퓨터수	대	50	1	0	0	1	1	1	1	1	1	1	1	1	1	2
		인적자원	직원수(전임+겸임)	명	50	1	0	1	1	1	1	1	1	1	1	1	1	1	4
		예산현황	2011년도예산액		50	1,667	0	0	0	0	0	0	0	0	2	521	1,087	3,443	50,000
			2012년도예산액		50	40,563	0	0	50	171	500	500	500	500	500	550	780	1,950	1,500,000
		이용 및 이용자	봉사대상자수	명	50	2,599	0	0	200	289	369	522	770	1,000	1,172	1,200	1,469	2,677	82,987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도서자료(인쇄)수	권	4	2,533,455	350,139	350,139	350,139	351,163	352,188	354,236	1,649,423	2,944,610	4,714,723	5,599,780	.	.	6,484,836
			고서・귀중본및특수자료수	종	4	28,274	0	0	0	154	308	615	1,847	3,079	56,241	82,822	.	.	109,403
			고서・귀중본및특수자료수	권	4	74,253	0	0	0	690	1,380	2,760	10,049	17,337	147,127	212,021	.	.	276,916
			비도서자료수	권	4	413,558	1,569	1,569	1,569	21,149	40,729	79,889	191,459	303,028	786,388	1,028,067	.	.	1,269,747
			전자자료수	패키지	4	40	0	0	0	0	0	0	3	5	80	118	.	.	155
			전자자료수	종	4	23,424	2,090	2,090	2,090	2,775	3,461	4,831	23,036	41,241	43,388	44,461	.	.	45,534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연속간행물(인쇄)수	권	4	22,116	508	508	508	593	679	849	12,271	23,693	43,553	53,482	.	.	63,412
		연간증가자료수	권	4	192,080	14,495	14,495	14,495	20,151	25,807	37,119	158,237	279,355	358,354	397,853	.	.	437,352
		연간제적자료수	권	4	11	0	0	0	0	0	0	0	0	21	32	.	.	42
	시설 및 설비	도서관건물-연면적	㎡	4	34,700	5,107	5,107	5,107	5,843	6,579	8,050	18,085	28,119	62,822	80,174	.	.	97,525
		좌석수	석	4	640	30	30	30	111	192	353	474	595	1,089	1,335	.	.	1,582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4	183	10	10	10	20	31	51	132	213	336	397	.	.	458
	인적자원	정규직	명	4	181	49	49	49	55	61	73	152	230	301	337	.	.	372
		비정규직	명	4	62	0	0	0	6	11	22	52	81	113	129	.	.	145
		직원구성현황	명	4	98	0	0	0	0	0	0	12	23	196	282	.	.	368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4	131	27	27	27	32	37	46	107	168	225	253	.	.	281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2009년)	천원	4	21,734,144	5,969,961	5,969,961	5,969,961	6,211,141	6,452,322	6,934,682	20,968,040	35,001,398	37,015,966	38,023,250	.	.	39,030,534
		도서관총예산(2010년)	천원	4	24,748,076	6,794,137	6,794,137	6,794,137	6,895,307	6,996,477	7,198,817	22,279,298	37,359,779	42,499,676	45,069,624	.	.	47,639,572
	이용 및 이용자	도서관방문자수	명	4	313,323	10,807	10,807	10,807	29,262	47,718	84,628	205,672	326,715	578,929	705,036	.	.	831,143
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도서자료(인쇄)	권	33	6,681	0	4	1,448	1,922	3,301	3,908	4,071	5,473	7,178	7,722	8,961	15,449	45,885
		비도서	점	33	19,017	0	131	791	1,713	2,380	4,151	6,112	8,259	13,941	19,064	23,092	32,864	270,152
		전자자료	패키지	33	356	0	0	0	0	0	0	0	0	0	6	32	579	9,050
		전자자료	종	33	430	0	0	0	0	0	0	0	0	400	523	856	1,901	3,201
		연속간행물인쇄	종	33	27	0	0	0	0	0	1	3	5	23	33	48	59	300
		연간증가자료수		33	5,727	0	68	347	703	789	868	1,103	1,448	3,429	3,763	4,951	24,358	57,896
	시설 및 설비	도서관건물연면적	㎡	32	704	40	81	95	104	119	133	198	235	335	359	409	869	13,748
		총좌석수	석	33	15	0	0	3	5	6	9	12	15	19	20	20	24	72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33	4	0	0	0	1	1	2	2	2	4	5	5	12	20
	인적자원	정규직	명	33	4	0	1	1	2	2	2	3	4	5	6	7	11	20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기타	명	33	1	0	0	0	0	0	0	0	0	1	2	2	3	5
		자원봉사	명	33	397	0	0	15	22	24	57	84	203	323	374	915	1,496	2,280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33	1	0	0	0	0	0	1	1	1	1	1	2	2	3
	예산현황	예산지출내역		33	6,137,828	0	0	3,686	35,301	52,947	87,562	105,733	177,079	221,811	291,360	355,947	430,382	197,477,078
		예산수입내역		33	5,099,291	0	0	0	100	2,395	56,408	93,840	138,923	192,168	209,168	309,755	471,600	163,876,242
	이용 및 이용자	회원등록자수	명	33	2,280	0	55	335	427	700	880	1,796	2,135	2,283	2,538	3,034	6,683	12,824
		이용자수(도서관방문자수)	명	33	117,493	0	0	0	34	77	337	824	1,488	3,083	6,636	14,239	122,203	3,289,096
전문도서관	소장자료	인쇄자료수	권	145	45,250	0	5,275	11,039	14,632	16,213	20,900	27,704	34,470	42,726	49,262	54,694	97,190	615,802
		비도서자료수	점	145	15,777	0	0	8	41	86	179	400	723	1,206	2,025	2,591	12,741	611,431
		전자자료수	종	145	56,891	0	0	0	0	2	8	47	599	3,086	5,445	7,137	21,590	4,000,055
		연간증가자료수		145	4,002	0	74	441	519	826	1,145	1,516	1,831	2,543	2,765	3,752	5,815	164,199
	시설 및 설비	건물연면적	㎡	134	1,446	0	81	131	141	165	210	258	320	456	503	658	1,134	106,645
		총좌석수	석	145	40	0	4	6	7	8	12	15	20	24	30	35	56	1,615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145	4	0	1	1	1	2	2	2	3	3	4	5	8	92
	인적자원	정규직	명	145	3	0	0	1	1	1	1	1	2	2	3	3	5	65
		비정규직	명	145	1	0	0	0	0	0	1	1	1	1	1	1	2	42
		지원인력현황	명	145	1	0	0	0	0	0	0	0	0	0	0	1	1	46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145	2	0	1	1	1	1	1	2	2	2	3	3	4	18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2011년)		145	247,302	0	0	0	3,440	13,852	30,711	54,378	108,073	211,000	276,750	327,104	643,200	3,985,119
		도서관총예산(2012년도예산액)		145	261,351	0	0	0	350	8,440	37,365	57,000	107,978	212,000	264,510	346,562	716,600	4,271,702
	이용 및 이용자	봉사대상자수	명	145	26,530	0	0	51	95	153	200	272	410	763	1,082	1,997	4,422	3,586,079
		도서관방문자수	명	145	21,219	0	20	322	520	716	1,196	2,146	2,830	4,840	6,621	8,840	18,802	2,058,018
대학도서관	도서관	도서(인쇄)	권	430	304,470	0	18,335	34,365	44,577	59,113	90,386	118,320	174,364	313,229	428,283	522,158	868,838	4,068,678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자료현황	비도서	점	430	14,093	0	82	762	1,012	1,566	2,770	4,575	8,090	12,203	14,741	19,324	31,405	462,436
		전자자료	종	430	19,426	0	0	0	132	686	2,308	4,521	7,001	11,522	15,885	23,178	49,792	1,490,614
		전자자료	패키지	430	16	0	0	0	1	1	3	5	8	14	20	27	48	232
		연속간행물(인쇄)	종	430	498	0	30	63	86	109	155	205	299	463	533	721	1,243	7,361
		연간증가자료수		430	13,093	0	670	1,585	2,221	2,787	4,023	5,729	8,390	13,476	16,763	20,593	36,476	115,348
		연간제적자료수		430	3,241	0	0	0	0	0	0	0	0	0	18	163	3,666	272,380
	시설 및 설비	건물연면적	㎡	430	6,511	0	370	799	1,063	1,243	2,193	3,223	4,838	7,012	8,706	10,743	16,534	68,904
		총좌석수	석	430	1,017	0	60	160	194	258	394	589	819	1,179	1,405	1,626	2,584	8,823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430	70	0	3	8	11	16	26	40	58	81	90	106	172	763
	인적자원	정규직	명	430	6	0	1	1	1	1	2	3	4	6	7	9	13	100
		비정규직	명	430	2	0	0	0	0	0	0	1	1	2	3	4	7	51
		지원인력현황	명	430	8	0	1	2	2	2	3	4	6	9	10	13	20	125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430	6	0	0	1	1	1	2	3	4	6	8	10	16	107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		430	578,004,976	0	4,696,623	23,079,370	33,292,700	54,137,607	89,725,476	136,892,141	202,341,466	425,148,370	636,542,515	846,603,808	1,913,303,095	8,026,264,357
		도서관총예산		430	569,972,789	0	11,080,000	31,260,000	45,000,000	64,160,000	112,000,000	151,500,000	231,292,800	446,350,000	651,150,000	806,800,220	1,637,179,900	8,181,607,000
	이용 및 이용자	봉사대상자수	명	430	7,843	0	309	997	1,446	1,971	2,985	3,978	5,293	7,322	8,878	10,277	16,847	162,746
		도서관방문자수	명	430	386,674	0	240	3,299	7,819	13,454	40,259	77,956	144,097	289,786	371,420	495,617	1,116,971	8,928,294
병영도서관	소장자료	도서자료(인쇄)	권	1663	2,696	0	350	600	700	832	1,087	1,351	1,749	2,153	2,437	2,835	4,147	261,138
		비도서	점	915	104	0	0	0	0	0	0	0	0	10	23	41	150	15,380
		연속간행물(인쇄)	종	977	118	0	0	0	0	0	0	5	10	18	25	39	133	32,310
		전자자료	종	819	55	0	0	0	0	0	0	0	0	0	0	0	0	17,748
		연간증가자료수		1146	342	0	0	28	43	55	100	137	200	286	336	430	821	10,856
	시설 및	도서관건물연면적	㎡	1176	61	0	8	15	18	20	26	33	38	48	51	59	84	6,600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설비	총좌석수	석	1118	15	0	0	4	6	7	10	12	15	18	20	23	30	438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1086	1	0	0	0	0	0	0	0	0	0	0	0	1	36
	인적자원	정규직(전임+겸임)	명	1154	2	0	0	1	1	1	1	1	2	2	2	2	3	12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2011년)	천원	911	4,132	0	0	0	0	0	0	0	45	450	450	450	580	1,672,000
		도서관총예산(2012년)	천원	959	3,412	0	0	0	0	0	0	0	0	250	380	450	1,500	1,672,000
	이용 및 이용자	이용자(방문자)수		1060	1,317	0	25	56	80	100	150	250	409	682	997	1,300	2,600	184,216
작은도서관	소장자료	도서관총자료		3347	5,231	1,000	1,400	2,000	2,010	2,500	3,000	3,950	4,951	5,996	6,700	7,667	10,427	130,000
		도서자료(인쇄)		3347	4,822	0	0	1,227	1,503	2,000	2,726	3,500	4,500	5,694	6,500	7,503	10,352	130,000
		연속간행물(인쇄)		3347	14	0	0	0	0	0	0	0	0	1	2	3	8	7,983
		연간(2010)증가자료수		3347	579	0	0	0	0	50	150	250	392	505	653	843	1,479	15,850
	시설 및 설비	도서관건물연면적	㎡	3347	181	33	36	45	50	55	66	80	99	115	131	147	201	88,206
		총좌석수	석	3347	28	6	10	12	15	16	20	20	26	30	34	40	50	475
		이용자용컴퓨터수	대	3347	1	0	0	0	0	0	0	0	0	1	1	2	3	111
	인적자원	직원수	명	3347	1	0	0	0	0	0	0	1	1	1	1	1	2	50
		자원봉사자수	명	3347	6	0	0	0	0	0	1	2	3	5	8	10	16	2,214
		사서자격증보유자	명	3347	0	0	0	0	0	0	0	0	0	0	0	0	1	302
	예산현황	예산지출내역		3347	8,332	0	0	0	0	0	1,000	2,150	4,046	7,200	9,000	11,776	23,258	429,000
	이용자관리	연간총이용자수		3347	113,958	0	0	0	78	240	726	1,487	2,648	4,500	5,325	7,000	12,000	300,000,000
		등록된총이용자수(회원등록자수)		3347	6,361	0	0	0	0	15	50	100	200	364	500	700	1,608	19,200,000
우수도서관	소장자료	도서자료(인쇄자료)수	권	64	133,792	0	7,176	21,428	42,962	52,037	65,917	85,438	104,296	184,355	209,524	251,795	296,197	651,501
		총보유자료수		64	152,967	0	7,368	22,125	50,158	58,225	70,632	93,643	133,017	203,344	252,411	275,581	347,498	706,560
		연간증가자료수		64	11,338	0	302	1,438	1,962	3,273	6,833	8,732	10,856	14,179	15,413	20,221	25,919	71,302
	시설 및	도서관건물연면적	㎡	64	3,474	0	48	149	494	594	1,154	1,534	2,666	3,737	5,349	6,627	11,476	19,090

도서관 구분	분석 항목		단위	사례수	*평균*	0분위수 (MIN)	10분위수	20분위수	25분위수	30분위수	40분위수	50분위수 (중앙값)	60분위수	70분위수	75분위수	80분위수	90분위수	100분위수 (MAX)
	설비	총좌석수	석	64	*512*	0	4	15	23	65	177	259	372	522	648	826	1,625	2,700
		업무용컴퓨터수	대	64	*35*	0	1	1	2	3	11	20	27	43	51	70	117	142
	인적자원	정규직	명	64	*13*	0	1	3	3	4	5	6	9	18	21	23	33	70
		비정규직	명	64	*330*	0	0	0	0	1	4	34	59	160	200	379	982	5,371
	예산현황	이전회계연도결산액(2011년)		64	*1,041,709*	0	0	3,000	38,662	281,795	448,579	708,415	854,000	1,321,257	1,669,952	1,864,017	2,957,351	3,985,119
		도서관총예산(2012년)		64	*1,178,427*	0	475	4,500	28,309	227,762	420,294	682,975	914,018	1,498,332	1,811,086	2,617,774	3,198,829	6,195,687
	이용현황	이용자수(등록자수)		64	*31,499*	0	258	1,855	3,072	4,432	8,264	13,424	23,029	36,672	46,081	56,778	95,122	179,153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도서관 시설 및 장서 기준 준수 현황표

1.연면적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수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	0	4
2만~5만미만	63	6	69
5만~10만미만	80	35	115
10만~30만미만	181	123	304
30만~50만미만	75	148	223
50만이상	11	60	71
전체	**414**	**372**	**786**

1.연면적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 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100%	0%	100%
2만~5만미만	91%	9%	100%
5만~10만미만	70%	30%	100%
10만~30만미만	60%	40%	100%
30만~50만미만	34%	66%	100%
50만이상	15%	85%	100%
전체	**53%**	**47%**	**100%**

2.총좌석수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수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	0	4
2만~5만미만	48	21	69
5만~10만미만	61	54	115
10만~30만미만	138	166	304
30만~50만미만	38	185	223
50만이상	3	68	71
전체	**292**	**494**	**786**

2.총좌석수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 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100%	0%	100%
2만~5만미만	70%	30%	100%
5만~10만미만	53%	47%	100%
10만~30만미만	45%	55%	100%
30만~50만미만	17%	83%	100%
50만이상	4%	96%	100%
전체	**37%**	**63%**	**100%**

3.도서자료(인쇄자료)수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수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	0	4
2만~5만미만	69	0	69
5만~10만미만	112	3	115
10만~30만미만	274	30	304
30만~50만미만	98	125	223
50만이상	10	61	71
전체	**567**	**219**	**786**

3.도서자료(인쇄자료)수 기준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 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100%	0%	100%
2만~5만미만	100%	0%	100%
5만~10만미만	97%	3%	100%
10만~30만미만	90%	10%	100%
30만~50만미만	44%	56%	100%
50만이상	14%	86%	100%
전체	**72%**	**28%**	**100%**

4.연간증가자료수 기준 : 도서자료(인쇄)+비도서+전자자료+연속간행물(인쇄)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수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4	0	4
2만~5만미만	65	4	69
5만~10만미만	106	9	115
10만~30만미만	263	41	304
30만~50만미만	102	121	223
50만이상	15	56	71
전체	**555**	**231**	**786**

4.연간증가자료수 기준 : 도서자료(인쇄)+비도서+전자자료+연속간행물(인쇄)

	기준 준수여부 도서관 비율		합계
	준수	미준수	
2만미만	100%	0%	100%
2만~5만미만	94%	6%	100%
5만~10만미만	92%	8%	100%
10만~30만미만	87%	13%	100%
30만~50만미만	46%	54%	100%
50만이상	21%	79%	100%
전체	**71%**	**29%**	**100%**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의 사서배치기준 준수 현황표(건물 면적 기준)

도서관면적	기준 사서수 (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개)			사서기준평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330이하	3	1	14	4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19	3	0	86%	14%	0%
~ 660 미만	3	2	24	30	15	7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0	56	15	9	70%	19%	11%
~ 990 미만	4	8	30	28	20	6	6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9	86	6	7	87%	6%	7%
~ 1320 미만	5	6	21	21	31	10	7	3	4	0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6	89	7	10	84%	7%	9%
~ 1650 미만	6	0	14	30	16	10	6	2	4	4	0	2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0	76	2	12	84%	2%	13%
~ 1980 미만	7	0	8	12	17	9	4	4	3	1	0	0	3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3	54	3	6	86%	5%	10%
~ 2310 미만	8	0	3	5	10	12	2	2	2	3	0	2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3	36	3	4	84%	7%	9%
~ 2640 미만	9	0	1	4	16	4	3	6	1	0	1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8	35	1	2	92%	3%	5%
~ 2970 미만	10	0	0	6	4	5	6	1	2	1	0	0	0	1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25	0	4	86%	0%	14%
~ 3300 미만	11	0	0	1	1	4	1	1	1	3	0	2	0	3	0	0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14	0	6	70%	0%	30%
~ 3630 미만	12	0	0	0	4	5	2	2	1	2	1	0	0	0	2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7	0	4	81%	0%	19%
~ 3960 미만	13	0	1	0	5	3	1	3	5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9	0	2	90%	0%	10%
~ 4290 미만	14	0	0	0	2	3	2	1	1	1	2	0	0	1	0	0	0	0	1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13	0	3	81%	0%	19%
~ 4620 미만	15	0	0	1	3	1	0	0	3	2	1	0	1	0	1	1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7	14	0	3	82%	0%	18%
~ 4950 미만	16	0	0	0	1	1	0	0	1	3	1	1	2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11	0	1	92%	0%	8%
~ 5280 미만	17	0	0	0	0	1	3	0	1	0	0	2	1	1	0	0	0	1	1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10	1	2	77%	8%	15%
~ 5610 미만	18	0	0	0	1	0	2	0	2	0	0	1	2	1	1	0	0	0	1	2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5	11	2	2	73%	13%	13%
~ 5940 미만	19	0	0	0	0	1	0	0	0	2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0	0	100%	0%	0%
~ 6270 미만	2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1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6	0	0	100%	0%	0%
~ 6600 미만	21	0	0	0	0	1	0	1	1	1	4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9	0	0	100%	0%	0%
~ 6930 미만	22	0	0	0	0	1	1	1	1	2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12	10	0	2	83%	0%	17%
~ 7260 미만	23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4	0	0	100%	0%	0%
~ 7590 미만	24	0	0	1	1	0	1	1	0	1	0	0	1	0	1	0	2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12	11	0	1	92%	0%	8%

도서관면적	기준 사서수 (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개)			사서기준평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 7920 미만	25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8250 미만	26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3	0	0	100%	0%	0%
~ 8580 미만	27	0	0	0	0	0	1	0	0	2	0	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8	7	1	0	88%	13%	0%
~ 9240 미만	29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100%	0%	0%
~ 9570 미만	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1	0%	0%	100%
~ 9900 미만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10230 미만	32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3	3	0	0	100%	0%	0%
~ 10560 미만	33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10890 미만	34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100%	0%	0%
~ 11550 미만	36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12210 미만	38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12540 미만	39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100%	0%	0%
~ 12870 미만	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0	0%	100%	0%
~ 13200 미만	4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3	3	0	0	100%	0%	0%
~ 13530 미만	4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0	0	1	0%	0%	100%
~ 15180 미만	4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00%	0%	0%
~ 22440 미만	6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0	0	100%	0%	0%
전체		17	116	143	151	84	49	29	34	31	16	11	21	15	9	6	8	8	5	8	3	1	5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786	659	45	82	84%	6%	10%

기준 사서수 준수 도서관 개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의 사서배치기준 준수 현황표(건물 면적 및 장서수 기준)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330 이하	6천 이상 ~	3	1	4	0	1	0	0																																		1	1			100.0%	0.0%	0.0%
	12천 이상 ~	3	2	5	0	4	1	1																																		6	6			100.0%	0.0%	0.0%
	18천 이상 ~	3	3	6	0	3	1	0																																		4	4			100.0%	0.0%	0.0%
	24천 이상 ~	3	4	7	0	2	1	1																																		4	4			100.0%	0.0%	0.0%
	30천 이상 ~	3	5	8	0	3	0	0																																		3	3			100.0%	0.0%	0.0%
	36천 이상 ~	3	6	9	1	1	0	0																																		2	2			100.0%	0.0%	0.0%
	54천 이상 ~	3	9	12	0	0	1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3	12	15	0	0	0	1																																		1	1			100.0%	0.0%	0.0%
~ 660 미만	6천 미만	3	0	3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6천 이상 ~	3	1	4	1	6	1	3	0	0	0																															11	11			100.0%	0.0%	0.0%
	12천 이상 ~	3	2	5	0	4	5	2	1	0	0																															12	12			100.0%	0.0%	0.0%
	18천 이상 ~	3	3	6	0	2	8	1	1	0	1																															13	12	1		92.3%	7.7%	0.0%
	24천 이상 ~	3	4	7	0	2	5	1	1	1	0																															10	10			100.0%	0.0%	0.0%
	30천 이상 ~	3	5	8	0	3	3	0	2	0	0																															8	8			100.0%	0.0%	0.0%
	36천 이상 ~	3	6	9	0	1	2	1	1	0	0																															5	5			100.0%	0.0%	0.0%
	42천 이상 ~	3	7	10	1	3	1	0	0	0	0																															5	5			100.0%	0.0%	0.0%
	48천 이상 ~	3	8	11	0	1	2	3	0	0	0																															6	6			100.0%	0.0%	0.0%
	54천 이상 ~	3	9	12	0	1	0	3	0	0	0																															4	4			100.0%	0.0%	0.0%
	60천 이상 ~	3	10	13	0	0	1	1	0	0	0																															2	2			100.0%	0.0%	0.0%
	66천 이상 ~	3	11	14	0	1	1	0	0	0	0																															2	2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78천 이상 ~	3	13	16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 990 미만	6천 미만	4	0	4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6천 이상 ~	4	1	5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2천 이상 ~	4	2	6	1	4	1	1	0	0		0																														7	7			100.0%	0.0%	0.0%
	18천 이상 ~	4	3	7	3	4	2	1	0	0		0																														10	10			100.0%	0.0%	0.0%
	24천 이상 ~	4	4	8	1	2	2	1	2	2		0																														10	10			100.0%	0.0%	0.0%
	30천 이상 ~	4	5	9	0	2	4	0	0	1		0																														7	7			100.0%	0.0%	0.0%
	36천 이상 ~	4	6	10	0	6	2	0	0	0		0																														8	8			100.0%	0.0%	0.0%
	42천 이상 ~	4	7	11	1	4	6	3	0	0		1																														15	15			100.0%	0.0%	0.0%
	48천 이상 ~	4	8	12	0	4	3	2	0	0		0																														9	9			100.0%	0.0%	0.0%
	54천 이상 ~	4	9	13	1	1	1	3	1	1		0																														8	8			100.0%	0.0%	0.0%
	60천 이상 ~	4	10	14	0	1	4	3	0	0		0																														8	8			100.0%	0.0%	0.0%
	66천 이상 ~	4	11	15	0	0	0	2	1	1		0																														4	4			100.0%	0.0%	0.0%
	72천 이상 ~	4	12	16	0	1	2	2	1	1		0																														7	7			100.0%	0.0%	0.0%
	84천 이상 ~	4	14	18	0	0	1	1	0	0		0																														2	2			100.0%	0.0%	0.0%
	90천 이상 ~	4	15	19	0	0	0	1	1	0		0																														2	2			100.0%	0.0%	0.0%
~ 1320 미만	12천 이상 ~	5	2	7	0	2	0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8천 이상 ~	5	3	8	0	1	2	0	0	0	0	1		0		0	0																									4	4			100.0%	0.0%	0.0%
	24천 이상 ~	5	4	9	1	1	1	0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30천 이상 ~	5	5	10	1	2	2	1	2	0	0	0		0		0	0																									8	8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36천 이상 ~	5	6	11	0	1	1	3	0	0	0	1		0		0	0																									6	6			100.0%	0.0%	0.0%
	42천 이상 ~	5	7	12	1	4	2	1	1	0	0	0		0		0	0																									9	9			100.0%	0.0%	0.0%
	48천 이상 ~	5	8	13	1	3	3	4	0	1	0	0		0		0	0																									12	12			100.0%	0.0%	0.0%
	54천 이상 ~	5	9	14	0	1	2	4	0	1	0	0		0		1	0																									9	9			100.0%	0.0%	0.0%
	60천 이상 ~	5	10	15	1	3	0	2	2	0	0	0		0		0	0																									8	8			100.0%	0.0%	0.0%
	66천 이상 ~	5	11	16	1	2	1	8	5	2	0	1		0		0	0																									20	20			100.0%	0.0%	0.0%
	72천 이상 ~	5	12	17	0	0	1	1	0	1	0	0		0		0	0																									3	3			100.0%	0.0%	0.0%
	78천 이상 ~	5	13	18	0	0	2	0	0	1	1	0		0		0	0																									4	4			100.0%	0.0%	0.0%
	84천 이상 ~	5	14	19	0	1	4	3	0	1	0	0		0		0	0																									9	9			100.0%	0.0%	0.0%
	90천 이상 ~	5	15	20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96천 이상 ~	5	16	21	0	0	0	2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02천 이상 ~	5	17	22	0	0	0	1	0	0	0	0		1		0	0																									2	2			100.0%	0.0%	0.0%
	108천 이상 ~	5	18	23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5	19	24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144천 이상 ~	5	24	29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5	26	31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 1650 미만	12천 이상 ~	6	2	8		1	0	1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8천 이상 ~	6	3	9		0	2	0	1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24천 이상 ~	6	4	10		0	2	0	0	0	0	0	0		1	0	0																									3	2	1		66.7%	33.3%	0.0%
	30천 이상 ~	6	5	11		1	2	0	0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36천 이상 ~	6	6	12		1	4	0	2	1	0	0	0		0	0	0																									8	8			100.0%	0.0%	0.0%
	42천 이상 ~	6	7	13		1	3	0	0	0	0	0	0		0	0	0																									4	4			100.0%	0.0%	0.0%
	48천 이상 ~	6	8	14		1	3	0	1	0	0	0	0		0	0	0																									5	5			100.0%	0.0%	0.0%
	54천 이상 ~	6	9	15		6	3	1	0	0	1	0	1		0	0	0																									12	12			100.0%	0.0%	0.0%
	60천 이상 ~	6	10	16		1	0	4	1	0	0	0	1		0	0	0																									7	7			100.0%	0.0%	0.0%
	66천 이상 ~	6	11	17		1	0	2	1	1	0	0	0		0	0	0																									5	5			100.0%	0.0%	0.0%
	72천 이상 ~	6	12	18		0	2	1	0	1	0	0	1		0	0	0																									5	5			100.0%	0.0%	0.0%
	78천 이상 ~	6	13	19		0	4	3	1	1	1	1	0		0	0	0																									11	11			100.0%	0.0%	0.0%
	84천 이상 ~	6	14	20		0	2	1	1	1	0	0	0		0	0	0																									5	5			100.0%	0.0%	0.0%
	90천 이상 ~	6	15	21		0	1	0	0	1	0	1	0		0	0	0																									3	3			100.0%	0.0%	0.0%
	96천 이상 ~	6	16	22		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2천 이상 ~	6	17	23		0	0	0	1	0	0	0	1		0	0	0																									2	2			100.0%	0.0%	0.0%
	108천 이상 ~	6	18	24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6	19	25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20천 이상 ~	6	20	26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26천 이상 ~	6	21	27		1	1	0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38천 이상 ~	6	23	29		0	0	0	0	0	0	0	0		1	1	0																									2	2			100.0%	0.0%	0.0%
	144천 이상 ~	6	24	30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50천 이상 ~	6	25	31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6	26	32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22천 이상 ~	6	37	43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천 이상 ~	7	2	9		2	0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8천 이상 ~	7	3	10		0	0	1	0	0	1	0	0			0	0																									2	2			100.0%	0.0%	0.0%
	24천 이상 ~	7	4	11		2	0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36천 이상 ~	7	6	13		0	1	0	1	0	1	0	0			0	0																									3	3			100.0%	0.0%	0.0%
	42천 이상 ~	7	7	14		1	0	1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48천 이상 ~	7	8	15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54천 이상 ~	7	9	16		2	3	4	1	0	1	0	0			0	0																									11	11			100.0%	0.0%	0.0%
	60천 이상 ~	7	10	17		0	0	2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 1980 미만	66천 이상 ~	7	11	18		1	1	2	0	0	0	0	0			0	0																									4	4			100.0%	0.0%	0.0%
	72천 이상 ~	7	12	19		0	1	2	1	1	0	1	0			0	0																									6	6			100.0%	0.0%	0.0%
	78천 이상 ~	7	13	20		0	1	1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84천 이상 ~	7	14	21		0	0	1	1	2	0	0	0			0	0																									4	4			100.0%	0.0%	0.0%
	90천 이상 ~	7	15	22		0	3	0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96천 이상 ~	7	16	23		0	0	1	1	1	0	0	1			0	0																									4	4			100.0%	0.0%	0.0%
	102천 이상 ~	7	17	24		0	1	1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108천 이상 ~	7	18	25		0	0	0	0	0	1	1	0			0	0																									2	2			100.0%	0.0%	0.0%
	132천 이상 ~	7	22	29		0	1	0	1	0	0	0	0			1	0																									3	3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관수	사서기준평가(개)			사서기준평가(%)		
		면적기준	장서수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미달	기준준수	기준초과	기준미달	기준준수	기준초과
	138천 이상 ~	7	23	30		0	0	0	0	0	0	1	0			1	0																									2	2			100.0%	0.0%	0.0%
	150천 이상 ~	7	25	32		0	0	0	0	0	0	0	0			0	2																									2	2			100.0%	0.0%	0.0%
	156천 이상 ~	7	26	33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2천 이상 ~	8	2	10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8천 이상 ~	8	3	11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4천 이상 ~	8	4	12		0	0	1	1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30천 이상 ~	8	5	13		0	1	0	2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36천 이상 ~	8	6	14		1	1	1	0	0	0	0	0		0			1		0																						4	4			100.0%	0.0%	0.0%
	42천 이상 ~	8	7	15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8	8	16		0	1	1	0	0	0	1	0		0			0		0																						3	3			100.0%	0.0%	0.0%
	54천 이상 ~	8	9	17		0	0	0	1	0	1	0	0		1			0		0																						3	3			100.0%	0.0%	0.0%
~ 2310 미만	60천 이상 ~	8	10	18		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8	11	19		0	1	0	1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72천 이상 ~	8	12	20		0	0	2	1	0	0	0	0		0			0		0																						3	3			100.0%	0.0%	0.0%
	78천 이상 ~	8	13	21		0	0	2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90천 이상 ~	8	15	23		0	1	2	2	0	1	0	0		0			0		0																						6	6			100.0%	0.0%	0.0%
	102천 이상 ~	8	17	25		0	0	0	2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08천 이상 ~	8	18	26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8	19	27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120천 이상 ~	8	20	28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26천 이상 ~	8	21	29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8	23	31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8	25	33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8	30	38		1	0	0	0	0	0	1	0		0			0		0																						2	2			100.0%	0.0%	0.0%
~ 2640 미만	12천 이상 ~	9	2	11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4천 이상 ~	9	4	13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36천 이상 ~	9	6	15		0	1	1	0	0	1	0		0							0																					3	3			100.0%	0.0%	0.0%
	48천 이상 ~	9	8	17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0천 이상 ~	9	10	19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9	11	20		0	0	2	0	1	0	0		0							0																					3	3			100.0%	0.0%	0.0%
	72천 이상 ~	9	12	21		0	0	3	1	0	0	0		0							0																					4	4			100.0%	0.0%	0.0%
	78천 이상 ~	9	13	22		0	0	1	1	1	0	0		0							0																					3	3			100.0%	0.0%	0.0%
	84천 이상 ~	9	14	23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90천 이상 ~	9	15	24		0	0	0	0	0	1	1		0							0																					2	2			100.0%	0.0%	0.0%
	96천 이상 ~	9	16	25		0	0	2	0	0	0	0		0							0																					2	2			100.0%	0.0%	0.0%
	102천 이상 ~	9	17	26		0	0	2	0	1	1	0		0							0																					4	4			100.0%	0.0%	0.0%
	108천 이상 ~	9	18	27		0	0	1	0	0	1	0		0							0																					2	2			100.0%	0.0%	0.0%
	120천 이상 ~	9	20	29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9	23	32		0	0	1	1	0	0	0		0							0																					2	2			100.0%	0.0%	0.0%
	144천 이상 ~	9	24	33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50천 이상 ~	9	25	34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9	30	39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186천 이상 ~	9	31	4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210천 이상 ~	9	35	44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228천 이상 ~	9	38	47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342천 이상 ~	9	57	66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 2970 미만	42천 이상 ~	10	7	17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10	8	18			1	0	0	1	0	0	0				0	0		0																						2	2			100.0%	0.0%	0.0%
	54천 이상 ~	10	9	19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10	11	21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10	12	22			0	1	1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78천 이상 ~	10	13	23			1	0	0	0	0	0	1				0	0		0																						2	2			100.0%	0.0%	0.0%
	84천 이상 ~	10	14	24			0	0	1	0	0	1	0				0	0		0																						2	2			100.0%	0.0%	0.0%
	90천 이상 ~	10	15	25			0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96천 이상 ~	10	16	26			1	1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02천 이상 ~	10	17	27			1	0	1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120천 이상 ~	10	20	3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6천 이상 ~	10	21	31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10	23	33			0	2	0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144천 이상 ~	10	24	34			1	0	0	0	0	0	0				0	1		0																						2	2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50천 이상 ~	10	25	35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10	26	36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10	30	4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98천 이상 ~	10	33	43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252천 이상 ~	10	42	52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30천 이상 ~	11	5	16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36천 이상 ~	11	6	17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2천 이상 ~	11	7	18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11	8	19			0	0	0	0	1	0	0		1		0			0			0																			2	2			100.0%	0.0%	0.0%
	60천 이상 ~	11	10	21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11	12	23			0	0	0	0	0	0	1		0		0			1			0																			2	2			100.0%	0.0%	0.0%
	78천 이상 ~	11	13	24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 3300 미만	84천 이상 ~	11	14	25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96천 이상 ~	11	16	27			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2천 이상 ~	11	17	28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0천 이상 ~	11	20	31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144천 이상 ~	11	24	35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62천 이상 ~	11	27	38			0	0	0	0	0	1	0		0		1			0			0																			2	2			100.0%	0.0%	0.0%
	168천 이상 ~	11	28	39			0	0	1	0	0	0	0		0		1			0			0																			2	2			100.0%	0.0%	0.0%
	210천 이상 ~	11	35	46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216천 이상 ~	11	36	47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 3630 미만	30천 이상 ~	12	5	17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36천 이상 ~	12	6	18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12	8	2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0천 이상 ~	12	10	22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12	11	23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12	12	24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78천 이상 ~	12	13	25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8천 이상 ~	12	18	30				0	0	2	1	0	0	0				0				0	0																			3	3			100.0%	0.0%	0.0%
	126천 이상 ~	12	21	33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44천 이상 ~	12	24	36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68천 이상 ~	12	28	40				0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12	30	42				1	0	0	0	0	0	0				0				1	0																			2	2			100.0%	0.0%	0.0%
	186천 이상 ~	12	31	43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92천 이상 ~	12	32	44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198천 이상 ~	12	33	45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204천 이상 ~	12	34	46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22천 이상 ~	12	37	49				0	0	0	0	0	0	0				1				0	1																			2	2			100.0%	0.0%	0.0%
~ 3960 미만	18천 이상 ~	13	3	16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4천 이상 ~	13	4	17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54천 이상 ~	13	9	22		0		1	1	0	0	0			0					0			0																			2	2			100.0%	0.0%	0.0%
	66천 이상 ~	13	11	24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78천 이상 ~	13	13	26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84천 이상 ~	13	14	27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2천 이상 ~	13	17	30		0		0	0	1	0	1			0					0			0																			2	2			100.0%	0.0%	0.0%
	108천 이상 ~	13	18	31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44천 이상 ~	13	24	37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13	25	38		0		1	1	0	0	0			0					0			0																			2	2			100.0%	0.0%	0.0%
	168천 이상 ~	13	28	41		1		1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74천 이상 ~	13	29	42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92천 이상 ~	13	32	45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204천 이상 ~	13	34	47		0		0	0	0	0	1			1					0			0																			2	2			100.0%	0.0%	0.0%
	246천 이상 ~	13	41	54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282천 이상 ~	13	47	6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 4290 미만	36천 이상 ~	14	6	2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14	11	25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14	12	26				0	1	1	0	0	0	1			0					0				0																3	3			100.0%	0.0%	0.0%
	114천 이상 ~	14	19	33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32천 이상 ~	14	22	36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44천 이상 ~	14	24	38				1	1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56천 이상 ~	14	26	40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68천 이상 ~	14	28	42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222천 이상 ~	14	37	51				0	0	0	0	0	1	0			0					0				1																2	2			100.0%	0.0%	0.0%
	228천 이상 ~	14	38	52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282천 이상 ~	14	47	61				0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300천 이상 ~	14	50	64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 4620 미만	36천 이상 ~	15	6	21			0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2천 이상 ~	15	7	22			0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15	11	26			0	0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15	19	34			1	0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6천 이상 ~	15	21	36			0	0	1			0	1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44천 이상 ~	15	24	39			0	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15	25	40			0	0	0			2	0	0		0		0	0		0						0							0								2	2			100.0%	0.0%	0.0%
	168천 이상 ~	15	28	43			0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92천 이상 ~	15	32	47			0	1	0			0	0	0		0		0	1		0						0							0								2	2			100.0%	0.0%	0.0%
	216천 이상 ~	15	36	51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240천 이상 ~	15	40	55			0	0	0			0	1	0		1		1	0		0						0							0								3	3			100.0%	0.0%	0.0%
	252천 이상 ~	15	42	57			0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 4950 미만	36천 이상 ~	16	6	22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16	12	28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96천 이상 ~	16	16	32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02천 이상 ~	16	17	33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32천 이상 ~	16	22	38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16	25	41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16	30	46				0	0			0	1	0	1	0	0							0																		2	2			100.0%	0.0%	0.0%
	186천 이상 ~	16	31	47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198천 이상 ~	16	33	49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240천 이상 ~	16	40	56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246천 이상 ~	16	41	57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90천 이상 ~	17	15	32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8천 이상 ~	17	18	35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0천 이상 ~	17	20	37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26천 이상 ~	17	21	38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17	23	4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 5280 미만	150천 이상 ~	17	25	42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17	26	43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62천 이상 ~	17	27	44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68천 이상 ~	17	28	45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186천 이상 ~	17	31	48					0	1		0			1	0	0				0	0				0															2	2			100.0%	0.0%	0.0%
	234천 이상 ~	17	39	56					0	0		0			0	0	0				1	0				1															2	2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 5610 미만	30천 이상 ~	18	5	23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42천 이상 ~	18	7	25				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18	8	26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78천 이상 ~	18	13	31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08천 이상 ~	18	18	36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18	19	37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18	25	43				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18	26	44				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62천 이상 ~	18	27	45				0		0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68천 이상 ~	18	28	46				0		0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18	30	48				0		0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98천 이상 ~	18	33	51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246천 이상 ~	18	41	59				0		0		0			0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264천 이상 ~	18	44	62				0		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288천 이상 ~	18	48	66				0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 5940 미만	102천 이상 ~	19	17	36					1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19	26	45					0				1						0		0																					1	1			100.0%	0.0%	0.0%
	174천 이상 ~	19	29	48					0				0						0		1																					1	1			100.0%	0.0%	0.0%
	228천 이상 ~	19	38	57					0				0						1		0																					1	1			100.0%	0.0%	0.0%
	270천 이상 ~	19	45	64					0				1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 6270 미만	144천 이상 ~	20	24	44										0				0	1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20	25	45										0				0	0			0	1																		1	1			100.0%	0.0%	0.0%
	246천 이상 ~	20	41	61										1				0	0			0	0																		1	1			100.0%	0.0%	0.0%
	252천 이상 ~	20	42	62										0				0	0			0	1																		1	1			100.0%	0.0%	0.0%
	258천 이상 ~	20	43	63										0				1	0			0	0																		1	1			100.0%	0.0%	0.0%
	294천 이상 ~	20	49	69										0				0	0			1	0																		1	1			100.0%	0.0%	0.0%
~ 6600 미만	30천 이상 ~	21	5	26					0		1	0	0	0					0																						1	1			100.0%	0.0%	0.0%
	48천 이상 ~	21	8	29					1		0	0	0	0					0																						1	1			100.0%	0.0%	0.0%
	54천 이상 ~	21	9	30					0		0	0	0	1					0																						1	1			100.0%	0.0%	0.0%
	66천 이상 ~	21	11	32					0		0	1	0	0					0																						1	1			100.0%	0.0%	0.0%
	72천 이상 ~	21	12	33					0		0	0	0	1					0																						1	1			100.0%	0.0%	0.0%
	114천 이상 ~	21	19	40					0		0	0	0	1					0																						1	1			100.0%	0.0%	0.0%
	132천 이상 ~	21	22	43					0		0	0	0	0					1																						1	1			100.0%	0.0%	0.0%
	180천 이상 ~	21	30	51					0		0	0	1	0					0																						1	1			100.0%	0.0%	0.0%
	270천 이상 ~	21	45	66					0		0	0	0	1					0																						1	1			100.0%	0.0%	0.0%
~ 6930 미만	60천 이상 ~	22	10	32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84천 이상 ~	22	14	36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32천 이상 ~	22	22	44					0	0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22	23	45					0	0	0	0	1			0	1												0								0					2	1			50.0%	0.0%	0.0%
	156천 이상 ~	22	26	48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168천 이상 ~	22	28	50					0	0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204천 이상 ~	22	34	56					0	0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222천 이상 ~	22	37	59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34천 이상 ~	22	39	61					0	0	0	0	0			1	0												0							1					2	2			100.0%	0.0%	0.0%
	246천 이상 ~	22	41	63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 7260 미만	144천 이상 ~	23	24	47												1	0		0		0																				1	1			100.0%	0.0%	0.0%
	156천 이상 ~	23	26	49												0	0		1		0																				1	1			100.0%	0.0%	0.0%
	246천 이상 ~	23	41	64												0	1		0		0																				1	1			100.0%	0.0%	0.0%
	258천 이상 ~	23	43	66												0	0		0		1																				1	2			200.0%	0.0%	0.0%
~ 7590 미만	6천 미만	24	0	24			0	1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78천 이상 ~	24	13	37			1	0		0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38천 이상 ~	24	23	47			0	0		0	0		0			0		0		1	0							0							1					2	1			50.0%	0.0%	0.0%
	144천 이상 ~	24	24	48			0	0		1	0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24	25	49			0	0		0	0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168천 이상 ~	24	28	52			0	0		0	1		0			0		0		0	0							0							0					1	1			100.0%	0.0%	0.0%
	222천 이상 ~	24	37	61			0	0		0	0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258천 이상 ~	24	43	67			0	0		0	0		0			0		1		0	0							0							0					1	2			200.0%	0.0%	0.0%
	264천 이상 ~	24	44	68			0	0		0	0		1			0		0		1	0							0							0					2	1			50.0%	0.0%	0.0%
	288천 이상 ~	24	48	72			0	0		0	0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 7920 미만	144천 이상 ~	25	24	49												1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 8250 미만	240천 이상 ~	26	40	66									0							0					1																	1	1			100.0%	0.0%	0.0%
	258천 이상 ~	26	43	69									0							1					0																	1	1			100.0%	0.0%	0.0%
	300천 이상 ~	26	50	76									1							0					0																	1	2			200.0%	0.0%	0.0%
~ 8580 미만	84천 이상 ~	27	14	41						0			0			0	1			0	0											0										1	1			100.0%	0.0%	0.0%
	96천 이상 ~	27	16	43						0			0			0	0			1	0											0										1	1			100.0%	0.0%	0.0%
	150천 이상 ~	27	25	52						0			0			0	0			0	1											0										1	1			100.0%	0.0%	0.0%
	216천 이상 ~	27	36	63						0			0			0	0			0	0											1										1	1			100.0%	0.0%	0.0%
	234천 이상 ~	27	39	66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300천 이상 ~	27	50	77						1			0			0	0			0	0											0										1	1			100.0%	0.0%	0.0%
	354천 이상 ~	27	59	86						0			0			1	0			0	0											0										1	1			100.0%	0.0%	0.0%
	366천 이상 ~	27	61	88						0			1			0	0			0	0											0										1	1			100.0%	0.0%	0.0%
~ 9240 미만	108천 이상 ~	29	18	47									1			0																										1	1			100.0%	0.0%	0.0%
	270천 이상 ~	29	45	74									0			1																										1	1			100.0%	0.0%	0.0%
~ 9570 미만	468천 이상 ~	30	78	108																																				1		1	1			100.0%	0.0%	0.0%
~ 9900 미만	210천 이상 ~	31	35	66																											1											1	1			100.0%	0.0%	0.0%
~ 10230 미만	228천 이상 ~	32	38	70										1												0							0									1	1			100.0%	0.0%	0.0%
	264천 이상 ~	32	44	76										0												1							0									1	1			100.0%	0.0%	0.0%
	456천 이상 ~	32	76	108										0												0							1									1	1			100.0%	0.0%	0.0%
~ 10560 미만	90천 이상 ~	33	15	48												1																										1	1			100.0%	0.0%	0.0%
~ 10890 미만	192천 이상 ~	34	32	66										1					0																							1	1			100.0%	0.0%	0.0%

도서관면적	장서수	기준 사서수(명)			실제 사서수(명)																																							총 관수	사서기준평가 (개)			사서기준평가 (%)		
		면적 기준	장서수 기준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2	33	39	40	42	51	59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기준 준수	기준 초과
	216천 이상 ~	34	36	70										0					1																							1	1			100.0%	0.0%	0.0%
~ 11550 미만	234천 이상 ~	36	39	75										1																												1	1			100.0%	0.0%	0.0%
~ 12210 미만	42천 이상 ~	38	7	45				1																																		1	1			100.0%	0.0%	0.0%
~ 12540 미만	114천 이상 ~	39	19	58									1			0																										1	1			100.0%	0.0%	0.0%
	210천 이상 ~	39	35	74									0			1																										1	1			100.0%	0.0%	0.0%
~ 12870 미만	648천 이상 ~	40	108	148																																		1				1	1			100.0%	0.0%	0.0%
~ 13200 미만	252천 이상 ~	41	42	83										0										0											1							1	1			100.0%	0.0%	0.0%
	288천 이상 ~	41	48	89										0										1											0							1	1			100.0%	0.0%	0.0%
	300천 이상 ~	41	50	91										1										0											0							1	1			100.0%	0.0%	0.0%
~ 13530 미만	510천 이상 ~	42	85	127																																					1	1	1			100.0%	0.0%	0.0%
~ 15180 미만	612천 이상 ~	47	102	149																				1																		1	1			100.0%	0.0%	0.0%
~ 22440 미만	666천 이상 ~	69	111	180																																			1			1	1			100.0%	0.0%	0.0%
전체					17	116	143	151	84	49	29	34	31	16	11	21	15	9	6	8	8	5	8	3	1	5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786	784	2	0	99.7%	0.3%	0.0%

기준 사서수 준수 도서관 개수